

연구보고서

#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수급자 중심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

한정미 · 이준서 · 왕승혜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제 출 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수규자 중심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의 최종 연구결과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년 6월

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기간 : 2019. 3. 8 ~ 2019. 6. 30.

연구책임자 : 한정미(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이준서(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왕승혜(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보조원 : 한세론(중앙대학교 박사수료)

유충호(중앙대학교 박사수료)

# 요 약 문

**연구기간** 2019년 03월 ~ 2019년 6월

**핵심단어**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유해·위험, 도급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하위법령

**연구과제명**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수규자 중심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

## 1. 연구배경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본격시행(2020년) 전 하위 법령 개정작업을 완료하여야 함. 전부개정안과 하위법령의 체계적인 정비는 물론 하위법령의 구체성과 완성도를 높여 수규자의 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해 현장 작동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법령을 법령입안심사기준의 틀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 법령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음

## 2. 주요연구내용

### (1) 연구결과

- 전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위임규정을 검토하고 현행 시행령, 시행규칙을 위임입법 체계에 맞춰 수정·재배열함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신설규정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초안을 제공하고 주요 조문에 대한 해설을 제공함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하위 법령 규정안을 마련하고, 배달종사자의 안전조치 규정 초안을 제시함
-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관련 전체 조문을 재배열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개정방향에 따른 하위법령을 보완함
-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기업의 대표자 책임 강화에 따른 조문 수정안을 제공하고 검토내용에 따라 하위법령을 마련함
- 가맹본부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책임범위 설정에 관한 하위 법령 초안을 제시하고 해설함
- 작업중지와 긴급대피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안을 제시함
- 건설공사에서의 발주자 책임강화에 따른 조문 신설 관련 하위법령을 제시하고 조문에 따른 해설을 제시함
- 타워크레인 등록제도의 도입 등에 관련한 하위법령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해설을 함
- 물질안전보건자료 심사자료 규정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의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정비안에 대한 설명을 붙임
- 「산업안전보건법」의 감독적 성격을 고려하여 행정질서벌에 대한 일반이론을 검토하고 법률상의 의무의 동일성 판단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행정질서벌 부과기준의 적절성을 검토

## (2) 시사점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따른 하위법령을 제시하고 입법 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3. 연구활용방안

### (1) 개선방안 또는 정책방안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따른 하위법령 전체 조문안을 제시하고 주요조문에 대한 해설자료를 제공함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신설조문에 대한 하위법령 신설안을 제시함

### (2) 활용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활용 가능

## 연락처

- 연구책임자 :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연구상대역 : 장유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위원)
  - ☎ 052) 703-0826
  - E-mail jangyr@kosha.or.kr

# 차 례

I. 서 론 .....	1
1. 연구의 목적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표 .....	1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2
II.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른 시행령 정비 .....	5
1. 시행령 정비 방향 .....	5
2. 시행령안 주요내용 .....	6
1) 공공행정 등 종사 현업근로자 보호 강화 .....	6
2)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대상 업종 확대 .....	6
3) 대표이사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의 수립 .....	7
4) 도급승인 대상작업 선정 .....	8
5) 발주자 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 건설공사 .....	9
6) 건설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 .....	10
7)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대상 직종 .....	11
8) 특수형태근로조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대상 직종 .....	12
9) 안전·보건프로그램 마련·시행 등의 대상 가맹본부 .....	12
10) 과징금 산정기준 .....	13

Ⅲ.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정비 .....	15
1. 시행규칙 정비 방향 .....	15
2. 시행규칙안 주요내용 .....	15
1) 발주자 산업재해 예방조치 규정 .....	15
2) 건설공사도급인의 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조치 신설 .....	17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신설 .....	17
4) 가맹본부가 마련해야 할 안전·보건 프로그램 내용 등 .....	18
Ⅳ.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른 안전보건기준규칙 정비 .....	21
1. 안전보건기준규칙 정비 방향 .....	21
2. 안전보건기준규칙 정비 내용 .....	21
ABSTRACT .....	23
〈별 첨〉 법, 시행령안, 규칙안 대조표(작업본) .....	25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 1) 연구의 필요성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2018년 2월에 입법예고되었고, 개정폭이 큰 만큼 장시간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18년 11월에 국회에 상정되었으며, 이후 산업재해 발생예방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 등의 필요에 따라 2018년 12월 27일 정부가 발의한 전부개정안을 중심으로 및 심상정 의원 외 여러 의원들의 발의안이 포함된 대안(의안번호 2017834)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음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2020년 시행에 앞서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에 대한 사항 등 하위법령의 정비가 진행되어야 할 것임

또한 하위법령 정비에 따라 과징금, 과태료 관련 별표 및 별지 등 수급자가 직접적으로 접하게 되는 행정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비가 요구되는 바이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이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체계화를 지원하며, 전부개정에 따른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추가연구를 진행하여 전부개정의 안정적인 법 적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 연구의 목표

이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위임되고 있는 하위법령의 내용과 체계에 맞추어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비함

이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른 과징금, 과태료 등 제재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 마련 등 수규자에게 집행규정의 정확하고 올바른 집행이 가능하도록 함

이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신설된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인 논의사항의 노·사·정·학 의견을 수렴하여 정교한 하위법령 마련 및 집행방안을 모색함

##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이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연구실적이 있고, 입법기술 관련 전문역량을 갖춘 공동연구진을 구성하여 전문적인 연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산업안전보건법 개편에 따른 하위법령의 실무적 의견수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담당자 및 산업안전보건분야 전문가와의 전문가회의를 개최함

한편, 연구의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입법분야 전문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법학분야 전문가, 노동분야 전문가, 보건·안전분야 전문가, 산업안전보건분야 실무자 등을 참여시켜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또한, 법제처 수시 자문 및 법제정비 전문 경력을 갖춘 원내 초빙연구위원의 자문, 워크숍 참여를 거치도록 하여 실효적인 연구가 진행되도록 함. 노·사·정·학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에 담당부처에서 진행하고 이와 관련해 필요한 내용을 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해당 내용은 입법예고 기간 후 최종 확정된 법안에 직접 반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보고서에 담지 않음

연구방법 면에서는 대상 법령 전수조사 및 문헌연구를 기본으로 하고, 연구 대상 법령에 대한 전수조사 및 위임사항 매칭을 통한 체계 정비를 진행함

다만, 연구결과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을 전제로 연구를 진행하되, 연구의 범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안 마련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제시함

## Ⅱ.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른 시행령 정비

### 1. 시행령 정비 방향

법률이나 상위법령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법령별 소관 사항 예시를 고려하여 그 내용에 따라 위임의 대상을 특정하면서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부령에 위임한다. 특히, 금전납부 의무의 부과 등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에 관하여 위임하는 경우에는 상한을 정하여 위임하는 등 하위법령의 내용을 일정 범위에서 정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음<sup>1)</sup>

이에 따른 시행령의 정비방향으로는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를 확대하며,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16272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 대상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 가맹본부 및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승인 대상 작업을 정하고, 타워크레인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원·하청 산재통합관리 대상업종에 전기업종을 포함하고,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1) 법제처, 「법령입안정비기준」, 2017, 20면.

## 2. 시행령안 주요내용

### 1) 공공행정 등 종사 현업근로자 보호 강화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다.

시행령 별표1 제4호에서 정하는 사업 중 일부 사업(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에 현업근로자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산업재해 또한 증가하고 있어 사업장 자율적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방안 필요

현업근로자에 대해 종사하는 작업과 가까운 업종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해석지침만으로는 법의 실효적 적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해당 조문을 법제화 하여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책임이 확대된 바, 시행령 별표1 제4호(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사업주에게 도급인의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여 수급인인 현업종사 근로자 보호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따라서 적용제의 규정에서 도급인 책임과 관련된 조항들은 삭제할 필요가 있음

### 2)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대상 업종 확대

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 ① (생략)

②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서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질병으로 인한 사망재해자를 제외하고 산출한 사망만인율을 말한다)보다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을 말한다.

1. 제조업
2. 철도운송업
3. 도시철도운송업
4. 전기업

발전분야 하청근로자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바 해당분야의 하청업체 근로자 산재예방을 위한 노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현재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는 제조업, 도시철도운송업, 철도운송업에만 적용중이나 발전소를 포함하는 전기업종을 이에 추가함

‘전기업종’도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를 적용하여 원청의 하청업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3) 대표이사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의 수립

제12조(이사회 보고·승인 대상 회사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2.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 순위 상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회사의 대표이사(「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대표집행 임원을 포함한다)는 회사의 업무와 환경을 고려하여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안전·보건활동 실적
2.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안전·보건활동 계획
3. 안전·보건관리 체계·인원 및 역할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시설 및 비용

대표이사가 매년 회사 전체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공포(’19.1.15.)됨에 따라 의무 대상 주식회사의 규모 및 보고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 있음

그간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주체에서 벗어나 있었던 대표이사를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직접 부담하는 주체로 규정함으로써 기업 전체의 체계적인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을 구축. 피규제대상 규모와 관련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으면서도 지나친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정할 필요가 있으며 보고 및 승인이 이사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는 정도의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야 함

#### 4) 도급승인 대상작업 선정

제51조(도급승인 대상작업)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황산, 불산, 질산, 염산(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위험의 외주화가 일반화됨에 따라 하청노동자에게 사망재해가 다수 발생하여 현재 도급 인가 대상 작업인 도급작업 등에 대해서는 사내 하도급을 금지하고 유해·위험 작업중 일시·간헐적이고 사업에 필수적인 작업에 대해서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급할 수 있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이 있었음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에서는 유해·위험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승인 대상으로 정하도록 위임

기존의 인가대상 작업은 승인대상 작업으로 분류할 수 없으므로 발암성, 급성독성, 피부부식성 등을 야기하는 화학물질로 인한 재해 다수를 차지하는 황산, 불산, 질산, 염산과 같은 물질\*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도급시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급성독성, 피부부식성 등이 있는 화학물질로, 화학물질로 인한 재해 중 다수를 차지(황산(229건), 불산(114건), 질산(120건), 염산(95건), '09~'18년 공단조사)

#### 5) 발주자 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 건설공사

제56조(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 건설공사) 법 제6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건설공사에서는 발주자가 공사계획·설계·시공 등 건설사업 전과정에서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을 결정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과정에서의 재해예방 조치에 대하여 집중되어 있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신설하였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건설공사의 규모와 부령으로 위임된 안전보건대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발주자 의무 부과대상 건설공사의 규모는 i) 전체 규모의 공사 ii)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대상 공사(20억 이상) iii) 안전보건조정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50억 이상)로 정할 수 있는데, 개정산안법에서 최초로 도입된 신규규

제이며 시행초기임을 고려해 피규제자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선에서 건  
공공사 규모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6) 건설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

제67조(기계·기구 등) 법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  
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1. 타워크레인
2. 건설용 리프트
3. 항타기 및 항발기

건설현장에서 원청 건설사가 건설기계 임대업체 등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  
대업체가 설치·해체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해체 작업이 진행되는  
구조로 작업이 이루어짐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설 기계·기구로 작업하는 주체가 영세업체인 경우  
가 많고 동시에 원청은 임대차 계약의 형식으로 인해 작업 시 안전관리에 소홀  
한 경우가 많아 다수의 재해가 발생

개정 산안법은 고도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건설 기계·기구에 대한 건설  
공사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였으므로 하위법령에서는 해당 건설 기  
계·기구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건설공사 도급인의 의무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제도 시행초기임을 감안하여  
건설기계 27종 중 임대계약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별도 설치·해체·조립작업 등  
이 필요한 대표적인 건설기계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 7)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대상 직종

제68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 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산안법 개정에 따라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신설되었으므로 대통령령·부령으로 위임된 대상 직종, 직종별 안전·보건조치 의무, 안전보건교육 내용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입법의 취지, 대상의 종속성 및 보호필요성, 최초 도입 제도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직종을 선정하여야 하며 재해보상의 체계에 예방은 당연한 전제임을 고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은 포함되어야 할 것임.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노무를 제공받는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는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별도로 규정함

#### 8) 특수형태근로조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대상 직종

제69조(안전 및 보건 교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제68조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체에 대한 교육실시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나, 제도 시행초기임을 고려하여 현행법상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이 적용되는 5개 직종부터 교육대상으로 선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 교육내용 및 시간은 부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시행규칙에서 이를 정하여야 함

#### 9) 안전·보건프로그램 마련·시행 등의 대상 가맹본부

제70조(산재예방조치 시행 대상)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의 정보공개서(이하 이 조에서 “정보공개서”라 한다) 항목 중 업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가맹점의 수가 200개소 이상의 가맹본부를 말한다.

1. 대분류가 “외식”인 업종
2. 대분류가 “도소매”이면서 중분류가 “편의점”인 업종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서 자료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등록된 사항을 적용한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가맹본부의 규모 등을 정하고, 부령으로 위임된 안전·보

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내용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주로 가맹본부가 설비·기계 등을 공급하는 업종이면서, 재해율이 높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한 가맹본부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안전보건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부령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시행규칙에 정하여야 함

## 10) 과징금 산정기준

### (1) 기본산정금액의 적정성

-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의 취지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과 유사하게 보고 과징금의 기본산정금액을 초안과 달리 “도급계약 금액”으로 변경하려는 것에 대하여,
  - 하도급법에서는 과징금 부과액 상한이 10억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고, 각 발주자 등에 대하여 각각 하도급대금의 2배를 상한으로 정하고 있음
  - 우리법의 경우, 하도급법을 참조하여 단순히 평균 도급금액을 근거로 하면 법률상 상한액인 10억을 약간 초과한다는 것을 기본산정금액의 변경 이유로 삼을 것이 아니라, 최대 상한액인 10억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10여 곳 이상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함
  - 대상 사업장 23곳 중 비공개 1곳을 제외한 약 50%에 해당하는 10곳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도급금액임에도, 도급금액을 기본 산정금액으로 해봐야 결과적으로 해당 사업장들에게는 과징금 상한액이 도급금액의 10%~50% 수준에 머무르게 될 것임
  - 수정안은 도급금액의 40~50% 수준이 아니라, 하도급법처럼 도급금액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의도로 보이나, 실제 50% 수준의 과징금 처분밖에 내릴 수 없다면, 도급금액을 기본 산정금액으로 한 조문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시행령 별표에서 과징금의 기본산정금액을 가중/감경 조정을 하는 이유는 법률에서 정한 상한에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너무 과하거나 경한 금액을 조정하는데 있음
- 기본 산정금액의 상한을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산정+ 가중/감경’을 해서 10억에 유사한 금액을 도출할 수 있는 산정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며 타당함

(2) 대상사업장들에 대한 형평성

- 도급인가 대상사업장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률에 제시되어 있는 10억 상한을 삭제한 후, 도급액을 기본산정으로 해서 가중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번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수용하기가 어려움
- 대상사업장 별 형평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도급금액을 기본산정으로 할 경우, 10억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가중하여 10억이라는 법률상 상한까지 부과될 여지가 있으나, 해당금액이 10억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어떠한 가중 조정을 하더라도 계약금액 전액이 아닌 일정 비율의 과징금을 처분받게 되므로, 과징금 가중에 관한 규정을 무력화할 우려가 있고, 개정의도와는 달리 더 크고 중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오히려 불측의 이익을 줄 수도 있음

## Ⅲ.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정비

### 1. 시행규칙 정비 방향

하위법령의 측면에서 보면, 본래 대통령령과 총리령·부령은 입법권자(발령권자)의 지위에 차이가 있고 국법체계에서 차지하는 위계가 다르기는 하나, 명령이라는 점에서는 그 법적 성격을 같이 하기 때문에 양자의 규율대상을 엄밀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대통령령은 입법권자가 대통령이고 국무회의의 의결을 요한다는 점에서 총리나 각부 장관이 발령하는 총리령·부령과 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점에서 양자의 규율대상의 구분을 논할 실제적인 이유가 있음

따라서 상대적으로 보다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총리령·부령은 그 밖의 것을 정하도록 하는데,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실제적인 사항은 가능한 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행정처분의 기준이나 서식과 같은 단순한 절차(집행명령)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sup>2)</sup>

### 2. 시행규칙안 주요내용

#### 1) 발주자 산업재해 예방조치 규정

제88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①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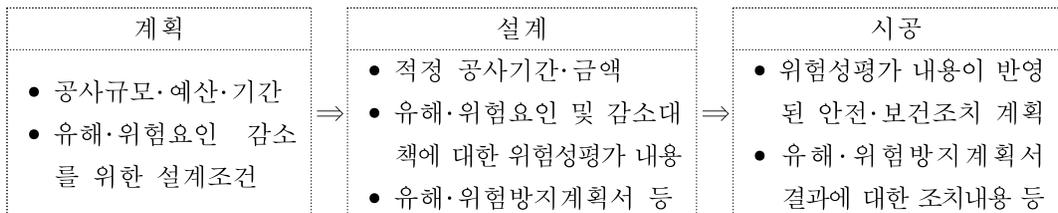
1. 공사규모, 공사예산 및 공사기간 등 사업개요
2. 공사현장 제반 정보

2)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2012, 42면.

3. 공사시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 ②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른 설계안전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2. 제1항제3호의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3. 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계획
  4. 법 제68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 배치계획
  5. 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
  6. 법 제73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지도 실시계획
- ③ 법 제67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안전보건대장에 포함하여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2. 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3. 법 제72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4. 법 제73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 지도 계약여부, 지도 결과 및 조치내용
-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과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에서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부령에 안전보건대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2) 건설공사도급인의 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조치 신설

제98조(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조치 등) 법 제76조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은 영 제67조에 따른 기계·기구 또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조립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

1. 작업시작 전 기계·기구 등을 소유 또는 대여하는 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 실시
2.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영 제67조제1호 및 제3호에 한함)
3. 작업자가 법 제140조에서 정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확인(영 제67조제1호 및 제3호에 한함)
4. 그 밖에 해당 기계·기구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조치
5. 기계·기구 등의 결함, 작업방법과 절차 미준수, 강풍 등 이상 환경으로 인하여 작업수행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중지 조치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계약의 형태와 관련업이 현장에서 설치·해체·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건설기계기구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의무를 규정한 바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안전조치의 내용을 작업 단계에 맞게 순차적으로 구성하고 해당 조치 단계에서 건설공사 도급인이 이행해야 할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함

##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신설

제99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시간은 별표 6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자체

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26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 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교육면제에 대하여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채용”은 “최초 노무제공”으로 본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의무가 부과되었고, 현재 교육실시 대상인 5개 직종에 대한 교육실시의무가 부과되었음(시행령)

교육실시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특별교육 대상은 건설기계운전자이며 최초 노무 제공시 교육은 5개 직종 모두에 해당함

[참고]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제27조 제4항에서는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에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교육시간의 1/2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자가 이직 후 1년 이내 채용되어 이전과 동일한 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거나 같은 사업장 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교육시간의 1/2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음

#### 4) 가맹본부가 마련해야 할 안전·보건 프로그램 내용 등

제100조(프로그램의 내용 및 시행) ①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79조제1항의 가맹본부(이하 “가맹본부”라 한다)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안전보건활동 계획
2. 가맹본부의 프로그램 운영 조직 구성, 역할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지원 체계
3. 가맹점 내 위험요소 및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가맹점 안전보건매뉴얼

4. 가맹점의 재해 발생에 대비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조치사항
-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내용을 연 1회 이상 교육하여야 한다.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신설 공포됨에 따라 부령으로 위임된 안전·보건 프로그램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안전·보건프로그램에 포함될 사항은 안전보건경영방침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설비·기계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설비·기계에 대한 안전보건정보를 포함하여야 함. 안전·보건 프로그램 등의 교육 실시와 관련해서, 교육방법 및 횟수를 가맹사업의 특성에 맞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IV.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른 안전보건기준규칙 정비

### 1. 안전보건기준규칙 정비 방향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위임 관계가 있는 조문 및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조문에 대한 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

대상 조문을 보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43조, 제86조, 제132조, 제134조, 제151조, 제179조, 제236조, 제241조, 제241조의2, 제495조, 제619조의2, 제641조 그 밖에 관련 별표 등이 해당됨

법률 개정에 따라 개정되는 조문 외에 규칙의 정비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2. 안전보건기준규칙 정비 내용

2019년 4월 22일 입법예고 된 안전보건기준규칙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지게차 안전조치 강화(안 제179조)에 관한 사항은 산업현장에서 중량물 운반 목적으로 사용하는 지게차 작업·운행 중 후방 시야 미확보 등으로 노동자 충돌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게차 작업을 하는 경우 지게차와 근로자의 충돌 위험예방을 위해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함

화재·폭발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안 제236조, 제241조의2)에 관한 사항은 현행 화재감시자 배치대상 사업장을 대규모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어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장소에 각종 가연성 자재가 방치되어 화재발생시 다량의 유독가스 배출로 대형인명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용접·용단 작업에서 불꽃의 비산 거리(11m)를 고려하여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유독가스를 발생하는 합성 섬유·합성수지 등 가연성 자재를 화재위험장소에서 분리하여 저장·보관하도록 함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강화(안 제241조, 제241조의3) 현행 화재예방조치 대상은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가연성 물질이 있는 건축물 또는 설비의 내부로 제한하고 있으나, 외부작업에서도 가연성 물질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용접·용단작업 등 화재위험작업 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불티가 가연물에 옮겨 붙어 대형 화재사고로 진행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됨에 따라 화재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대상을 통풍이나 환기에 관계없이 건물·설비의 외부까지 확대하고, 작업시작 전 사전점검 및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사업주의 작업승인 하에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조치 등(안 제671조, 제672조)은 법의 보호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을 마련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 ABSTRACT

A study o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its enforcements for the reinforce the field operability

Joungmee Han, Junseo Lee, Seunghye Wang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KLRI

### Object

Following the process of wholly amending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he process of amending all subordinate statutes should be completed before its enforcement (2020).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specificity and completeness of sub-statutes to help the public understand laws as well as to maintain systematic relations among its amendment and sub-statutes, and to reinforce the field operability.

### Method

Following the process of revision of delegation provisions of the entire amendment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he current enforcement ordinance and enforcement regulation are revised and rearranged according to the system of delegated legislation.

## **Result**

A draft of enforcement ordinance and enforcement regulation in accordance with the entire amendment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s provided, and explanations on major articles is attached.

Therefore, the completeness of statutes is expected to be improved by systematically adjusting the sub-statutes of the curren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o the framework of legislative drafting standards.

All the articles related to prohibition of harmful work contracts are rearranged, and sub-statutes were sup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amendment direction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

## **Conclusion**

The draft of sub-statutes on measures of the scope of liability for industrial accidents prevention is provided and explained.

## **Keyword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Enforcement, prohibition of harmful work contracts, liability for industrial accidents prevention, OSHA

**<별 첨>**

**법, 시행령안, 규칙안 대조표(작업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b>제1장 총칙</b></p> <p><b>제1조(목적)</b> 이 법은 <u>산업 안전 및 보건</u>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u>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업재해”란 <u>노무를 제공하는 자가</u>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li> <li>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li> <li>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li> </ol>	<p><b>제1조(목적)</b>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정의)</b>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b>제1조(목적)</b>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정의)</b>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u>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u>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근로자의 재해</u>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li> <li>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li> <li>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환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li> </ol> <p>② “안전·보건표지”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장소 또는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 또는 안내, 그 밖에</p>	<p>- 규칙 제2조제1항 : 당초 법의 적용대상이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 됨에 따라 재해에 해당하는 대상을 근로자로 특정하려 하였으나(고용부의견 반영), 최종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수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근로자” 삭제 제안함</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p> <p>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p> <p>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p> <p>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p> <p>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p> <p>9.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p>		<p>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기호 및 글자 등으로 표시하여 근로자의 판단이나 행동의 착오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특정 장소, 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표지를 말한다.</p> <p>②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 규칙 제2조제2항 → 법안 제37조로 이동·반영</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p> <p>1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p> <p>12.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평가하는 것을 말한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13.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p> <p><b>제3조(적용 범위)</b>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b>제4조(정부의 책무)</b>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p>	<p><b>제3조(적용범위 등)</b> ① 법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 규정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p> <p>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p> <p><b>제4조(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b>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기법의 연구 및 보급, 안전·보건 기술의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 법안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사업장” 삭제 → “산업재해”로 정리</p> <p>- 따라서 시행령에서도 “산업재해”에 대</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p> <p>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p> <p>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p> <p>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p> <p>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p> <p>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p> <p>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p> <p>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한 시책으로 수정</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제4조 제1항 제3호	<p><b>제5조(안전·보건 경영체제 등의 추진)</b></p> <p>① 고용노동부장관은 <u>법 제4조제1항 제4호</u>에 따른 사업의 안전·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체제 운영 등의 기법을 연구·보급하여야 한다.</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사업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p>		
제4조 제1항 제4호	<p><b>제6조(안전·보건의식을 복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b>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u>법 제4조제1항제5호</u>에 따라 안전·보건의식을 복돋우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1.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의 설정 및 그 시행</p> <p>2. 안전·보건 교육의 진흥 및 홍보의</p>		<p>- 무재해사업장 인정제도 폐지에 따라 무재해운동 근거만 유지하는 것으로 회의(11.15) 후 정리하였음</p> <p>- 따라서 제6조제4호에 기존 시행령 “무</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제4조 제1항 제6호</p>	<p>활성화</p> <p>3. 안전·보건과 관련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활동의 촉진 등</p> <p>4. 사업장 무재해운동의 확산과 그 추진기법의 보급 등</p> <p>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p> <p><b>제7조(무재해운동의 추진)</b>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u>법 제4조제1항제4호</u>에 따른 무재해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1. 사업장 무재해운동의 확산과 그 추진기법의 보급</p> <p>2. 무재해 목표를 달성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 무재해운동의 활성화</p> <p>② 무재해운동의 추진방법 등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p> <p>제7조(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고용</p>		<p>재해운동의 추진” 조문을 반영함</p> <p>* 시행령 - 제3조의4 ‘무재해운동’: 법에 무재해운동관련 조문 없음 - 위와 같이 정리하고 해당 조문은 삭제함</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b> ① 사업주(제 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p>	<p>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산업재해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p> <p><b>제8조(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b>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근로자 건강의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보급·확산</li> <li>2. 깨끗한 작업환경의 조성</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p> <p><b>제9조(사업주 등의 협조)</b> 사업주와 근로자, 그 밖의 관련 단체는 제3조 및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p>		<p>* 법 제3조의6 ‘건강증진사업’: 법에 관련 조문 없음</p> <p>- 기타 사항을 위임한 법안 제4조제1항제8호 인용하도록 함</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li> <li>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 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li> <li>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li> </ol>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1.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p> <p>2. 원재료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p> <p>3. 건설물을 발주·설계·건설하는 자</p> <p><b>제6조(근로자의 의무)</b>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p> <p><b>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공표)</b>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제8조(협조 요청 등)</b>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행정기관(고용노동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규제를 하려면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행정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해당 규제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에게 협의·조정 사항을 보고하여 확정할 수 있다.</p> <p>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협조를</p>	<p><b>제10조(산업재해 예방 사업 관련 정보·자료의 요청)</b> 법 제8조제5항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자료”는 ……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p> <p>※ 공단에 요청하여 받아야 하는 자료, 정보의 목록을 반영하여 수정하기로 함</p>	<p><b>제3조(협조요청)</b>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전·보건·의식 정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의 추진</li> <li>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지원</li> <li>3. 안전·보건과 관련된 중복규제의 정비</li> <li>4. 안전·보건과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장에 대한 자금융자 등 금융·세제상의 혜택 부여</li> <li>5.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하는 안전·보건점검의 실시</li> <li>6.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 시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른 공사 실적액의 감액 (이 경우 산업재해발생률의 산정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li> </ol>	<p>* 법 제11조</p> <p>- 제5항 제3호 : 시행령에 위임받은 내용에 대한 규정 없음</p> <p>→ 회의(11.15)에서 공단을 통해 받는 자료 목록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음</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요청할 수 있다.</p> <p>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공단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1.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p> <p>2.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정보</p> <p>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p>		<p>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다음 각 목의 사항</p> <p>가.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가감점 부여(이 경우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p> <p>나. 사업주가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는 등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실적을 평가한 결과에 따른 가점 부여</p> <p>8. 산업재해 또는 건강진단 관련 자료</p> <p>9. 정부포상 수상업체 선정 시 산업재해발생률이 같은 종류 업종에 비하여 높은 업체(소속 임원은 포함한다)에 대한 포상 제한에 관한 사항</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10.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각각 등록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 중 법 제36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가 장착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에 관한 자료</p> <p>1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구급활동일지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출동 및 처치기록지</p> <p>1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산업재해 발생률 및 그 산정내역을 해당 건설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정내역에 불복하는 건설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p>	<p>-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위치 보류, 위임 없음 → 안전과 의견 취합 후 수정하기로 함(11.15 회의) → 특별히 의견 없</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b>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산업 안전 및 보건 등에 관한 정보를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과 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u>으로 정한다.</p> <p><b>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b></p> <p>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를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p>	<p><b>제11조(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위탁)</b>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p> <p>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p> <p>1.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p>	<p>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b>제4조(통합정보시스템 정보의 제공)</b></p> <p>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산업 안전 및 보건 등에 관한 정보를 <u>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을 위해</u>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과 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p> <p><b>제5조(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관련 자료 제출)</b> 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p>	<p>으로서 법 제8조제4항 관련으로 수정함</p> <p>- 시행령 제12조제3항은 현행 시행규칙 제30조제4항을 상향 입법한 것임. 이 규정에는 ‘기준</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해발생건수등”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u>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u></p>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공표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u></p>	<p>재해자”로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p> <p>2. 사망만인율(사망재해자 수를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p> <p>3.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p> <p>4.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p> <p>5.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p> <p>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3조에 따른 도급인인 사업주가 같은 조에 따른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로서 관계수급인의 사업장이 제1항 각 호(제2호의 3 또는 제3호의 사업장은 제외한다)의</p>	<p>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라 한다)에 수급인 [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u>공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영 제1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인 도급인에게 도급인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공표의 대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요청하여야 한다.</u></p> <p>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도급인은 4월 3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p>	<p>에 관한 규칙”을 인용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득이하게 ‘기준에 관한 규칙’이 포함된 호는 시행규칙으로 재위임하여 인용의 단계를 맞추었음</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수급인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면서 해당 재해가 발생한 도급인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10조제2항에서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li> <li>2.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li> <li>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li> <li>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li> <li>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li> <li>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li> <li>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li> <li>8.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도급금지</li> </ol>	<p>③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그의 수급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작업을 하는 장소</p> <p>9.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작업을 하는 장소</p> <p>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용단작업</p> <p>나.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용단작업</p> <p>다.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제4호에 따른 인화성 물질을 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용단작업</p> <p>라. 가연물(可燃物)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p> <p>10.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으로 되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장소</p> <p>11.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p> <p>12.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 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13.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취급 특별 장소</p> <p>14.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p> <p>15.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p> <p>16. 안전보건규칙 제574조 각 호에 따른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p> <p>17.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p> <p>18.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p> <p>19. 안전보건규칙 제132조에 따른 양중기(揚重機)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狹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p> <p>20.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법」</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포함한다)                      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p> <p>④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도급인이 사용                      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                      사망만인율(질병으로 인한 사망재해                      자를 제외하고 산출한 사망만인율을                      말한다) 보다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                     자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수급                      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                      한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                      장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조업</li> <li>2. 철도운송업</li> <li>3. 도시철도운송업</li> <li>4. 전기업</li> </ol>	<p>제6조(공표방법) 법 제10조제4항에 따</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운영)</b>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지도시설, 연구시설 및 교육시설</li> <li>2. 안전보건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을 위한 시설</li> <li>3.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설</li> <li>4. 그 밖에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li> </ol> <p><b>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財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p>		<p>른 공표는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된 일반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p> <p>※ 추가 규정 불필요</p>	<p>- 11. 15 현재 시행규칙에 추가할 예방시설 없으므로 시행규칙에 추가 규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음 (11. 15 회의)</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li> <li>2.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li> <li>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li> </ol> <p><b>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b>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와 관련된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항에 따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li> <li>2.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li> </ol>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분야별로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p> <p><b>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b></p> <p><b>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b></p> <p><b>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b> ①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u></p> <p>②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p>	<p><b>제13조(승인 대상 회사 등)</b>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상시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를 말한다.</p> <p>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회사의 대표이사(「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대표집행임을 포함한다)는 회사의 업무와 환경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u>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이사회에 보고하고</p>	<p><b>제7조(이사회에 대한 보고 및 승인 등)</b></p> <p>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회사의 대표이사(「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대표집행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매년 1회 이상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p> <p>③ 이사회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p>	<p>- 법률안에서는 “대표이사”로만 정하고 있으나 상법에서는 “대표집행임원”이 동등한 수준의 대표자로 규정되어 있음</p> <p>- 법률안 수정 기회가 있으면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은”으로 수정</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u>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u></p> <p><b>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b>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li> <li>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li> <li>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li> <li>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li> </ol>	<p>승인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년도 안전·보건활동 실적</li> <li>2.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안전·보건활동 계획</li> <li>3. 안전·보건조직 구성·인원 및 역할</li> <li>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시설 및 비용</li> </ol> <p><b>제1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b>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 2와 같다.</p> <p>② 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p> <p>③ 사업주는 관리책임자에게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p> <p>④ 사업주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p>	<p>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수립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이 미흡하다고 승인하지 않는 경우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p>④ 이사회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대표이사는 지체 없이 보완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b>제7조(관리책임자등의 선임 등)</b>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을 선임(選任)하거나 지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임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li> <li>2. 법 제15조(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li> <li>3. 법 제16조(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li> <li>4. 법 제16조의3(제19조)제1항에 따른</li> </ol>	<p>※ 법 제14조제3항의 계획 내용은 하위 법령에 기준을 반영할 필요가 없을지 검토</p> <p>- 영 제14조제2항 : 시행규칙 제1항에서 규정하였던 “지체 없이” 선임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고용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함</p> <p>- 영 제2항 유지(고용부 의견 반영)</p> <p>* 규칙 제14조</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p> <p>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p> <p>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p> <p>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p> <p>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사항</p> <p>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p> <p>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u>으로 정한다.</p>	<p>책임자를 선임하고,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u>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u> 따른 업무의 수행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p>	<p>안전보건관리담당자</p> <p>5. 법 제17조(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p> <p>6. 법 제18조(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p> <p>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 등(같은 항 제1호, 제4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을 선임 또는 다시 임명하거나 법 제15조제4항 및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업무 또는 보건관리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위탁 후 수탁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1)서식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또는 별지 제1호의3(2)서식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 1항 : 관리책임자 등에 관하여 해당 법률에서 두어야 한다고 규정함. 삭제</p> <p>- 제2항 : 제2항에서 제1항제1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있으므로 해당되는 대상별로 하위규정으로 이동(고용부 회의에서 확인 완료). 이 조에서는 삭제</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제15조 제1항 제9호</p> <p>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u>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u>(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u>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p>	<p>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①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u>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u>”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li> <li>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li> <li>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li> </ol>	<p>제8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법 제15조제1항제9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p>	<p>* 시행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조 1항 7호 :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업무는 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해당. 여기에서 규정하지 않기로 함(고용부 회의)</li> <li>- 영 제3항, 제4항 : 특별히 위험방지가 필요하여 특별교육이 필요한 경우로 법률의 위임규정 없음 (기존 단서 삭제) →</li> </ul>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p> <p>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p> <p>5.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p> <p>가. 산업보건의</p> <p>나. 안전관리자[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p> <p>다. 보건관리자[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p> <p>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p>		<p>삭제하기로 함(고용부 회의)</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p> <p>6.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p> <p>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사항</p> <p>②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③ <u>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u>이란 별표 2와 같다.</p> <p>④ <u>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u>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제17조(안전관리자)</b>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p> <p>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p>	<p>1.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p> <p>2.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관리감독자가 법 제3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p> <p>3.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로서 <u>공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u></p> <p><b>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b> ①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임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p> <p>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p>	<p><b>제9조(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선임)</b>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는 영 제16조제5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를 둔 경우</p> <p>2.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p>	<p>영 : 규칙 ‘관리책임자 등의 선임 등’에서 통합하여 규정하였던 “지체 없이” 선임할 의무를 영 제16조제1항에 반영하여 수정함</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u>으로 정한다.</p>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④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p>	<p>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제17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 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계</p>	<p>(건설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또는 공사금액)를 합계하여 그 근로자 수 또는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p>	<p>건설업 규모 산정시 공사 진행 중 상시근로자수 파악이 어려워 사문화된 근로자수에 대해 삭제</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는 300명 이내[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내인 사업장]이어야 한다.</p> <p>1.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p> <p>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p> <p>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p> <p>⑥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p>	<p><b>제10조(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b> 사업주가 영 제16조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업무를 위탁(위탁 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별지 제○호(1)서식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또는 별지 제○호(2)서식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건설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를 “공사금액”으로 명확히 함</p> <p>- 시행규칙 : ‘관리책임자등의 선임 등’ 규정에서 제2항을 분리하여 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을 여기에 규정함</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제17조 제2항</p>	<p>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다시 임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b>제17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b></p> <p>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p> <p>2.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하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과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p> <p>3.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p> <p>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p> <p>5.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p> <p>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p> <p>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p> <p>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p> <p>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p> <p>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p> <p>②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제17조 제2항</p> <p>제17조 제3항</p>	<p>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p> <p>③ 사업주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p> <p>④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p> <p>⑤ 안전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p> <p><b>제18조(안전관리자의 자격)</b> <u>법 제17조 제2항</u>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4와 같다.</p>	<p><b>제11조(안전관리자 등의 증원·교체임명 명령)</b>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u>법 제17조제3항·제18조제3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라</u>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이 조에서 “관리자”라 한다)를 정수</p>	<p>- 시행령 제2-5조는 제2-17조와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규정하고 있음</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업성질병자 발생 당시 사업장에서 해당 화학적 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li> <li>2. 중대재해가 연간 3건 이상 발생한 경우</li> <li>3.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li> <li>4. 별표 12의2 제1호에 따른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이 경우 직업성질병자 발생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결정일로 한다.</li> </ol> <p>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다시 선임할 것을</p>	<p>- 시행규칙 제11조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관리담당자에 관한 증원·교체 임명이 같이 규정됨</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제17조제4항</p>	<p>제19조(안전관리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을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본다.</p>	<p>명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주 및 해당 관리자의 의견을 듣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 또는 소명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자의 정수 이상 증원 및 교체임명 명령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p> <p>제12조(안전관리 업무의 위탁계약)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사업주로부터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호서식의 안전관리 업무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 법 제17조제4항에 서는 위탁계약 양식에 대한 명시적인 위임은 없으나, 현행 규정이 있으므로 위임근거 표시하고 규칙 제12조를 규정함</p>
<p>제18조(보건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p>	<p>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① 사업주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사유가 발</p>		<p>- 시행령 : 안전관리자에 관한 보고 절</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p> <p>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u>으로 정한다.</p>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건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④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p>	<p>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임하여야 하며,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5와 같다.</p> <p>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제18조제1항 및 이 영 제○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만을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가 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p> <p>③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p>		<p>차를 보건관리자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에서 보건관리자 선임 등 양식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건관리자에 관한 별도의 보고양식 규정은 불필요함</p> <p>- 영 제3항의 준용규정은 안전관리자 제16조 규정의 조문숫자를 반영하도록 함</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기관”이라 한다)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p> <p><b>제18조 제2항</b></p>	<p><b>제21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①</b>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보건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li> <li>2.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li> <li>3. 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li> <li>4.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li> <li>5. 제2-21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li> </ol>	<p><b>제13조(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b> 사업주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강관리실: 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고 통풍과 채광이 잘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에 적합한 면적을 확보하고, 상담실·처치실 및 양호실을 갖추어야 한다.</li> <li>2. 상하수도 설비, 침대, 냉난방시설, 외부 연락용 직통전화, 구급용구 등</li> </ol>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p> <p>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p> <p>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p> <p>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p> <p>다.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p> <p>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p> <p>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p> <p>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p> <p>9.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p> <p>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p> <p>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p> <p>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의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p> <p>13.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p> <p>14.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p> <p>② 보건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p> <p>③ 보건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과 제17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자에게 지원하여야 할 시설 및 장비는 <u>고용노동부령</u>으로</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제18조 제2항</p> <p>제18조 제4항</p>	<p>정한다.</p> <p><b>제22조(보건관리자의 자격)</b> 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6과 같다.</p> <p><b>제23조(보건관리 업무의 위탁 등)</b>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지역별 보건관리전문기관과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구분한다.</p> <p>②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li> <li>2. 외판곳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li> </ol> <p>③ 제1항에 따른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는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한다.</p>	<p><b>제14조(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 전문기관)</b> ①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업종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광업으로 한다.</p> <p>②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납 취급 사업</li> <li>2. 수은 취급 사업</li> <li>3. 크롬 취급 사업</li> <li>4. 석면 취급 사업</li> <li>5. 법 제123조에 따라 제조·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li> <li>6.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단순 반복작업, 영상표시단말기 취급작업,</li> </ol>	<p>-</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b>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u>으로 정한다.</p>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제2항에 따라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p>	<p>④ 보건관리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p> <p><b>제24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b> ①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조업</li> <li>2. 임업</li> <li>3.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li> <li>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li> <li>5. 환경 정화 및 복원업</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중량물 취급작업 등을 하는 사업</p>	<p>영 : 영 제24조제5항 신설(고용부 의견 반영)</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명할 수 있다.</p> <p>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p>	<p>1.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출 것</p> <p>2. 제22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출 것</p> <p>3.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p> <p>③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p> <p>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p> <p>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임하여야 한다.</p> <p>⑥ 제2항제3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시행일] 제24조의 개정규정은 다음</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제19조 제2항</p>	<p>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8년 9월 1일</li> <li>2.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3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9년 9월 1일</li> </ol> <p><b>제25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b>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li> <li>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li> <li>3. 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li> <li>4. 법 제134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li> <li>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li> <li>6.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li> </ol>		<p>※ 영 제25조 : 고용부에서 의견 재취합하기로 함</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제4항	<p>보좌 및 조언·지도</p> <p>[시행일] 제25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8년 9월 1일</li> <li>2.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3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9년 9월 1일</li> </ol> <p><b>제26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 등)</b> ① 제24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을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본다.</p> <p>[시행일] 제26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p>		<p>- 영 : 법 제19조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을 위임하지 않고 있으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유지함 (고용부 의견 반영)</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제20조(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b>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지도·조언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전관리자</li> <li>2. 보건관리자</li> <li>3. 안전보건관리담당자</li> <li>4.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 한정한다)</li> </ol> <p><b>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①</b>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되려는 자는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8년 9월 1일</li> <li>2.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3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9년 9월 1일</li> </ol> <p><b>제27조(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b>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p>	<p><b>제15조(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①</b> 영 제27조 본문에 따른 같은 조 제1호의</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한다.</p> <p>③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한다.</p> <p>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p>	<p>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p> <p>1. 안전관리전문기관</p> <p>가. 법 제146조에 따라 등록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는 제외한다)</p> <p>나. 안전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p> <p>2. 보건관리전문기관</p> <p>가. 법 제146조에 따라 등록된 산업보건지도사</p> <p>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p> <p>다.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p> <p>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p> <p>마. 보건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p>	<p>안전관리전문기관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은 별표 5와 같다.</p> <p>② 영 제27조 본문에 따른 같은 조 제2호의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은 별표 6과 같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지정을 받은 경우</p> <p>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p> <p>3.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p> <p>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p> <p>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p> <p>⑤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각각 해당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p>	<p><del>제○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del></p>	<p><del>제16조(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 등)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업무를 수행</del></p>	<p>영 :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규정은 별도의 내용이 지정신청 양식을 부령에서 정하기 위한 규정이었음. 법 제21조제3항에 지정절</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다.                      ②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 변경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하려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p> <p>1. 안전관리전문기관                      가. 정관(산업안전지도사인 경우에는 제136조의8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나. 별표 5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다.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라. 최초 1년간의 안전관리 업무 사업계획서</p> <p>2. 보건관리전문기관                      가. 정관(산업보건지도사인 경우에는 제136조의8에 따른 등록증을 말</p>	<p>차에 관한 위임이 부령으로 되어 있으므로 시행령에서 부령으로 위임하는 규정 불필요(삭제)</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한다)</p> <p>나. 정관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p> <p>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p> <p>라. 별표 6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p> <p>마.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p> <p>바. 최초 1년간의 보건관리 업무 사업계획서</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이하 “국가기술자격</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증”이라 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최초 1년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5호 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지정서를 분실하거나 지정서가 손상된 때에는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p> <p>⑤ 영 제2-12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제21조 제2항</p>	<p><del>제2-13조(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del>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49조에 따라 등록된 산업보건 지도사</li> <li>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li> <li>3.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li> <li>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li> </ol>	<p>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p> <p>⑥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p> <p><del>제20조(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del> 영 제2-12조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은 별표 6과 같다.</p>	<p>- 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 규정 통합</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p> <p>5. 보건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안</p> <p><b>제2-14조(준용)</b> 보건관리전문기관에 관하여는 제2-12조 및 제15조의5부터 제15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b>제21조(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b> ① 영 제2-14조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만 해당한다) 또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지역별 보건관리전문기관만 해당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p> <p>1. 정관(산업보건지도사인 경우에는 제136조의8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p> <p>2. 정관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p> <p>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갈음할 수</p>	<p>- 시행령(준용)은 안전관리전문기관과 보건관리전문기관의 근거조문이 통합됨에 따라 불필요함. 각 조문에 통합하여 규정</p> <p>- 시행규칙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은 위치 이동하여 통합</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있는 서류(법인인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p> <p>4. 별표 6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p> <p>5.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p> <p>6. 최초 1년간의 보건관리 업무 사업계획서</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제21조 제2항 평가		<p>③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을 위한 심사, 지정서의 발급·재발급, 지정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p> <p><b>제17조(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의 평가 등)</b> ① 공단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li> <li>2. 기술지도의 충실성을 포함한 보건관리 업무 수행능력</li> <li>3. 안전관리·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의 만족도</li> </ol> <p>② 공단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위하</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받은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는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p> <p>④ 공단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제4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평가대상기관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p> <p>⑥ 공단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에</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제21조 제2항 평가		<p>대한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⑦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단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여야 한다.</p>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기준, 절차·방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p> <p><b>제15조의4(안전관리전문기관의 평가 등)</b> ① 공단이 <u>법 제15조제5항에 따라</u> 안전관리전문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크에 대한 관리능력</li> <li>2. 기술지도의 충실성을 포함한 안전관리 업무 수행능력</li> <li>3.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의</li> </ol>	<p>-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 규정 통합</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만족도</p> <p>② 공단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받은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는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p> <p>④ 공단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제4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평가대상기관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제21조 제3항 위탁업무 수행할 수 있는 지역 지정</p>		<p>⑥ 공단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⑦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단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여야 한다.</p>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기준, 절차·방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p> <p>제18조(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둘 이상의 지방고용노동청장의 관할지역에 걸쳐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각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상호 협의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p>	<p>-</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제21조제3항 업무수행지역</p> <p>제21조제3항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p>		<p>하여야 한다.</p> <p><b>제19조(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지역)</b>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한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지역(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p> <p><b>제20조(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기준)</b>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이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p> <p>②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매월 고용노동부장관이</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제21조제3항		<p>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보건관리 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법령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과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해당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보건관리 업무의 수행 내용,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 등을 기록한 사업장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보건관리 업무를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사업장관리카드를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공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b>제19조의3(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기준·지역 등)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기준, 업무 수행 지역</b></p>	<p>안전관리전문기관 규정에 통합하여 규정함. 준용규정 불필요</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제21조제3항 업무수행에 관한 기준?		<p>및 보건관리 업무 위탁계약에 관하여는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본다.</p> <p><b>제21조(비치서류)</b>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수탁에 관한 서류</li> <li>2. 그 밖에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서류</li> </ol> <p><b>제22조(전문기관의 지도·감독 등)</b>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p>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제21조제4항 제5호</p> <p>제22조(산업보건의)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의</p>	<p>제28조(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전관리·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위탁 수수료를 받거나 안전관리·보건관리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li> <li>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보건관리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li> <li>3. 위탁받은 안전관리·보건관리 업무에 차질이 생기게 하거나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li> <li>4.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li> </ol> <p>제29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① 사업주는 산업보건의를 선임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임하여야 하며,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산업보</p>	<p>관이 정한다.</p> <p>제23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보고) 사업주가 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선임한 경우에는 별지 제○호(1) 서식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p>	<p>- 기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규정에서 한꺼번에 규정하고 있던 산업보건의의 선임</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산업보건의의 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u>으로 정한다.</p>	<p>건의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를 두는 사업장으로 한다. <u>다만, 제23조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와 공공행정, 사회보장 행정 및 교육서비스업에서 보건관리자를 직접 선임한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을 수 있다.</u></p> <p>②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촉된 산업보건의는 제31조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p>③ 사업주는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사업장 수 및 근로자 수, 그 밖에 선임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p>	<p>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또는 별지 제○호(2)서식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보고 양식을 대상별로 분리하여 여기에 반영함</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b>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p> <p>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p> <p>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u>으로 정한다.</p>	<p><b>제32조(명예감독관 위촉 대상 등)</b>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li> <li>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li> <li>3.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li> <li>4.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li> </ol>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② 명예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업무(제8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정하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로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li> <li>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 입회</li> <li>3.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li> <li>4.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li> <li>5.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li> <li>6.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li> </ol>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에 걸린 근로자가 여럿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p> <p>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p> <p>8.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건의</p> <p>9. 안전·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과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p> <p>10.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계몽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p> <p>③ 명예감독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명예감독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⑤ 명예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b>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p>	<p><b>제33조(명예감독관의 해촉)</b>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li> <li>2.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감독관이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li> <li>3. 명예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li> <li>4.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li> </ol>		
	<p><b>제34조(회의 등)</b>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li> <li>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li> <li>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li> <li>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p> <p>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p> <p>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p>	<p>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근로자대표, 명예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p> <p>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 두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최 일시 및 장소</li> <li>2. 출석위원</li> <li>3.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li> <li>4. 그 밖의 토의사항</li> </ol>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해서는 아니 된다.</p> <p>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p> <p>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24조제3항 회의</b></p>	<p><b>제35조(회의 결과 등의 주지)</b> 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2. 법 제22조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감독관</p> <p>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명예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수의 근로자를 말한다)</p> <p>②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p> <p>1. 해당 사업의 대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p> <p>2. 안전관리자(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p> <p>3. 보건관리자(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p> <p>4.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p> <p>5.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p> <p>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으로 하는 경우로서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p> <p>1. 사용자위원인 안전관리자</p> <p>2. 근로자위원으로서 도급 또는 하도급</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제24조제7항	<p>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p> <p><b>제38조(위원장)</b>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p>		
제24조제7항	<p><b>제39조(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b> 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24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li> <li>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li> </ol>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b>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b></p> <p><b>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b>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li> <li>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li> <li>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li> <li>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li> <li>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p>	<p>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p>	<p><b>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b></p> <p>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은 별표 6의2와 같다.</p> <p>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6의3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③ 사업주가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소방·가스·전기·교통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p> <p>③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한다.</p> <p><b>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b>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b>제27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b>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p> <p><b>제28조(다른 법률의 준용)</b> 안전보건관</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리규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기준법」 중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3장 안전보건교육</b></p> <p><b>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b></p> <p>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p> <p>② 사업주는 근로자(건설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u>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u> 하여야 한다.</p> <p>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u>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u></p>		<p><b>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b>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채용시 교육(이하 “채용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p> <p>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p>	<p>① 법에 “근로자에게”로 명시되어 문구 통일</p> <p><b>①항 하단 단서조항을 추가함</b></p> <p>③</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항과 문구통일 (따른 → 따라) (근로자에 대한 → 근로자에게)</li> <li>· 안전·보건의 “.”생</li> </ul>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 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건관리 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p>	<p>략 및 문구 간략화 (제3장 안전보건교육과 통일)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 안전보건교육)                      다. 위탁 업무 → 위탁 업무 (두단어를 하나로 붙임)                      라. 위탁 업무 → 위탁 업무 (두단어를 하나로 붙임)                      안전·보건 → 안전보건</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b> ① 사업주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li> <li>2. 근로자가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li> </ol>		<p>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p> <p>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li> <li>3.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li> <li>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li> </ol> <p><b>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b> ①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법 제30조제1항1호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이하 “근로자 정기교육”이라 한다)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별표 8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까지의 범위에서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 법의 문언이 ‘특별교육’이 ‘추가로 교육하여야 한다’고 수정되었으므로 이에 맞춰 ‘추가교육’이라고 수정 검토</p> <p><b>제27조 전면수정(고시를 상향시킴) 및 특고 관련</b></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p> <p>3. 관리감독자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p> <p>② 사업주는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등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 제11조제4호에 의해 설치된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프로그램 등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때에는 해당 시간을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해당 분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 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건강관리 활동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p> <p>③ 사업주는 법 제30조제1항3호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별표 8에서 정한 정기교육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다.</p>	<p>내용을 추가함</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1. 법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p> <p>2. 법 제16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직무교육위탁기관에서 실시한 전문화교육</p> <p>3. 법 제16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직무교육위탁기관에서 실시한 통신교육</p> <p>4. 법 제165조제2항제5호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p> <p>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기교육면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p> <p>④ 사업주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을 경우 채용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시간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p> <p>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 별표</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8에서 정한 채용 시의 교육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이상</p> <p>2. <u>별표 8의2의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u> <u>작업(이하 “특별교육대상작업”이라 한다)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별표 8에서 정한 특별교육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이상</u></p> <p><u>가.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u></p> <p><u>나.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u></p> <p>3. <u>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의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u></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신설</p>		<p>아니할 수 있다.</p> <p><b>제5-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b></p> <p>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p> <p>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③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33조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p> <p>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p>	<p>특고관련 내용 추가</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신설</p> <p>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①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공받는 자는 제1항의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5-26(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교육면제에 대하여는 제27조제1항, 제2항,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채용”은 “최초 노무제공(이하 같다)”으로 본다.</p> <p>제28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시간·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하 “건설업기초교육”이라 한다)의 교육 시간은 별표 8에 따르고, 교육 내용은 별표 8의2에 따른다.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기관(이하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이라 한다)이 건설업기초교육을 할 때에는 별</p>	<p>특고관련 내용 등을 추가함</p> <p>안전·보건 → 안전보건</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한다.</p> <p><b>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b> ① 사업주(제5호의 경우는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전보건관리책임자</li> <li>2. 안전관리자</li> </ol>		<p>표 8의2의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영 별표 6의4의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생 관리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b>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b> ①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임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p>	<p>안전·보건 → 안전보건</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가. 안전관리전문기관                      나. 보건관리전문기관                      다.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라. 제96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                      마. 제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                      바. 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한다.</p>		<p>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3.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4.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보건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7. 제96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                      8. 제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                      9. 법 제121조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제32조제1항		<p>기관에서 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p> <p>②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의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p> <p>③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원격교육 등의 교육방법, 직무교육 기관의 관리,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b>제30조(직무교육의 면제)</b>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p> <p>1. 영 별표 4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p> <p>2. 영 별표 4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p> <p>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p> <p>② 영 별표 4 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기업활동 규제완화</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 ①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p>	<p>제40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및 취소)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인 또는 산업안전보건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p>	<p>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 보건관리자로서 영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제29조제2항의 교육내용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p> <p>③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p> <p>제31조(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신청 등) ①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6서식의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p>	<p>- 법 제33조1항 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대통령령없음 → 타 입법</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육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절차 및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p>④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p>	<p>로서 별표 6의3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p> <p>②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 등록하거나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u>”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장명(상호)</li> <li>2. 사업장의 소재지</li> <li>3. 대표자의 성명</li> <li>4. 최초 1년간 교육사업계획서</li> </ol> <p>④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u>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실시를 거부</li> </ol>	<p>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산업안전·보건 안전보건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li> <li>2. 영 별표 6의3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서류</li> <li>3. 영 별표 6의3에 따른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 및 장비 명세서</li> </ol> <p><b>4. 최초 1년간 교육사업계획서</b></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p>	<p>례를 참고하여 제안함(확인요청)</p> <p><b>안전·보건</b> → <b>안전보건</b></p> <p><b>② 누락된 시행령 ②항을 삽입함</b></p> <p><b>3. 안전보건위탁기관 변경등록등 기재 사항 변경시만 변경등록 신청 필요</b></p> <p><b>“4. 최초 1년간 교육사업계획서”를 추가함</b></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한 경우</p> <p>2. 교육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p> <p>3.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p> <p>4.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p>	<p>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1. 국가기술자격증</p> <p>2.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p> <p>3.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한다)</p> <p>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영 제40조제1항 및 별표 6의3에 따른 등록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7서식의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등록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p> <p>⑤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이 등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6서식의 안전보건교육기관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제33조 제2항		<p>육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의 공개는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p> <p>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과정의 운영실태</li> <li>2. 인력·시설·장비 보유 수준 및 활용도</li> <li>3. 교육 서비스의 적정성·충실성</li> </ol>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b>제33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평가 등)</b>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의 공개는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제33조제3항</p>	<p>제42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이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고용</p>	<p>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과정의 운영실태</li> <li>2. 인력·시설·장비 보유 수준 및 활용도</li> <li>3. 교육 서비스의 적정성·충실성</li> </ol>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34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영 제4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8서식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 제41조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li> </ol>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2. 영 별표 6의4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p> <p>3. 영 별표 6의4에 따른 시설·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p> <p>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의 경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기술자격증</li> <li>2.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li> <li>3.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한다)</li> </ol> <p>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영 제41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적합 여부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고, 공단은 등록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9호의9서식의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⑤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이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8서식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변경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⑥ 제5항에 따른 등록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 공단은 변경내용을 확인한 후 적</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제43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의 등록 취소 사유)</b>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관하여 법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의 실시를 거부한 경우</li> <li>2. 교육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li> <li>3.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li> <li>4.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li> </ol> <p><b>제44조(직무관련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요건)</b>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p>	<p>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등록사항을 변경하고, 등록증을 변경하여 발급(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할 수 있다.</p> <p><b>제35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취소 등)</b> ① 공단은 법 제33조 제4항에 따른 취소 등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등록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등록 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p> <p><b>제36조(직무관련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신청 등)</b> ① 직무교육을 받으</p>	<p>-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제목 확인 필요</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직무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6의5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한다.</p> <p>1.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p> <p>2. 비영리법인</p>	<p>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영 제44조에 따라 직무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직무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직무교육기관의 장은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 일시 및 장소 등을 직무교육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하여 신규로 선임된 경우로서 선임신고 시 전직 전에 받은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p> <p>④ 직무교육기관의 장이 직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 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실시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b>제37조(교재 등)</b> ① 사업주 또는 법 제29</p>	<p>○ “수탁” 용어 불필요 “법과 용어 통일”</p> <p>- 위임 규정 없음</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b>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b></p> <p><b>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b>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p> <p><b>제35조(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b> 근로자대표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p>		<p>조제4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제26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8의2에 따른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p> <p>②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사업주의 위탁을 받아 제26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실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 법 제35조제7호의 위임에 대한 시행규칙 규정사항 유무 확인 필요</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체를 말한다)가 의결한 사항</p> <p>2.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p> <p>3.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p> <p>4. 제6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도급인의 이행 사항</p> <p>5.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p> <p>6.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p> <p>7. 그 밖에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p> <p><b>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b>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p>		<p><b>제4-1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b>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p> <p>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b>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b></p> <p>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li> <li>2. 위험성 결정의 내용</li> <li>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li> <li>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li> </ol> <p>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p><b>제4-2조(안전보건표지의 종류·형태·색채 및 용도 등)</b>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같은 조 단서에 따른 사람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한다.</p>		<p>별표 1의2와 같고, 그 용도 및 사용장소는 별표 2와 같다.</p> <p>② 안전보건표지의 표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하여야 한다.</p> <p>③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색채는 별표 2와 같고, 안전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의 색도기준 및 용도는 별표 ○과 같다.</p> <p>④ 사업주는 사업장에 설치하거나 부착한 안전보건표지가 별표 ○에 따른 색도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⑤ 안전보건표지에 관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다른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 또는 명령을 적용한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제38조(안전조치)</b>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li> <li>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li> <li>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li> </ol> <p>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p>		<p>의 크기는 안전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하여야 하며, 안전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p> <p>④ 안전보건표지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제작하여야 한다.</p> <p>⑤ 야간에 필요한 안전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li> <li>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li> <li>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li> <li>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li> </ol> <p>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p><b>제39조(보건조치)</b>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흙(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li> <li>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li> <li>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li> <li>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li> <li>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li> <li>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li> </ol> <p>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한다.</p> <p><b>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b> 근로자는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p> <p><b>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b>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p>	<p><b>제4-1조(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b> 법 제41조제2항에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li> <li>2.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li> <li>3.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li> <li>4.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 등이 같</li> </ol>	<p><b>제4-5조(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b> 사업주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폭언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li> <li>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li> <li>3. 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li> </ol>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야 한다.</p> <p>②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p> <p><b>제42조(유해·위험 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b>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p>	<p>은 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p> <p><b>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b>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p> <p>1.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제조업</p>	<p>4. 그 밖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p> <p><b>제4-6조(제출서류 등)</b> ① 사업주가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려면 사업장별로 별지 제25호서식의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기준, 작성자,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필요</p>	<p>- 규칙 제43조에 본래 포함되어 있는 제5조의 내용 관련 확인 필요(법 심사시 법 제42조제1항 단서 삭제됨)</p> <p>⑤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 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p> <p>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p> <p>3.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p> <p>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p>	<p>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p> <p>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p> <p>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p> <p>5. 식품품 제조업</p> <p>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p> <p>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p> <p>8. 기타 제품 제조업</p> <p>9. 1차 금속 제조업</p> <p>10. 가구 제조업</p> <p>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p> <p>12. 반도체 제조업</p> <p>13. 전자부품 제조업</p>	<p>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1.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p> <p>2. 기계·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p> <p>3. 기계·설비의 배치도면</p> <p>4.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p> <p>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p> <p>② 사업주가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려면 사업장별로 별지 제25호서식의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p> <p>1.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p> <p>2. 설비의 도면</p> <p>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p> <p>③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사업주</p>	<p>려하여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주”란 별표 15의 2의 기준에 적합한 건설업체(이하 “<u>자체심사 및 확인업체</u>”라 한다)를 말한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공하려는 사업주(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할 때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유해·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p> <p>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또는 건설공사를 중지하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별표 15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 전일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p> <p>④ 같은 사업장 내에서 영 제4-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공사별 또는 해당 공사의 단위작업공사 종류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분리하여 각각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⑤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별표 15의2의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여</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⑤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스스로 심사하거나 제4항 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사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p> <p>⑥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로서 제5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둔 사업주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p> <p><b>제42조 제1항 제2호, 제3호</b> <b>제42조 제2항</b></p>	<p><b>제4-3조(대상 사업장의 종류 등) ①</b>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의 구체적인 대상 범위</p>	<p>해당 공사의 착공 전일까지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필요한 경우 자체심사 및 확인 대상 사업주의 자체심사에 관하여 지도·조언할 수 있다.</p> <p><b>제4-7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건설안전분야 자격 등) 법 제42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li> <li>2.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li> </ol>	<p>- 규칙 제44조의 조 제목 확인 현행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의견청취”에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건설안전분야</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li> <li>2. 화학설비</li> <li>3. 건조설비</li> <li>4. 가스집합·용접장치</li> <li>5.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li> </ol> <p>②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li> </ol>	<p>분야 기술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관련 실무경력이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사람</li> </ol>	<p>자격 등”으로 수정함</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p> <p>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p> <p>3. 최대 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 건설등 공사</p> <p>4. 터널 건설등의 공사</p> <p>5.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p> <p>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p> <p><u>③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착공”이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u></p>	<p><b>제4-8조(계획서의 검토 등)</b> ① 공단은 제4-6조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사</p>	<p>법 제145조 “지도사의 등록”으로 조명 변경됨에 따라 규칙에도 반영함</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업주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제4-6조제5항에 따라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시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해당 분야의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p> <p>③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 참여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여한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 제145조에 따라 등록된 지도사에게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받은 후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이 경우 공단은 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평가서로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p> <p>⑤ 제4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평가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 자가 하여서는 아니된다.</p> <p><b>제4-9조(심사 결과의 구분)</b> ①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판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적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2. 조건부 적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3. 부적정: 기계·설비 또는 건설물이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착공 시 중대한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li> </ol>	<p>- 법률위임근거 명시 검토</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경우</p> <p>② 공단은 심사 결과 적정판정 또는 조건부 적정판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5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 통지서에 보완사항을 포함(조건부 적정판정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발급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공단은 심사 결과 부적정 판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6호의6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부적정) 통지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사업장 소재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착공중지명령, 계획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⑤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b> ① 제42조제4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u>고용노동부장관</u>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주는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설공사 중에 근로자가 사망(교통사고 등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고용노동부장관</u>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확인을 받아</p>		<p>으로부터 공사착공중지명령 또는 계획변경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계획서를 보완하거나 변경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p> <p><b>제4-10조(확인)</b>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해당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의 시운전단계에서,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주는 건설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이 부합하는지 여부</li> <li>2. 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내용의 적정성</li> <li>3.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의 존재 여부</li> </ol> <p>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할 경우에는 그 일정을 사업주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야 한다.</p>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확인 결과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대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른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등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한다.</p>		<p>③ 제45조제4항에 따른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도사에게 확인을 받고 별지 제26호의10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현장방문을 지도사의 확인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 최근 2년간 사망재해(별표 1 제3호라목4)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확인은 제45조제4항에 따라 평가를 한 자가 하여서는 아니된다.</p> <p><b>제4-11조(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확인 등)</b> ①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사업주는 별표 15의2에 따라 해당 공사 준공 시까지 6개월 이내마다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체확인을 하여야 하며, 공단은 필요한 경우 해당 자체</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확인에 관하여 지도·조언할 수 있다. 다만, 그 공사 중 사망재해(별표 1 제3 호라목4)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할 경우에는 그 일정을 사업주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p> <p><b>제4-12조(확인결과의 조치 등)</b> ① 공단은 확인 결과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의 방지상태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의7 서식의 확인결과 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경미한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개선하도록 권고하되, 해당 기간 내에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의8서식의 확인결과 조치 요청서에 그 이유를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보고하여야 한다.</p> <p>② 공단은 확인 결과 법 제4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있어 작업의 중지, 사용 중지 및 주요 시설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6호의8서식의 확인결과 조치 요청서에 그 이유를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b>제4-13조(보고 등)</b>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확인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및 사업주명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b>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p>	<p><b>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b> ①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u>”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말하고,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 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같은 표에 따른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원유 정제처리업</li> <li>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li> </ol>	<p>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장</li> <li>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기간이 지난 사업장</li> <li>3. 제4-7조에 따른 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한 사업장</li> </ol>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된다.</p> <p>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0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4.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p> <p>5.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p> <p>6.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한다)</p> <p>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설비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로 보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원자력 설비</li> <li>2. 군사시설</li> <li>3.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li> </ol>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비 및 사용설비</p> <p>4. 도매·소매시설</p> <p>5. 차량 등의 운송설비</p> <p>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p> <p>7.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p> <p>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p> <p>③ 법 제44조제1항에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u>”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p> <p>1.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제1항에 따른 설비(제2항에 따른 설비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에서의 누출·화재·폭발 사고</p> <p>2. 인근 지역의 주민이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제1항에 따른 설비에서의 누출·화재·폭발 사고</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제44조 제1항	<p>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세부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정안전자료</li> <li>2. 공정위험성 평가서</li> <li>3. 안전운전계획</li> <li>4. 비상조치계획</li> <li>5. 그 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li> </ol>	<p>제4-1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영 제4-5조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정안전자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취급·저장하고 있거나 취급·저장하려는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li> <li>나.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li> <li>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목록 및 사양</li> <li>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li> <li>마.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li> <li>바.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li> <li>사. 위험설비의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li> </ol> </li> <li>2. 공정위험성 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피해 최소화 대책</li> </ol> <p>공정위험성 평가서는 공정의 특성 등</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위험성평가 기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사고예방·피해최소화 대책의 작성은 위험성평가 결과 잠재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가. 체크리스트(Check List)</p> <p>나. 상대위험순위 결정(Dow and Mond Indices)</p> <p>다. 작업자 실수 분석(HEA)</p> <p>라. 사고 예상 질문 분석(What-if)</p> <p>마. 위험과 운전 분석(HAZOP)</p> <p>바. 이상위험도 분석(FMECA)</p> <p>사. 결함 수 분석(FTA)</p> <p>아. 사건 수 분석(ETA)</p> <p>자. 원인결과 분석(CCA)</p> <p>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과 같은 수준 이상의 기술적 평가기법</p> <p>3. 안전운전계획</p> <p>가. 안전운전지침서</p> <p>나. 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제44조 제1항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주는 제49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설치(기존 설비의 제	계획 및 지침서 다. 안전작업허가 라.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마. 근로자 등 교육계획 바. 가동 전 점검지침 사. 변경요소 관리계획 아.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자. 그 밖에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4. 비상조치계획 가.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보유 현황 나. 사고발생 시 각 부서·관련 기관과 의 비상연락체계 다.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 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라.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마. 주민홍보계획 바. 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	제4-1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시 기) 사업주는 영 제4-6조에 따라 유해 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설치·이전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조·취급·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량·취급량·저장량이 증가하여 별표 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이전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하여야 하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이하 이 항에서 “장외영향평가서”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이하 이 항에서 “위해관리계획서”라 한다)의 내용이 제49조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경우에 제출하여야 할 공정</p>	<p>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의 착공일 (기존 설비의 제조·취급·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량·취급량·저장량이 증가하여 영 별표 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을 말한다)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2부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p>	<p>안전보고서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것인 경우로서 해당 사업주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과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공단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검토·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 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p>	<p>제4-1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기준 등)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기준, 작성자 및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p> <p>제4-17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① 공단은 제4-15조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1부를 사업주에게 송부</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p> <p>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p> <p><b>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①</b>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이 조 제3항에 따라 보완한 공정안전보고서를 포함한다)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p> <p>② 사업주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고용노동부장관</u>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p> <p>③ 사업주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p>		<p>하고, 그 내용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화재의 예방·소방 등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관련 내용을 관할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b>제4-18조(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등)</b></p> <p>①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기별로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화공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화공 관련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그 밖에 자격 및 관련 업무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u>제4-14조제3호</u>아목에 따른 자체감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p> <p>④ 고용노동부장관은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p> <p>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3항에 따른 보완 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경우에는 공단은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규로 설치될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에 대해서는 설치 과정 및 설치 완료 후 시운전단계에서 각 1회</li> <li>2. 기존에 설치되어 사용 중인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에 대해서는 심사 완료 후 3개월 이내</li> <li>3.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와 관련된 공정의 중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완료 후 1개월 이내</li> <li>4.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 또는 이와 관련된 공정에 중대한 사고 또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다만, 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받은 사업장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li> </ol> <p>② 공단은 사업주로부터 확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u>제4-1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u>의 내용이 현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한</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제46조 제4항		<p>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b>제4-19조(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b> ①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신규로 설치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경우에는 설치 완료 후 시운전 단계에서의 확인을 말한다)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이하 “이행상태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상태평가 후 4년마다 이행상태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제47조(안전보건진단)</b>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48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p>		<p>1. 이행상태평가 후 사업주가 이행상태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2. 법 제155조에 따라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 및 안전·보건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제4-14조제3호사목에 따른 변경요소 관리계획 미준수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이행상태평가는 제4-14조 각 호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에 관하여 실시한다.                  ④ 이행상태평가의 방법 등 이행상태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p> <p><b>제4-20조(안전보건진단 명령)</b>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의 명령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p> <p>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p> <p>③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해당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p> <p>④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를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에 포함될 사항,</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u>으로 정한다.</p> <p><b>법 제47조제2항</b></p> <p><b>법 제47조제2항 제47조제5항</b></p> <p><b>제48조(안전보건진단기관) ①</b> 안전보건진단기관이 되려는 자는 <u>대통령령</u></p>	<p><b>제4-7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b> ① 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의 종류와 내용은 <u>별표 9</u>와 같고, 안전보건진단보고서에는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 작업조건·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할 경우 기계·화공·전기·건설 등 분야별로 한정하여 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p> <p><b>제4-8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b>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p>	<p><b>제4-21조(안전보건진단 의뢰)</b>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15일 이내에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p> <p><b>제4-22조(안전보건진단 결과의 보고)</b>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안전보건진단기관은 <u>영 별표 9</u>의 진단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평가 및 측정 결과와 그 개선방법이 포함된 보고서를 진단을 의뢰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p> <p><b>제4-23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b> <u>영 제4-8조</u>에 따른</p>	<p>전자문서 제출에 관한 규정 추가</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한다.</p> <p>③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한다.</p> <p>④ 안전보건진단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본다.</p>	<p>진단을 하는 자(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안전보건진단업무를 하려는 법인으로서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정한다.</p> <p><b>제4-9조(준용)</b> 안전보건진단기관에 관하여는 <u>제28조</u>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을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안전관리·보건관리를 안전보건진단으로 본다.</p>	<p>안전보건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은 진단분야별로 각각 <u>별표 16·별표 16의2</u> 및 <u>별표 17</u>과 같다.</p> <p><b>제4-24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 등)</b> ① 공단이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li> <li>2. 유해위험요인의 평가·분석 충실성 등 안전·보건진단 업무 수행능력</li> <li>3. 안전보건진단 대상 사업장의 만족도</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u>제16조제2항</u>부터 <u>제8항</u>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본다.</p> <p><b>제4-25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신청 등)</b> ①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p>	<p>시행령에 준용에 관한 규정이 누락되어 추가함</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보건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관</li> <li>2. 별표 16·별표 16의2 및 별표 17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li> <li>3.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li> <li>4. 최초 1년간의 안전보건진단사업계획서</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발급,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본다.</p> <p><b>제63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 등)</b></p> <p>① 공단이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크에 대한 관리능력</li> <li>2. 유해위험요인의 평가·분석 충실성 등 안전·보건진단 업무 수행능력</li> <li>3. 안전보건진단 대상 사업장의 만족도</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b>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이하 “안전보건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제47조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p>	<p><b>제4-10조(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 명령 시행 할 수 있는 사업장)</b> 법 제4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p> <p>1.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만 해당한다) 발생 사업장</p> <p>2.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p> <p>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p>	<p>에 관하여는 제15조의4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본다.</p> <p><b>제4-26조(안전보건개선계획 명령)</b>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명령은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른다.</p>	<p>영 제3호 법률에서 직업성 질병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업성 질병자로 수정</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p> <p>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p> <p>4.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p> <p>②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b>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b> ① 제49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p>	<p>4.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p> <p><b>제4-11조(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 대상)</b>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은 연간 직업병 질병자가 2명이상 발생한 사업장을 말한다.</p>	<p><b>제4-27조(안전보건개선계획 제출 등)</b></p> <p>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p>	<p>법 제49조제1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추가</p> <p>전자문서 제출에 관한 규정 추가</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출받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p> <p>③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 전단에 따라 심사를 받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같은 항 후단에 따라 보완한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b>제4-28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검토 등)</b> ① 제4-27조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개선계획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p> <p>②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 제65</p>	<p>- 안전보건개선계획서는 공단에서 접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단부분을 삭제하고 개선계획서의 별도의 첨부서류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첨부서류</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이 적정하게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보건 개선계획서의 적정 여부 확인을 공단 또는 지도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부분을 삭제하고 심사기간 및 결과 통보 기한을 명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유해물질이나 위험요인을 사전조사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을 위한 사전 계획서이고, 안전보건개선계획서는 사업장의 현재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법을 작성한 것으로 내용과 목적이 달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또한, 안전보건개선계획서는 자체</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b>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p>			<p>심사를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심사는 공단 또는 지도사에게 적정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는 것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처럼 공단이 접수받아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개선계획서의 심사가 위탁된 것이 아니므로 공단에서 심사위원 선정, 수당지급의 규정 불필요</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b>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b>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p> <p><b>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b></p>		<p><b>제67조(시정조치 등)</b> 법 제53조제1항</p>	<p>고용부 의견 취합 예정</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및 기계·기구·설비·원재료(이하 “기계·설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설비등에 대하여 사용중지·대체·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해당 기계·설비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시정조치 명령 사항을 사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p>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해당 기계·설비등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유해·위험 상태가 해소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거나 근로</p>		<p>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전보건규칙에서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기계·기구·설비·원재료에 대하여 정하는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li> <li>2. 법 제87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사용금지</li> <li>3. 법 제92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금지</li> <li>4. 법 제95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금지</li> <li>5. 법 제99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금지</li> <li>6.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제조등급지물질의 사용금지</li> <li>7. 법 제1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에 대한 허가</li> </ol> <p><b>제4-30조(사용의 중지)</b>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자에 대한 유해·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설비 등과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p> <p>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해제 요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p>		<p>사용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표지(이하 “사용중지명령서등”이라 한다)를 발부하거나 부착할 수 있다.</p> <p>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서등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근로자에게 해당 사항을 알려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서를 받은 사업주는 발부받은 때부터 그 개선이 완료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중지명령을 해제할 때까지 해당 건설물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발부되거나 부착된 사용중지명령서등을 해당 건설물등으로부터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시켜서는 아니 된다.</p> <p><b>제68조(사용중지의 해제)</b> ① 제67조제1항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즉시 고용노동부</p>	<p>고용부 의견 &lt;삭제&gt;</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명령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해당 건설물등에 대한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도록 하고 해당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사용중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p> <p><b>제4-31조(작업의 중지)</b>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를 명령할 때에는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표지(이하 “사용중지명령서등”이라 한다)를 발부하거나 부착할 수 있다.</p> <p>② 작업중지명령 고지 등에 관하여는 제4-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p> <p><b>제4-32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b>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이 법 위반으로</p>	<p>제2항 수정 고용부 의견</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b> 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p> <p><b>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b>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p>	<p><b>제54조(동일한 작업의 범위)</b> 법 제5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동일한 작업’이란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 또는</p>	<p>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해당 내용을 시정할 때까지 위반 장소 또는 사내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p> <p><b>제4-33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b> 사업주는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해(이하 “중대재해”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li> <li>2. 조치 및 전망</li> <li>3. 그 밖의 중요한 사항</li> </ol> <p><b>제72조(작업중지명령서)</b>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이 법 위반으로 작업중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00호 서식에</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 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u></p> <p>1.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2.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토사·건축물의 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p>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p>	<p>유사한 작업을 말한다.</p>	<p>따른 작업중지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한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④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해제에 요청 절차 및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한다.</p>		<p><b>제4-35조(작업중지의 해제)</b> ①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00호 서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작업중지명령 해제요청서를 제출하는 사업주는 작업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청취한 안전작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5인 미만(공사금액 3억원 미만) 사업장 또는 작업중지 해제 이후의 작업기간이 10일 이내인 건설현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업중지명령 해제요청서가</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b>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p>		<p>접수되면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p> <p><b>제4-36조(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b></p> <p>①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해당사고와 관련이 없고, 당해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 1명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심의위원회는 작업중지명령 대상 유해·위험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조치가 개선되고 작업중지 해제 이후 안전작업 대책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작업중지명령의 해제를 결정하여야 한다.</p> <p><b>제4-36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b> ① 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은...</p>	<p>* 원인조사에 대한 해당 시행규칙 없음</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개선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③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p> <p>④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한다.</p> <p><b>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b>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p> <p>② 사업주는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p> <p>③ 사업주는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p>		<p><b>제4-37조(산업재해 기록 등)</b>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7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제4-38조제5항에 따른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li> <li>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li> </ol>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다.</p> <p>제57조제3항</p>		<p>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p> <p>4. 재해 재발방지 계획</p> <p><b>제4-38조(산업재해 발생 보고)</b>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가 법률 제1188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4년 7월 1일 이후 처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이 지난 후에 자진하여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li> <li>2.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li> <li>3.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도급인</li> <li>4.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사업주</li> </ol> <p>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확인을 받</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b>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1절 도급의 제한</b></p> <p><b>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b>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p>		<p>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p> <p>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요양신청서 사본, 요양업무 관련 전산입력자료,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b>제5-1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등)</b> 법 제58조 제3항, 제5항 및 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에 대한 내용은 <u>별표00</u>에 따른다.</p>	<p>추가 이유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가 필요한 3가지 경우 모두 언급 필요</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p> <p>1. 도급작업</p> <p>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의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p> <p>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p> <p>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p> <p>1. 일시·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p> <p>2.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수급인에게 도급을 한 도급인으로서의 사업주를 말한다)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p> <p>③ 사업주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p>		<p><b>제5-2조(도급승인 연장 및 변경) ①</b></p> <p>법 제58조 제5항에 따라 도급승인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의 유효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도급승인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도(기계·설비</p>	<p>변경 이유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은 후 승인 신청하</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p> <p>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정한다.</p> <p>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사업주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제3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p> <p>⑥ 사업주는 제2항제2호 또는 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중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제2호,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제8항에</p>		<p>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위험물질의 종류·사용량,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2.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도급사유, 도급 시의 안전·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3.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p> <p>② 법 제58조 제6항에 따라 도급의 변경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변경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8호의3서식의 도급승인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도(기계·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위험물질의 종류·사용량,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2.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도급사유, 도급 시의 안전·보건관리 및</p>	<p>므로 처리기간 단축 (20일 → 7일)</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다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p> <p>⑧ 제2항제2호,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한다.</p>		<p>도급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58조 제6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급공정</li> <li>2. 도급공정 사용 최대유해물질량</li> <li>3. 도급기간</li> <li>4. 도급공정 종사 근로자 수(100분의 50 이상 증가 시, 10인 미만 증가 제외)</li> </ol> <p><b>제5-3조(도급승인의 취소)</b>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8조 제2항 제2호, 제5항, 제6항, 제5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승인에 필요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li> <li>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연장 승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li> </ol>	<p>변경 이유 : 유해물질량 변경 승인 신청기준 명확화</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3. 법 제59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연장 및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계속한 경우</p> <p><b>제5-4조(도급승인 등의 기준)</b> ① 법 제58조 제8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 시 지켜야 할 안전·보건조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64조제1항, 제2항 및 법 제65조 제1항</li> <li>2. 법 제58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제33조, 제72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422조, 제429조부터 제435조까지, 제439조, 제442조부터 제444조까지, 제448조, 제450조 및 제451조에서 정한 기준</li> <li>3.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제33조, 제72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부터 제85조까</li> </ol>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지, 제453조부터 제455조까지, 제459조, 제461조, 제463조부터 제465조까지, 제468조부터 제474조에서 정한 기준</p> <p>4 영 제5-2조 제1호에 따른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5조, 제7조~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제24조, 제26조~제28조, 제30조, 제33조, 제42조~제45조, 제48조, 제72조~제81조, 제83조~제85조, 제87조, 제88조, 제92조~제94조, 제191조~제193조, 제195조, 제225조, 제227조, 제236조, 제238조, 제255조~제267조, 제270조, 제272조~제275조, 제277조~제279, 제297조~제300조, 제384조~제386조, 제422조, 제429조~제440조, 제442조~제444조, 제446조, 제448조~제451조, 제619조, 제619조의2, 제620조~제622조, 제624조, 제625조, 제629조~제631조, 제633조</p>	<p>추가 이유 : 관리대상 물질인 황산, 불산, 질산, 염산 취급 설비 개조 등 작업에 맞는 별도 안전보건 조치 기준 마련 필요</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제59조(도급의 승인)</b> ①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하여는 제5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b>제5-2조(도급승인 대상작업)</b>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같은 사업장 내에서 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황산, 불산, 질산 또는 염산을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li> <li>2. 그 밖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li> </ol>	<p>5. 영 제5-2조 제2호에 따른 작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p> <p>② 법 제58조 제3항, 제5항 및 법 제59조 제1항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p> <p><b>제5-5조(도급승인의 신청)</b> ①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도급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도급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del>법 제58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어 승인을 다시 받게 될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한 서류만 제출할 수 있다.</del></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도(기계·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위험물질의 종류·사용량, 유해·위험요인의 발</li> </ol>	<p>삭제 이유 : 중복</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2.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도급사유, 도급 시의 안전·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3.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p> <p>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도급승인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도급승인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승인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8조 제8항에 따른 도급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도급승인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p> <p>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도급승인을 신청한 사업장이 제</p>	<p>삭제 이유 : 도급승인 기간 단축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은 후 도급승인 신청토록 변경</p> <p>추가 이유 : 도급승인 신청을 승인 또는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필요</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b>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 및 제5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작업을 도급 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다.</p> <p><b>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b>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 하여야 한다.</p> <p><b>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b></p> <p><b>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b>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p>	<p><b>제5-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b> 법 제6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수급인에게</p>	<p>58조 제8항에 따른 도급승인의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단으로 하여금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p> <p>③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62조 제3항</b></p>	<p>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 및 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p> <p>2. 삭제 &lt;2014.3.12.&gt;  3. 삭제 &lt;2014.3.12.&gt;  4. 삭제 &lt;2014.3.12.&gt;  5. 삭제 &lt;2014.3.12.&gt;  6. 삭제 &lt;2014.3.12.&gt;  7. 삭제 &lt;2014.3.12.&gt;</p> <p><b>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b> ①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p>		<p>- 영 : 규칙 '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규정에서 통합하여 "지</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51조부터 제55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및 재개</li> <li>2. 법 제63조부터 제65조에 따른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li> <li>3. 법 제72조에 따른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그 사용에 관한 수급인 간의 협의·조정</li> <li>4.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사용 여부 확인</li> <li>5. 법 제35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li> </ol> <p>② 사업주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법 제13조제1항 각 호”는 “제1항”으로 본다.</p> <p>③ 사업주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p>		<p>체 업이” 선임하도록 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함(고용부 의견 반영)</p> <p>- 영 제2항은 현행 시행령 제24조에서 관리책임자에 관한 현행 시행령 제9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도록 하였던 내용을 풀어서 규정한 것임</p> <p>- 기존 준용 대상 규정 중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삭제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점, 준용이 필요할 만큼 해당 규정이 길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을 여기에서 규</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b>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p> <p><b>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b>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p> <p>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p>	<p>없이 선임하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p> <p><b>제5-4조(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조치)</b> 법 제63조에서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사업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p>	<p><b>제5-6조(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b> 법 제64조제1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말한다.</p>	<p>정하도록 함</p> <p>- 영 제5-4조는 법률상 위임 없음(고용부 의견 반영하여 규정한 사항임)</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p> <p>2. 작업장 순회점검</p> <p>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p> <p>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p> <p>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p> <p>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p> <p>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p> <p>6. 위생시설 등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휴게시설</li> <li>2. 세면·목욕시설</li> <li>3. 세탁시설</li> <li>4. 탈의시설</li> <li>5. 수면시설</li> </ol>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한다.</p>		<p><b>제5-7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b>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안전·보건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급인인 사업주(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li> <li>2. 수급인인 사업주(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li> <li>3.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li> </ol>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제64조 제3항 협의체 구성, 운영		<p>(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만 해당한다)</p> <p>②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정기 안전·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음 각 목의 사업의 경우: 2개월에 1회 이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건설업</li> <li>나. 선박 및 보트 건조업</li> </ol> </li> <li>2. 제1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분기에 1회 이상</li> </ol> <p><b>제5-8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b>                      법 제94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작업의 시작 시간</li> <li>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li> <li>3. 재해발생 위험 시의 대피 방법</li> <li>4. 작업장에서의 법 제35조에 따른 위</li> </ol>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제64조 제3항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p>		<p>협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p> <p><b>제5-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b> ①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작업장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회점검하여야 한다.</p> <p>1. 다음 각 목의 사업의 경우: 2일에 1회 이상                      가. 건설업                      나. 제조업                      다. 토사석 광업                      라.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마.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바.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p> <p>2 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경우: 1주일에 1회 이상</p> <p>② 수급인인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b> ①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p> <p>1.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p>		<p>도급인인 사업주가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도급인인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③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수급인인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p> <p><b>제5-10조(안전·보건 정보제공 등)</b> ① 법 제6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에 의한 제공을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해당 도급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p> <p>1.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위험성</p>	<p>- 영 제5-4조 및 제 5-5조 분리(고용부의견 반영)</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p> <p>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p> <p>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작업</p> <p>② 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④ 수급인은 제2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		<p>2.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p> <p>3.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p> <p>② 제1항에 따른 수급인이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해당 하도급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급하는 작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조치와 관련된 기록 등 자료의 제출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b>제5-11조(화학물질)</b> 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함</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p>	<p>제5-5조(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p> <p>1.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u>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u></p> <p>2. 토사·건축물·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p>	<p>유한 혼합물”이란 안전보건규칙 별표 1 및 별표12에 따른 위험물질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을 말한다.</p> <p>②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p> <p>제5-12조(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영 제5-5조제1호에서 “<u>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u>”이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에 따른 밀폐공간에서 하는 작업을 말한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p> <p>② 도급인은 제65조제1항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p> <p><b>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b></p> <p><b>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b>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p>	<p><b>제5-6조(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 건설공사)</b> 법 제6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20억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p>	<p><b>제5-13조(기본안전보건대장)</b> ①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공사규모, 공사예산 및 공기기간 등</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p> <p>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p> <p>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p> <p>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한다.</p>		<p>사업개요</p> <p>2. 공사현장 제반 정보</p> <p>3. 공사시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p> <p>② 법 제67제1항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p> <p>2. 제1항의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p> <p>3. 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p> <p>4. 법 제73조에 따른 건설 산업재해 예방지도 실시계획</p> <p>5. 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계획</p> <p>6. 법 제68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 배치계획</p> <p>③ 법 제67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안</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①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p>	<p>제5-7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①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조</p>	<p>전보건대장에 포함하여 확인하여야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li> <li>2. 법 제72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li> <li>3. 법 제73조에 따른 건설 산업재해 예방지도 계약, 지도 결과 및 조치내용</li> <li>4. 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li> </ol> <p>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과 공사안전보건대상의 이행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시행령 2017. 10. 17 신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금액,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업무,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u>으로 정한다.</p>	<p>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금액은 각 건설공사 금액의 합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하거나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여야 한다.</p> <p>1.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인 경우 발주청이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선임한 공사감독자</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건설공사 중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p> <p>가.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p> <p>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p> <p>다.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p>		<p>- 영 제5-7조 고용부 의견 반영하여 수정(12. 3)</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감리자</p> <p>라.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p> <p>마. 「정보통신공사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p> <p>3.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p> <p>4. 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 지도사</p> <p>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 기술사</p> <p>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 기사를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p>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 산업기사를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p>③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법 제68</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제68조 제2항</p>	<p>조제1항에 따라 분리 발주되는 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하거나 선임하여 각각의 공사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p> <p><b>제5-8조(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①</b>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의 파악</li> <li>2. 제1호에 따른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li> <li>3. 제1호에 따른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li> <li>4.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의 확인</li> </ol> <p>② 안전보건조정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p>		<p>시행령 2017. 10. 17          신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b> ①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p> <p>②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p> <p><b>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b> ① 건설공사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p>	<p>사의 도급인과 수급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b>제5-14조(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b> ① 건설공사도급인이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려면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종료된 날 또는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관계수급인으로부터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 받은 날</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p> <p>1.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p> <p>2.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p> <p>②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어 해당 건설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기간의 연장 요청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한다.</p>		<p>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별지 제9호의 5서식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사기간의 연장 사유가 그 건설공사의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만료 전에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예정임을 통지하고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p> <p>1. 공사기간 연장 요청 사유 및 그에 따른 공사 지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p>2. 공사기간 연장 요청 기간 산정 근거 및 공사 지연에 따른 공정 관리 변경에 관한 서류</p> <p>②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이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려면 같은 항의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별지 제9호의5</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서식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그 건설공사의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만료 전에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예정임을 통지하고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 까지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건설공사도급인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p> <p>④ 건설공사발주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남은 기간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b> ①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토목 분야의 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가 설계를 포함하여 발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42조제4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p>	<p><b>제5-9조(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b> ① 법 제71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물을 설치(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운용할 때 해당 구조물의 붕괴·낙하 등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은 경우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飛階)</li> <li>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li> <li>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li> </ol>	<p>다.</p> <p>⑤ 제2항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이 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로 부터 공사기간 연장 조치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5일 이내에 관계수급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p> <p><b>제5-15조(설계변경의 요청 방법 등)</b></p> <p>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이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설계변경 요청 대상 공사의 도면</li> <li>2. 당초 설계의 문제점 및 변경요청 이유서</li> <li>3. 가설구조물의 구조계산서 등 당초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전문가의 검토 의견서 및 그 전문가(전문가가 공단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자격증 사본</li> </ol>	<p>규칙 제5-15조제2항 제3호 삭제(고용부의견)</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건설공사 중에 제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도급인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p>	<p>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p> <p>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p> <p>② 법 제71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건설공사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p> <p>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토목공사 및 제1항제3호의 구조물은 제외한다)</p> <p>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구조기술사(토목공사로 한정한다)</p> <p>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질및기초기술사(제1항제3호의 구조물로 한정한다)</p> <p>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기술사(제1항제4호의 구조물로 한정한다).</p>	<p>4. 그 밖에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아 설계변경이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p>② 건설공사도급인이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제46조제4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명령한 공사착공중지명령 또는 계획변경명령 등의 내용</p> <p>2.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통지서</p> <p>3.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서류</p> <p>③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관계수급인이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제2항, 제5항에 따라 설계변</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른 설계변경의 요청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경을 요청받은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변경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를 변경한 후 별지 제9호의3 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를 건설공사도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변경 요청의 내용이 법 제71조제3항 후단 및 법 제71조제4항에 해당하는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4 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불승인 통지서에 설계를 변경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제3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건설공사 도급인은 설계변경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를 변경한 후 별지 제9호의3 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를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에게 통보하거나 설계변경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2 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p>	<p>불분명한 내용을 명확화</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등)</b>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이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p>	<p><b>제26조의6(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대상)</b>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del>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del>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p>	<p>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⑥ 제3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건설공사 도급인이 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로 부터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 또는 설계변경 불승인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계수급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p> <p><del>제31조의3(설계변경의 제외사유) 법 제29조의3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설계변경의 요청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del></p> <p><b>제5-16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b> ①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관</p>	<p>- 법 제71조 3항에서 규정</p> <p>- 자체사업을 하는 자도 건설공사도급인에 해당</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의 규모별·종류별 계상 기준</li> <li>2.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 비율 등 기준</li> <li>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li> </ol> <p>③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p> <p>④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p>		<p>계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②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위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용명세서를 매월(공사가 1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 종료 시) 작성하고 건설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란 공사금액 3억원(「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p>	<p>- 법 제72조제1항 본문 표현이 수정됨에 따라 현행 시행령 제26조의6 위임규정이 삭제됨.</p> <p>- 따라서 시행규칙</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⑤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자는 제외한다.</p> <p>③ 법 제72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사금액 3억원(「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자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공사</li> <li>2.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li> <li>3. 사업주가 영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 자치단체의 지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li> </ol>	<p>제5-16조제3항의 근거가 모호함. → 법률안에 위임 규정 없음</p> <p>- 법 제72조제1항에서는 고시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고시로 위임하여 규정하도록 함(고용부 의견 반영함)</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b>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에서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p> <p>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5-10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b> ①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이란 공사금액 1억원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자는 제외한다.</p> <p>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p>	<p>한다)하여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이 경우 사업주는 별지 제1호의3(2)서식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4.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2.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p> <p>3. 사업주가 영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 자치단체의 지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영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이 경우 사업주는 별지 제1호의3(2)서식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4.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p> <p><b>제5-11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b>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사</p>	<p><b>제5-17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b> 영 제5-11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b></p> <p>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되려는 자는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u>으로 정한다.</p>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한다.</p> <p>④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건설재</p>	<p>업의 종류와 규모 또는 공사금액 등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해예방에 대한 지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p><b>제5-16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b>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p> <p>1. 법 제145조에 따라 등록된 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 또는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만 해당한다)</p> <p>2. 재해예방 업무를 하려는 법인</p>	<p>도기준은 별표 6의5와 같다</p> <p><b>제5-18조(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b> 영 제5-16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6의4와 같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p> <p><b>제74조 제2항 지정신청 절차</b></p>	<p><b>제5-17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b> ①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u>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지정 받은 사항의 변경 등에 관해서는 <u>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u></p> <p><b>제26조의9(준용)</b>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3 및 제15조의5부터 제15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b>제5-19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b> ① 영 제5-17조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는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는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관(산업안전지도사인 경우에는 제136조의8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li> <li>2. 별표 6의4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li> <li>3.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li> </ol>	<p>- 현행 시행령 제26조의9에서는 준용규정을 통해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절차(제15조의3) 및 취소(제15조의5), 과징금(제15조의6-제15조의7)에 관하여 안전관리전문기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나,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현행 시행규칙 제32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어 준용규정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었음</p> <p>- 이번 법률 개정을</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2조의2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검토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④ 영 제5-17조제2항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재발급,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⑤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야의 재해예방 전문지</p>	<p>통하여 안전관리전문기관에 관한 규정이 보건관리전문기관에 관한 규정과 통합됨에 따라 준용규정을 통해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절차를 준용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고, 법률안 제74조제4항에서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사유 규정인 제21조제4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정신청에 관해서는 영 제5-17조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지정취소에 관해서는 별도로 준용할 필요</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제74조 제3항 평가</p>		<p>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같은 인력·시설 및 장비로 지정한 해당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구역과 인접한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지역에 걸쳐서 기술지도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각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한 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b>제5-20조(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평가 등)</b> ①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에 관해서는 제16조에 따른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평가 등을 준용한다.</p> <p>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해예방 기술지도의 운영 실적 및 실태</li> <li>2.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 활용도 및 지도인력에 대한 교육실시 현황</li> <li>3.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도의 적정성</li> </ol>	<p>가 없을 것임(법률에서 이미 준용)</p> <p>- 지정취소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제161조(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에서 규정하도록 함</p> <p>-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평가에 관하여 안전관리전문기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고용부의견)</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p>	<p>제5-18조(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법 제7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p>	<p>충실성                      4. 기술지도를 한 사업장의 재해발생 빈도, 재해의 규모 등 재해발생 현황                      ② 지방고용노동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는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5-21조(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감독 등)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감독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p> <p>제5-22조(노사협의체 협의사항) 법 제75조제5항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 노사협의체에 관한 현행 시행령 붙임(위에 있는 내용임)(시행령 제26조</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② 건설공사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64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본다.</p> <p>③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제24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방법은 <u>대통령령</u>으로 정한다.</p> <p>④ 노사협의체는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p> <p>⑤ 노사협의체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p>	<p>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도목 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p> <p><b>제5-19조(노사협의체의 구성)</b> ①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p> <p>1.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p> <p>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p> <p>3.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대표</p> <p>②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p>	<p>1.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p> <p>2. 작업의 시작시간 및 작업 및 작업장간의 연락방법</p> <p>3.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p>	<p>의2~ 제26조의4)</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p> <p>⑥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건설공사도급인·근로자 및 관계수급인·근로자는 제3항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p> <p>⑦ 노사협의체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사업의 대표자</li> <li>2. 안전관리자 1명</li> <li>3. 보건관리자 1명(별표 5 제40호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한다)</li> <li>4.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li> </ol> <p>③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를 통해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p> <p><b>제5-20조(노사협의체의 운영 등)</b> ① 법 제75조제4항에 따라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p> <p>② 위원장의 선출, 노사협의체의 회의,</p>		<p>준용내용 : 제25조의4 제2항부터 제4항까지(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 : 법제75조제4항), 제25조의5(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 제3항) 및 제25조의6(회의결과 등의 주지</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제76조(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b> 건설공사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p>	<p>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및 회의 결과 등의 주지에 관하여는 각각 제25조의3, 제25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의5 및 제25조의6을 준용한다.</p> <p><b>제5-21조(기계·기구 등)</b> 법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타워크레인</li> <li>2. 건설용 리프트</li> <li>3. 항타기 및 항발기</li> </ol>	<p><b>제5-23조(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조치)</b> 법 제76조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은 영 제5-21조에 따른 기계·기구의 설치·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설치·해체 작업시작 전 영 제5-21조에 따른 기계·기구를 소유 또는 대여하는 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 실시</li> <li>2. 설치·해체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li> <li>3. 작업자가 법 제140조에서 정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확인</li> <li>4. 기계·설비의 결함, 작업계획서에 따른 작업절차 미준수 및 강풍 등 이상</li> </ol>	<p>: 위임없음)을 준용</p> <p>- 법안 제76조에서는 기계·기구 등 종류에 대해서만 위임하고 있음</p> <p>- 시행규칙 제5-23조의 내용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남 → 작업감독자 선임 부분 삭제</p> <p>- 법 제38조 및 제39조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b>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b></p> <p><b>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b>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p> <p>1.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p>	<p><b>제5-22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b>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p> <p>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p>	<p>환경으로 인하여 작업수행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중지 조치</p>	<p>- 안전보건조치사항은 법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영 5-21조제2항은 삭제</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p> <p>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p> <p>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③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사람</p> <p>3.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p> <p>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p> <p>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p> <p>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쉐어링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p> <p>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에 따른 대출모집인</p> <p>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p> <p>9.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p> <p><b>제5-23조(안전 및 보건 교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b>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p> <p>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p> <p>나.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p>	<p><b>제5-25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b>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b>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그 중개를 통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p> <p><b>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b>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p>	<p>으로 하는 사람</p> <p>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p> <p>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p> <p>4.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p> <p><b>제5-24조(프로그램 마련·시행 등의 대상 가맹본부)</b> ① 「가맹사업거래의</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의 설비나 기계, 원자재 또는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1.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마련·시행</p> <p>2.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설치하거나 공급하는 설비·기계 및 원자재 또는 상품 등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p> <p>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내용·시행방법,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한다.</p>	<p>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의 정보공개서(이하 이 조에서 “정보공개서”라 한다) 항목 중 업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가맹점 사업자 수가 500개소 이상의 가맹본부를 말한다.</p> <p>1. 대분류가 “외식”인 업종</p> <p>2. 대분류가 “도소매”이면서 중분류가 “편의점”인 업종</p> <p>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서 자료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등록된 사항을 적용한다.</p> <p>③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영업표지가 다르더라도, 소속된 가맹본부가 같은 경우에는 당해 영업표지 가맹점수를 합산하여 대상 가맹본부 규모를 정한다.</p>	<p>제5-27조(프로그램의 내용 및 시행)</p> <p>①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79조제1항의 가맹본부(이하 “가맹본부”라 한다)의 안전보건경영 방침 및 안전보건활동 계획</li> <li>2. 가맹본부의 프로그램 운영 조직 구성, 역할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지원 체계</li> <li>3. 가맹점 내 위험요소 및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가맹점 안전보건매뉴얼</li> <li>4. 가맹점의 재해 발생에 대비한 가맹본부 및 가맹점주의 조치사항</li> </ol> <p>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내용을 연 1회 이상 교육하여야 한다.</p> <p><b>제5-28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방법)</b> 가맹본부는 법 제79조제1항제2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공할</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제6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p> <p>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p>		<p>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의한 가맹계약서의 관계서류에 포함하여 제공</li> <li>2.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설비·기계 및 원자재 또는 상품 등을 설치하거나 공급하는 때에 제공</li> <li>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호의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시에 제공</li> <li>4. 기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대상 정기·수시 방문지도 시에 제공</li> <li>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제공</li> </ol>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에 대한 방호조치)</b> ① 누구든지 동력 (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것은 <u>고용노동 부령</u>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 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 니 된다.</p> <p>②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 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 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 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li> <li>2.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 이 있는 것</li> <li>3.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li> </ol> <p>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p>	<p><b>제6-1조(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 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b> 법 제80 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를 위 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를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 니 되는 기계·기구는 별표 7과 같다.</p>	<p><b>제6-1조(방호조치)</b> ① 법 제80조제1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영 별표 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기계·기구 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 별표 7 제1호에 따른 예초기에는 날접촉 예방장치</li> <li>2. 영 별표 7 제2호에 따른 원심기에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li> <li>3. 영 별표 7 제3호에 따른 공기압축기 에는 압력방출장치</li> <li>4. 영 별표 7 제4호에 따른 금속절단기 에는 날접촉 예방장치</li> <li>5. 영 별표 7 제5호에 따른 지게차에는 헤드 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 등, 후미등, 안전벨트</li> <li>6. 영 별표 7 제6호에 따른 포장기에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li> </ol> <p>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란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문함형으로</li> </ol>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호조치와 관련되는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p> <p>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를 해제하려는 경우 등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p>		<p>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p> <p>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p> <p>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기어 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p> <p>4.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호장치를 설치할 것</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b>제6-2조(근로자의 준수사항 및 사업주의 조치)</b> ① 근로자는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p> <p>1. 방호조치를 해제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제할 것</p> <p>2. 방호조치를 해제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p> <p>3.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받</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제81조(기계·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설비 또는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6-2조(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 법 제8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은 별표 8과 같다.</p>	<p>견한 경우: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할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6-3조(기계등 대여자의 조치) 법 제81조에 따라 영 제6-2조 및 영 별표 8에 따른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이하 “기계등”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가 하여야 할 유해·위험 방지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기계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정비를 할 것</li> <li>2. 해당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할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해당 기계등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용</li> <li>나. 해당 기계등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li> </ol> </li> </ol>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다. 해당 기계등의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p> <p>라. 해당 기계등의 정밀진단 및 수리 후 안전점검 내역, 주요 안전부품의 교환이력 및 제조일</p> <p>3. 사용을 위하여 설치·해체 작업(기계등을 높이는 작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기계등을 대여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계등의 설치·해체 작업을 다른 설치·해체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p> <p>가. 설치·해체업자가 기계등의 설치·해체에 필요한 법령상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와 설치·해체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할 것</p> <p>나. 설치·해체업자에게 제1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고, 해당 내용을 주지시킬 것</p> <p>다. 설치·해체업자가 설치·해체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할 것</p> <p>4. 해당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제3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확인결과를 알릴 것</p> <p><b>제6-4조(기계등을 대여 받는 자의 조치)</b> ① 법 제80조에 따라 기계등을 대여 받는 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해당 기계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계등을 구입할 목적으로 기종의 선정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해당 기계등을 조작하는 사람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할 것</p> <p>2. 해당 기계등을 조작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주지시킬 것</p> <p>가. 작업의 내용</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나. 지휘계통                      다. 연락·신호 등의 방법                      라. 운행경로, 제한속도, 그 밖에 해당 기계등의 운행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해당 기계등의 조작에 따른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② 타워크레인을 대여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1.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중에 타워크레인 장비 간 또는 타워크레인과 인접 구조물 간 충돌위험이 있으면 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등 충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p> <p>2.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작업과정 전반(全般)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대여기간 동안 보관할 것</p> <p>③ 해당 기계등을 대여하는 자가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을 요구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가 기계등을 대여한 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등의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부품교체 사항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p> <p><b>제6-5조(기계등을 조작하는 자의 의무)</b> 제6-4조에 따른 기계등을 조작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제2호 각 목에 규정된 사항을 지켜야 한다.</p> <p><b>제6-6조(기계등 대여사항의 기록·보존)</b> 기계등을 대여하는 자는 해당 기계등의 대여에 관한 사업 상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p> <p><b>제6-7조(대여 공장건축물의 공동사용자의 조치)</b>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장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치를 설치한 것을 대여하는 자는 해당 건축물을 대여 받은 자가 2명 이상인</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제82조(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 등) ①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p>	<p>제6-3조(설치·해체업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① 법 제82조제1항 전단에</p>	<p>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용부분의 기능이 유효하게 작동되도록 하기 위하여 점검·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소 배기장치</li> <li>2. 전체 환기장치</li> <li>3. 배기처리장치</li> </ol> <p>제6-8조(편의 제공) 건축물을 대여하는 자는 해당 건축물을 대여 받은 사업주로부터 국소 배기장치, 소음방지를 위한 칸막이벽, 그 밖에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해당 설비의 설치에 수반된 건축물의 변경승인, 해당 설비의 설치공사에 필요한 시설의 이용 등 편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p> <p>제6-9조(설치·해체업 등록신청 등) ①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p>	<p>- 영 제6-3조제2항 신설(고용부 의견 반</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해체를 하려는 자는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료하여금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한다.</p> <p>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p>	<p>다른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00와 같다.</p> <p>② 법 제82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인력·시설 을 말한다.</p>	<p>치·해체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 00호 서식의 설치·해체업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 별표 00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li>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li> </ol> <p>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자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 영 별표 00의 기준에 적합하면 그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00호 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③ 설치·해체업자 에 대한 등록증의 재발급, 등록받은 사항의 변경 및 등록증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p>	<p>영하여 수정) (12. 3)</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b>제2절 안전인증</b></p> <p><b>제83조(안전인증기준) ①</b>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p>	<p><b>제6-4조(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b>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벌금형의 선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li> <li>2.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 업무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li> </ol>	<p>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제1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하고 ‘지정서’는 ‘등록증’으로 한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이하 “유해·위험기계등”이라 한다)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 및 생산체계 등에 관한 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p>② 안전인증기준은 유해·위험기계등의 종류별, 규격 및 형식별로 정할 수 있다.</p> <p><b>제84조(안전인증)</b> ① 유해·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p>	<p><b>제6-5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b> ① 법 제8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 및 설비</p> <p>가. 프레스</p> <p>나. 전단기(剪斷機) 및 절곡기(折曲機)</p> <p>다. 크레인</p> <p>라. 리프트</p> <p>마. 압력용기</p> <p>바. 롤러기</p>	<p><b>제6-11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b> 법 제84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계·기구를 말한다.</p> <p>1. 설치·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p> <p>가. 크레인</p> <p>나. 리프트</p> <p>다. 곤돌라</p> <p>라. 산업용 로봇</p> <p>2.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p> <p>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p> <p>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p> <p>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경우</p> <p>③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으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p>	<p>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p> <p>아. 고소(高所) 작업대</p> <p>자. 곤돌라</p> <p>차. 산업용 로봇</p> <p>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p> <p>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p> <p>나.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방지장치</p> <p>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p> <p>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p> <p>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p> <p>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p> <p>사.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p> <p>아.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p> <p>자.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p> <p>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p> <p>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p>	<p>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p> <p>가. 프레스</p> <p>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p> <p>다. 크레인</p> <p>라. 리프트</p> <p>마. 압력용기</p> <p>바. 롤러기</p> <p>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p> <p>아. 고소(高所)작업대</p> <p>자. 곤돌라</p> <p>차. 산업용 로봇</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3년 이하의 범위에서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p> <p>⑤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명·모델명·제조수량·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 등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p> <p>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에 관</p>	<p>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p> <p>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 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 시행령에서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으로 약칭하지 않았고, 이후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안전인증대상기계를 풀어씀</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한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안전인증의 신청 방법·절차, 제4항에 따른 확인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한다.</p>		<p><b>제6-12조(안전인증의 신청 등)</b> ① 법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제6-14조제1항에 따른 심사종류별로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안전인증 신청서에 별표 8의3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6-0조(업무의 위탁)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서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이하 “유해·위험기계등”이라 한다)를 제조하는 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인</p>	<p>* 안전인증 신청→면제 순으로 조문 순서 정리                      *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의 문구 수정</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 심사에 필요한 시료(試料)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b>제6-13조(안전인증의 면제)</b> ① 안전인증대상 기계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동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li> <li>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li> </ol>	<p>* “제84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기계”로 시작되는 문구 수정</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p> <p>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p> <p>4.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p> <p>5. 「항만법」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p> <p>6. 「광산보안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때에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p> <p>7.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에 따른 형식 신고를 한 경우</p> <p>8. 「선박안전법」 제7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p> <p>9. 「원자력안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p> <p>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p> <p>11. 「방위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p> <p>1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p> <p>② 안전인증대상 기계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시험을 받았거나 그 일부 항목이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또는 시험이나 그 일부 항목에 한하여 법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면제한다.</p> <p>1.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p> <p>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p> <p>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p> <p>4.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검</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p> <p>5.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 방폭전기기계·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p> <p>③ 법 제8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이 면제되는 안전인증대상 기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공산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안전인증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품 및 용도설명서</li> <li>2.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li> </ol> <p>④ 안전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 면제신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하고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b>제6-14조(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b></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법)</b> ① 유해·위험기계등이 법 제83조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하는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예비심사 : 기계 및 방호장치·보호구가 유해·위험기계등 인지를 확인하는 심사(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li> <li>2. 서면심사 : 유해·위험기계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유해·위험기계등의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법 제83조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li> <li>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를 생략한다.</li> </ol>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가. 영 제6-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방호장치 및 보호구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p> <p>나. 제4호가목의 개별 제품심사를 하는 경우</p> <p>다. 안전인증(제4호나목의 형식별 제품심사를 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은 후 같은 공정에서 제조되는 같은 종류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하는 경우</p> <p>4. 제품심사 : 유해·위험기계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다음 각 목의 심사는 유해·위험기계등 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받는다)</p> <p>가. 개별 제품심사 : 서면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유</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해·위험기계등 모두에 대하여 하는 심사(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서면심사와 개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병행하여 할 수 있다)</p> <p>나. 형식별 제품심사: 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유해·위험기계등의 형식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하는 심사(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와 형식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병행하여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기계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 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③ 안전인증기관은 제6-13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심사 종류별 기간 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심사</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의 경우 처리기간 내에 심사를 끝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예비심사 : 7일</li> <li>2. 서면심사 : 15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는 30일)</li> <li>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 30일 (외국에서 제조한 경우는 45일)</li> <li>4. 제품심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개별 제품심사 : 15일</li> <li>나. 형식별 제품심사 : 30일(영 제28조제1항제2호사목의 방호장치와 같은 항 제3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보호구는 60일)</li> </ol> </li> </ol> <p>④ 안전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가 끝나면 안전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10호의5서식의 심사결과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심사 결과가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안전인증서를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⑤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특수한 구조 또는 재료로 제조되어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적용하기 곤란할 경우 해당 제품이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에 관한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면 안전인증을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또는 관련 국제규격 등을 참고하여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추가하여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심사를 할 수 있다.</p> <p>⑥ 안전인증기관은 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에 관한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할지 여부와 해당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생략하거나 추가하여 적용할 안전인증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전인증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개최에 소</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요되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⑦ 제6항에 따른 안전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b>제6-15조(확인방법 및 주기 등) ①</b>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84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전인증서에 적힌 제조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위험기계등을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li> <li>2.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위험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이 경우 심사 종류 및 방법은 제58조의4제1항제4호를 준용한다)</li> <li>3. 제조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당시의 기술능력·생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li> <li>4. 유해·위험기계등이 서면심사 내용</li> </ol>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 및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p> <p>② 법 제84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2년에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에 1회 이상 확인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최근 3년 동안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li> <li>2. 최근 2회의 확인 결과 기술능력 및 생산 체계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li> </ol> <p>③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7 서식의 안전인증확인 통지서를 제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④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법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p>	<p>* “법 제84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라는 부분이 안전인증의 근거가 동조 제1항, 제3항이 아닌 제4항으로 잘못 읽힐 수가 있어 어구 순서를 변경</p> <p>* 확인의 최소 횟수를 정한 것으로 1회를 “1회 이상”으로 수정</p> <p>* 2번→2회</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제84조 제5항		<p>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의 소재지(제품의 제조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소재지로 하되,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안전인증기관의 소재지로 한다)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p> <p>⑤ 안전인증기관은 제6-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부항목에 한정하여 안전인증을 면제한 경우에는 외국의 해당 안전인증기관에서 실시한 안전인증 확인의 결과를 제출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p> <p><b>제6-16조(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의 기록·보존 등)</b>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84조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 제품에 관한 자료를 안전인증을 받은</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제84조 제6항</p> <p>제85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위험기계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p> <p>②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위험기계등이 아닌 것은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p> <p>③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위험기계등</p>		<p>제품별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p> <p>제6-17조(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84조제6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요구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6-18조(안전인증의 표시)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중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p> <p>②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중 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9의2와 같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는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아니 된다.</p> <p>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li> <li>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li> </ol> <p><b>제86조(안전인증의 취소 등)</b>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안전인증기준에 맞게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b>제6-19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b></p> <p>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신문</p>	<p>* 본 규칙의 제정근거가 아닌 취소에 대한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 제1항에</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열할 수 없다.</p> <p>1.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전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2.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p> <p>3. 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게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b>제6-20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수거·파기명령)</b>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수거·파기명령을 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거·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제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을 교체하여 결함을 개선하는 등 안전인증기준의 부적합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품에 대해서만 수거·파기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제88조(안전인증기관)</b>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 업무 및 확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인증기관(이하 “안전인증</p>	<p><b>제6-6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요건)</b></p> <p>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단</li> <li>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u>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u>가. 산업안전·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li> </ol>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거·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면 그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명령 및 제3항에 따른 이행 결과 보고의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b>제6-21조(안전인증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b> 영 제6-6조제2호 각 목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란 별표○을 말한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한다.</p> <p>④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한다.</p> <p>⑤ 안전인증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인증기관"으로 본다.</p>	<p>나.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인증·검사, 생산기술의 연구개발·교육·평가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p> <p><b>제6-7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b> ①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안전인증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 변경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b>제6-22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b> ① 영 제6-7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li> <li>2. 별표 9의3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li> </ol>	<p>* 준용규정 조문 정리, 확인</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제88조 제5항	제6-8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법 제88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p>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p> <p>3. 별표 9의3에 따른 시설·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p> <p>4. 사업계획서</p> <p>②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인증기관”으로, “영 제15조의3제2항”은 “영 제28조의3제2항”으로, “법 제15조의2제1항”은 “법 제34조의5제4항”으로 본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b>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b></p> <p><b>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b> ①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84조제7항에 따른 안전인증·확인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li> <li>2. 법 제91조제4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지도·감독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li> <li>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 업무를 거부한 경우</li> <li>4. 안전인증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차질을 일으킨 경우</li> </ol> <p><b>제6-9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b></p> <p>①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및 설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한다)</li> <li>나. 혼합기</li> <li>다. 파쇄기 또는 분쇄기</li> </ol> </li> </ol>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p> <p>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p> <p>2. 제8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p> <p>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경우</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p>	<p>라. 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당한다)</p> <p>마. 컨베이어</p> <p>바. 자동차정비용 리프트</p> <p>사.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p> <p>아.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등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p> <p>자. 인쇄기</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p> <p>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p> <p>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p> <p>다. 롤러기 급정지장치</p> <p>라. 연삭기(研削機) 덮개</p> <p>마. 목재 가공용 등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p> <p>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신고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한다.</p> <p><b>제89조 제1항 제3호</b></p>	<p>사.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제6-5조제1항제2호아목의 가설기자재는 제외한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p> <p>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p> <p>가. 안전모(제6-5조제1항제3호가목의 안전모는 제외한다)</p> <p>나. 보안경(제6-5조제1항제3호차목의 보안경은 제외한다)</p> <p>다. 보안면(제6-5조제1항제3호카목의 보안면은 제외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 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b>제6-22조(신고의 면제)</b>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 전체적으로 정리할 때 괄호안 인용 조문 확인</p> <p>* 시행령에서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등”으로 약칭하지 않았고, 이후 인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등을 풀어씀</p> <p>* 법률 조문에 맞게 인용문구 수정</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및 제7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p> <p>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p> <p>3.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p> <p>4.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 방폭전기기계·기구 상호인정제도 (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p> <p><b>제6-23조(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신고방법)</b> ① 법 제89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같은 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등”이라 한다)을 출고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자율안전확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신고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이 조에서 “신고수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품의 설명서</li> <li>2.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수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li> <li>2. 개인 : 사업자등록증</li> </ol> <p>③ 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받은 신고수리기관은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제90조(자율안전확인표시 등)</b> ① 제 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이하 “자율안전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p> <p>②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 아닌 것은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자율안전확인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p> <p>③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아니 된다.</p> <p>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p>		<p><b>제6-24조(자율안전확인표시)</b> 법 제 90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1. 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p> <p>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p> <p>3. 제91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p> <p><b>제91조(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b>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p>		<p><b>제6-25조(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 등)</b>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을 금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등의 명칭 및 형식번호</li> <li>2. 자율안전확인번호</li> </ol>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③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한다.</p> <p><b>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b>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li> <li>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li> <li>3.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li> <li>4. 제91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제조자(수입자)</li> <li>4. 사업장 소재지</li> <li>5. 사용금지 기간 및 사용금지 사유</li> </ol> <p><b>제6-26조(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등의 수거·파기명령)</b>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수거·파기명령을 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거·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제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을 교체하여 결함을 개선하는 등 자율안전기준의 부적합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품에 대해서만 수거·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거·파기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면 그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게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4절 안전검사</b></p> <p><b>제93조(안전검사)</b>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94조, 제95조 및 제98조에서 같다)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p>	<p><b>제6-10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b> ①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프레스</li> <li>2. 전단기</li> <li>3.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li> <li>4. 리프트</li> <li>5. 압력용기</li> <li>6. 곤돌라</li> <li>7.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li> <li>8.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li> <li>9.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li> </ol>	<p>한다.</p> <p>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명령 및 제3항에 따른 이행 결과 보고의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b>제6-27조(안전검사의 신청 등)</b> ①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검사 신청서를 제6-29조에 따른 검사주기 만료일 30일 전에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30일 이내에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별로 안전검사를 하여야 한다.</p> <p>③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 결과 법</p>	<p>* 시행령 위탁기관 관련 조문 확인</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대상 기계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p> <p>③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 합격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종류, 사용연한(使用年限)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p> <p><b>법 제93조 제2항</b></p>	<p>10.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高所作業臺)로 한정한다]</p> <p>11. 컨베이어</p> <p>12. 산업용 로봇</p> <p>②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93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기준(이하 “안전검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법 제93조제1항 및 영 제6-10조에 따른 유효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에 직접 부착 가능한 별표 9의4에 따른 안전검사 합격표시를 발급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안전검사 불합격통지서에 그 사유를 밝혀 발급하여야 한다.</p> <p><b>제6-28조(안전검사의 면제)</b> 법 제93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li> <li>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li> </ol>	<p>* 법률 조문에 맞게 인용문구 수정</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3.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4. 「항만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5. 「광산보안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마다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6.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안전검사 주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검사로 한정한다) 7.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8. 「원자력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등을 받은 경우 10.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법 제93조 제3항</p>		<p>11.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p> <p><b>제6-29조(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표시방법)</b> ①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li> <li>2.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li> <li>3.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li> </ol>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제94조(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발급 등)</b>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3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에 합격한 사업주에게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업주는 그 증명서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부착하여야 한다.</p> <p><b>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b>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p>		<p>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②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9의4와 같다</p> <p>해당 시행규칙없음</p>	<p>- 안전합격증명서에 관하여는 별표9의 4.1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표9의4를 개정하여 1을 분리하여 합격증명서만을 따로 규정하는 방안 검토</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제93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p> <p><b>제96조(안전검사기관)</b>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한다.</p>	<p><b>제6-11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b>                      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란 별표 ○을 말한다.</p>	<p><b>제6-30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b> ① 법 제96조제4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li> <li>2. 별표 9의5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li> <li>3. 별표 9의5에 따른 시설·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li> </ol>	<p>* 안전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인력, 시설, 장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지정절차는 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해야 함.</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④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한다.</p> <p>⑤ 안전검사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p>	<p><b>제6-12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b> 법 제96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에 관하여는 제6-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안전인증 업무”는 “안전검사 업무”로 본다.</p>	<p>4. 사업계획서</p> <p>②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영 제15조의3제2항”은 “영 제28조의7”로, “법 제15조의2제1항”은 “법 제36조제10항”으로 본다.</p> <p><b>제6-31조(안전검사기관의 평가 등)</b> ① 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b> 안전검사기관은 제9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p> <p><b>제98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b> ① 제9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근</p>		<p>1. 영 제6-11조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여부와 관리능력</p> <p>2. 법 제98조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을 통한 안전검사 업무 수행능력</p> <p>3.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한 사업주의 만족도</p> <p>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p> <p><b>제6-32조(검사원의 자격)</b> 법 제9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와 관련된 자격 및 경험을 가진 사람”</p>	<p>* 법 제1항제1호, 제2호와 동일하게 용어 수정</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검사기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사주기 등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이하 “자율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으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와 관련된 자격 및 경험을 가진 사람</p> <p>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p> <p>②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p> <p>③ 사업주는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p>		<p>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전자·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p> <p>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전자·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p> <p>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전자·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p> <p>4.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수업</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야 한다.</p> <p>④ 자율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사업주는 제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이하 “자율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자율안전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p> <p>⑤ 자율검사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요건, 인정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한다.</p>		<p>연한이 4년인 학교(같은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에서 기계·전기·전자·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p> <p>5.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제4호에 따른 학교 외의 학교(같은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에서 기계·전기·전자·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p> <p>6.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에서 기계·전기 또는 전자·화공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p> <p>7.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p>	<p>* 양성교육 용어 변경</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제98조 제5항		<p>분야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p> <p><b>제6-33조(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b></p> <p>①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p> <p>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방법, 교육실시기관의 인력·시설·장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p> <p><b>제6-34조(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등)</b> ① 사업주가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8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자율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검사원을 고용하고 있을 것</li> <li>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li> </ol>	<p>* 자율검사프로그램과 성능검사 교육의 관계?</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할 수 있을 것</p> <p>3. 제6-29조에 따른 검사 주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기(영 제6-10조제1항제3호의 크레인 중 건설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의 경우에는 6개월)마다 검사를 할 것</p> <p>4. 자율검사프로그램의 검사기준이 안전검사기준을 충족할 것</p> <p>②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보유 현황</p> <p>2. 검사원 보유 현황과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 및 장비 관리방법(자율안전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p> <p>3.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검사 주기 및 검사기준</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4. 향후 2년간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검사수행계획</p> <p>5. 과거 2년간 자율검사프로그램 실적(재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1. 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p> <p>2. 개인 : 사업자등록증</p> <p>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p> <p>⑤ 공단은 신청 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서에 인정증명 도장을 찍은 자율검사프</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제99조(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b>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하는 등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li> <li>2.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li> <li>3.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li> </ol>		<p>로그램 1부를 첨부하여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⑥ 공단은 신청 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 부적합 통지서에 부적합한 사유를 밝혀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4. 제9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자율안전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p> <p><b>제100조(자율안전검사기관)</b> ① 자율안전검사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율안전검사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한다.</p> <p>③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한다.</p> <p>④ 자율안전검사기관에 관하여는 제</p>	<p><b>제6-13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b>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란 별표 ○을 말한다.</p>	<p><b>제6-35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b> ① 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율안전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받으려는 검사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관</li> <li>별표 10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제</li> </ol>	<p>- 장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시행령으로 규정</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자율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p>		<p>직증명서 등의 서류</p> <p>3.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p> <p>4.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을 위한 심사, 지정서의 발급·재발급, 지정사항의 변경 및 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00조제0항부터 제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④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업무 지역을 관할하는</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제100조 제2항 평가 방법 및 결과공개		<p>다른 지방고용노동청장과 미리 협의 하여야 한다.</p> <p><b>제6-36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평가 등)</b> ① 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자율안전검사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li> <li>2.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충실성을 포함한 안전검사 업무 수행능력</li> <li>3.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의 만족도</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의4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은 “자율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p>	
제100조 제3항 신청절차		<p><b>제6-37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업무 수행기준)</b> ① 자율안전검사기관은 검사 결과 안전검사기준을 충족하지 못</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제100조 제4항	<p>제6-14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100조제4항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검사업무를 하지 않고 위탁 수수료를 받은 경우</li> <li>2. 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li> <li>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업무를 수탁을 거부한 경우</li> <li>4. 검사 항목을 생략하거나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li> <li>5. 검사 결과의 판정기준을 준수하지</li> </ol>	<p>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구체적인 개선 의견을 그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자율안전검사기관은 기계·기구별 검사 내용,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 등 검사업무를 수행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제5절 유해·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p> <p>제101조(성능시험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성능의 저하등으로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기계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제</p>	<p>않거나 검사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p> <p>제6-15조(성능시험 등) ① 법 제101조에 따라 제조 과정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기계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생산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법 제101조에 따라 유해·위험기계</p>	<p>제6-37조(지정검사기관의 업무수행 기준) ① 자율안전검사기관은 검사 결과 안전검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구체적인 개선 의견을 그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자율안전검사기관은 기계·기구별 검사 내용,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 등 검사업무의 수행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제6-38조(성능시험 절차·방법 등)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6-12조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수거시험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할 수 있다. 1.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의심되</p>	<p>성능시험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영의 내용과 규칙의 준용규정 수정(고용부 의견)</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품 제조 과정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조·수입·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된 유해·위험기계등을 수거하여 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성능시험을 할 수 있다.</p>	<p>등의 성능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제조·수입·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된 유해·위험기계등 중에서 그 시료를 수거하여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조 과정 조사 및 성능시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p>는 경우 2. 제품의 안전성능저하 등에 대한 정보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이 발생한 경우 4.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의 성능유저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수거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되고 있는 제품 : 현장조사 또는 유상 수거시험 2. 제조자가 생산 중이거나 보관 중인 제품(원재료 및 중간제품을 포함한다) : 현장조사 또는 무상 수거시험 3. 사용 장소에 보관 중이거나 설치된 제품 : 현장조사 또는 무상 수거시험 (수거시험은 사용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소속 공</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제102조(유해·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b>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유해·위험기계등의 품질·안전성 또는 설계·시공 능력 등의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조하는 자</p> <p>가. 안전인증대상기계등</p>		<p>무원이나 공단으로 하여금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수거시험을 하게 할 수 있다.</p> <p>법 제101조 및 영 제6-15조에 따른 제조 과정 조사 또는 성능시험 등의 절차 및 방법은 제6-14조, 제6-15조 및 제6-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b>제6-39조(유해·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b> 법 제102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이란 별표 10의2와 같다.</p> <p><b>제6-40조(등록신청 등)</b> ①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유해·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이하 “등록지원기관”이라</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다. 그 밖에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유해·위험기계등</p> <p>2. 작업환경 개선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자</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p> <p>2. 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p> <p>3. 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경우</p> <p>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p>		<p>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p> <p>1. 별표 10의2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훈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p> <p>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p> <p>3. 제조 인력, 주요 부품 및 완제품 조립·생산용 생산시설 및 자체 품질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서류(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 시설업체, 소음·진동 방지장치 시설업체의 경우는 제외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지원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신청인이</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면 지원한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li> <li>2. 제1항에 따른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li> <li>3. 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li> <li>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자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한 날부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li> <li>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내용, 등록 및 등록 취소, 환수 절차, 등록 제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한다.</li> </ol>		<p>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li> <li>2. 개인 : 사업자등록증</li> <li>③ 등록지원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별표 10의2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li> <li>④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li> </ol> <p><b>제6-41조(지원내용 등)</b> ① 등록지원기관이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설계·시공, 연구·개발 및 시험에 관한 기술 지원</li> <li>2. 설계·시공, 연구·개발 및 시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원</li> <li>3. 연구개발,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장비 구매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원</li> <li>4. 국내·외 전시회 개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원</li> <li>5. 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공업소유권의 우선사용 지원</li> <li>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등록업체의 제조·설계·시공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받으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등록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등록지원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및 지원 우선순위 등을 심사·결정하여 지원신청자에</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 신청의 경우 30일 이내에 관련 기술조사 등 심사·결정을 끝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5일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④ 등록지원기관은 등록하거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p> <p><b>제6-42조(등록취소 등)</b> ① 등록지원기관은 법 제102조제3항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등록업체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10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원을 제한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한하여야 한다.</p> <p>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102</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제103조(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 관		<p>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등록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법 제102조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즉시 제6-40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을 등록지원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p> <p>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2조제4항에 따라 지원한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경우 지원 받은 자에게 반환기한과 반환금액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기한은 반환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심사·결정하여 지원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원 신청의 경우 30일 이내에 관련 기술조사 등 심사·결정을 끝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5일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련 정보의 종합관리)</b>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유해·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및 안전검사 이력 등 안전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해당 정보를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에 사업장의 유해·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및 안전검사 이력 등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유해·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및 안전검사 이력 등 안전에 관한 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p> <p><b>제7장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조치</b></p>		<p><b>제10장 유해물질의 제조 등의 금지·허가 및 분류 등</b></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제1절 유해·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b></p> <p><b>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b>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p> <p><b>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관리)</b>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성·위험성 수준별로 유해인자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평가 대상 유해인자의 선정기준, 유해성·위험성 평가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p>		<p><b>제2절 유해인자의 분류·관리 등</b></p> <p><b>제7-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b> 법 제104조에 따른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p> <p><b>제7-2조(유해성·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b> ① 법 제105조 제1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인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7-3조제1항 각 호로 분류하기 위하여 유해성·위험성 평가가 필요한 유해인자</li> <li>노출 시 변이원성(變異原性), 흡입독성, 생식독성(生殖毒性), 발암성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이 의심되는 유해인자</li> <li>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li> </ol>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은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한다.</p>		<p>등 유해성·위험성 평가가 필요한 유해인자</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유해인자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평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u>규정</u>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p> <p><b>제7-3조(유해인자의 관리 등)</b>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질 또는 인자로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06조에 따른 노출기준(이하 “노출기준”이라 한다) 설정 대상 유해인자</li> <li>2.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이라 한다) 설정 대상 유해인자</li> <li>3. 법 제118조에 따른 제조 등 금지물질</li> <li>4. 법 제119조에 따른 제조 등 허가물질</li> <li>5. 제126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li> </ol>	<p>‘유해인자 노출실태 조사’ 표현이 동 조항 외에는 등장하지 않음(삭제가 타당해 보임) → 고용부의견 반영하여 삭제</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제106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평가 결과 등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p>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p>	<p>제7-1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p>	<p>6. 별표 00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p> <p>7.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해인자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해인자의 취급량·노출량, 취급 근로자 수, 취급 공정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p> <p>제7-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법 제10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노출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유해인자에 따른 건강장해에 관한 연구·실태조사의 결과</li> <li>2. 해당 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의 평가 결과</li> <li>3. 해당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적용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li> </ol> <p>제7-5조(유해인자 허용기준) ① 법 제</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① 사업주는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로서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작업장 내의 그 노출 농도를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정화·배출하는 시설 및 설비의 설치나 개선이 현존하는 기술로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li> <li>2.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과 설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li> <li>3.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의 경우</li> <li>4. 그 밖에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경우</li> </ol> <p>② 사업주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b>지 대상 유해인자) 법 제107조제1항</b>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란 별표00와 같다.</p>	<p>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란 별표 11의3과 같다.</p> <p>②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농도 측정에 관하여는 제93조의3을 준용한다.</p> <p><b>제7-6조(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b> 법 제107조제1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이란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 작업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을 말한다. 이 경우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로 본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제108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외의 화학물질(이하 “신규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이하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조사하고 그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경우</li> <li>2. 신규화학물질의 수입량이 소량이거나 그 밖에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경우</li> </ol> <p>②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은 제1항 각</p>	<p>제7-2조(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법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원소</li> <li>2.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li> <li>3.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 물질</li> <li>4. 「약사법」 제2조제4호·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li> <li>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li> <li>6.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li> <li>7.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제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li> <li>8.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li> <li>9.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li> <li>10.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li> </ol>	<p>제11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p> <p>제7-7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이하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이하 “유해성·위험성조사보고서”라 한다)에 별표 11의4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규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해당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p>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가 제출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 등을 공표하고 관계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에게 시설·설비를 설치·정비하고 보호구를 갖추어 두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⑤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신규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p>	<p>사료</p> <p>1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p> <p>12.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痛傷品)은 제외한다)</p> <p>1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p> <p>14.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p> <p>15.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p> <p>1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제8호에 따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p> <p>17. 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 및 연간 제조량·수입량을 공표</p>	<p>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해성·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신규화학물질에 관한 등록자료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별표 11의4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신규화학물질이 별표 11의2 제1호나목7)에 따른 생식세포 변이원성 등으로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에게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에 대한 추가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경부</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는 제4항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p>	<p><u>한 물질로서 공표된 연간 제조량·수입량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물질</u>  <u>18. 고용노동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물질</u></p>	<p><u>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신규화학물질 등록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법 제108조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날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신규화학물질 등록자료 등을 제공받은 날부터 30일(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자에게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치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추가 검토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라 유해성·</u></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u>위험성 조치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u></p> <p><b>제7-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①</b>                      법 제108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신규화학물질이 완성된 제품으로서 국내에서 가공하지 아니하는 경우</li> <li>2.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포장 또는 용기를 국내에서 변경하지 아니하거나 국내에서 포장하거나 용기에 담지 아니하는 경우</li> <li>3. 해당 신규화학물질이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국내의 사업장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li> </ol> <p>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최초로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날 7일 전까지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b>제7-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b> ① 법 제108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수입량이 소량이어서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수입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가 같은 항에서 정한 수량 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였거나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7-7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신청에 관하여</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는 제7-8조제2항을 준용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확인은 1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다만,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수입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로서 제7-11조제2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p> <p><b>제7-1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b> ① 법 제108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신규화학물질이 시험·연구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li> <li>2. 신규화학물질을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li> </ol>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3.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7-8조제2항을 준용한다.</p> <p><b>제7-11조(확인 면제)</b> ① 제7-8조 및 제7-10조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할 자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확인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제7-8조 및 제7-10조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② 제7-9조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할 자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7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화학물질의 신고를 통지받았거나 법률 제1178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7-9조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 제2항: 개정 화평법 2019.1.1. 시행예정에 따라 제10조제4항의 통지를 제10조제7항으로 수정</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제7-12조(확인 및 결과 통보)</b>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8조, 제7-9조 및 제7-10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확인한 후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p> <p><b>제7-13조(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b>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7조 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유해성·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신규화학물질 등록자료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검토를 완료한 후 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조치사항 및 연간 제조량·수입량을 관보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등에 공표하고 관계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하고 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의 명칭과 CAS번호에 대한 정보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평가하여 해당 정보보호기간 동안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총칭명(總稱名)으로 공표할 수 있으며, 그 정보보호기간이 끝나면 제1항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요청, 타당성 평가기준 및 정보보호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b>제7-14조(의견 청취 등)</b>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7-7조 및 제7-14조에 따라 제출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결과 및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검토할 때에는 해당 물질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참고하거나 공단이나 그 밖의</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제109조(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b>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 또는 그 밖에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 또는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의 제출 또는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명령을 받은 자는 유해성·위험성 조사 결과 해당 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p>		<p>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b>제7-15조(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결과 등의 제출)</b> ①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결과와 제출을 명령받은 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결과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명령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독성시험 성적에 관한 서류의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시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등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보건에 관한 자료</li> <li>2. 해당 화학물질의 독성시험 성적서</li> <li>3.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및 제조 또는</li> </ol>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출된 조사결과 및 자료를 검토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105조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거나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자 또는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b>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b> ①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서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u>고용노동부령</u>으로 물질안</p>	<p><b>제7-3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b>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li> <li>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원료물질</li> <li>3.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약외품</li> <li>4.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li> <li>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li> </ol>	<p>사용 공정도(工程圖)</p> <p>4 그 밖에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유형성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p> <p>② 법 제109조제3항에 따라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b>제7-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방법 및 기재사항)</b> ①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용된 자료의 출처를 함께 적어야 한다.</p> <p>② 법 제110조제1항제5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전보건의자료의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품명</li> <li>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li> <li>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li> <li>4.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li> <li>5. 물리·화학적 특성 등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사항</li> </ol> <p>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6.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li> <li>7.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li> <li>8.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li> <li>9.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li> <li>10. 「충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li> <li>11.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li> <li>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li> <li>1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li> <li>14.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li> <li>1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생활화학제품</li> <li>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물리·화학적 특성</li> <li>2. 독성에 관한 정보</li> <li>3. 폭발·화재 시의 대처 방법</li> <li>4. 응급조치 요령</li> <li>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li> </ol> <p>③ 그 밖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세부 작성방법, 용어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b>제7-17조(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출방법 및 시기)</b> ①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에 관한 자료(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00호서식의 화학물질 확인서류를 말한다)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p>	<p>제출의 방법 부분 수정 → 인편으로 제출하는 것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방법을 유지하는 것</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이 전부 포함된 경우</p> <p>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국외에서 제조하여 우리나라로 수출하려는 자(이하 “국외제조자”라 한다)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받아 제출한 경우</p> <p>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p>	<p>는 경우를 포함한다)</p> <p>17.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연간 100kg미만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개별용기 단위로는 10k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p> <p>1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등</p>	<p>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 및 제7-17조제2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비공개 정보 승인시스템(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거나 신청인이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한 신청 또는 자료제출의 경우 같다.</p> <p><b>제7-18조(변경이 필요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항목 및 제출시기)</b> ① 법 제11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제품명(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p>	<p>이 필요할 경우 “우편이나 직접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로 수정 가능할 것임</p> <p>* 제품명에 관한 단서 신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출 방법·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한다.</p> <p><b>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b></p> <p>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p>		<p>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p> <p>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p> <p>3.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제품명의 변경 없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만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p> <p>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1항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즉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b>제7-19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b> ① 법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과 함께 제공하거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p>	<p>*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중복 표현 삭제</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MSDS')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한다.</p> <p><b>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b> ① 제1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p>		<p>한다.</p> <p>② 동일한 상대방에게 같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2회 이상 계속하여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이 없는 한 추가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b>제7-20조(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b> ① 법 제1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비공개 승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7-16조 제출방법에 우편이용 방법 반영</li> <li>• “대체자료” 용어</li> </ul>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아니하려는 자는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명칭 및 함유량(이하 “대체자료”라 한다)으로 적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의 대체 필요성, 대체자료의 적합성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에 관한 기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p>		<p>기 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00호서식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비공개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li> <li>2. 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대체자료(이하 “대체자료”라 한다)</li> <li>3. 비공개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li> <li>4. 물질안전보건자료</li> <li>5.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li> <li>6. 그 밖에 비공개 승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li> </ol>	<p>는 사용가능(법제처 문의 결과 법에서 약칭한 사항을 필요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다시 약칭해 주는 경우 있으나 판단하기 나름이라는 회신을 받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명확히 하기 위해 법 위임을 표시함</li> </ul>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 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p> <p>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자가 그 유효기간의 연장승인을 신청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날부터 5년 단위로 그 기간을 계속하여 연장승인할 수 있다.</p> <p>⑥ 신청인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에 관한 결과에 대하여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 또는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고시하는 서류</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에 대하여 비공개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의 자료를 생략하여 제출할 수 있다.</p> <p>③ 법 제112조제5항에 따른 연장승인 신청을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00호서식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연장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b>제7-21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 기준, 절차 및 방법 등)</b>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비공개 승인 신청 또는 연장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00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⑧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p> <p>2. 제1항,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받은 화학물질이 제1항 단서에 따른 화학물질에 해당하게 된 경우</p> <p>⑨ 제5항에 따른 연장승인과 제8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한다.</p> <p>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거나 직업성 질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u>고용노동부령</u>으로</p>		<p>하여야 한다.</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의 범위 내에서 통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p>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19조제2항에 따른 비공개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 00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7-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제3항의 경우 제7-1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말한다)에 따른 자료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정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제1항에 따라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근로자를 진료하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li> <li>2.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전문기관</li> <li>3. 산업보건의</li> <li>4. 근로자대표</li> <li>5. 제165조제2항제38호에 따라 제141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疫學調査) 실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li> <li>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에 따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li> </ol>		<p>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 여부 결정에 필요한 화학물질 명칭·함유량의 대체 필요성, 대체자료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기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적정성에 대한 승인기준 등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p> <p>⑦ 제6항에 따라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 승인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된 대체자료를 연계</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혼합하는 방법이 아닌 화학적 조성(組成)을 변경하는 등 새로운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의 승인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관련 내용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p> <p><b>제7-22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b> ① 제7-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비공개 승인 결과를 통보 받은 신청인은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00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7-20조제5항에서 정</p>	<p>* 제3항 '준용'을 수정</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한 승인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 00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p> <p><b>제7-23조(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b></p> <p>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2조제8항에 따라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별지 00호의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취소 결정을 통지받은 자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기재하는 등 그 결과를 반영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변경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취소결정을 통지받은</p>	<p>* 연장승인의 취소도 해당되므로 추가</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자는 제2항의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하여 법 제110조제3항, 제1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출 및 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b>제7-24조(대체자료 정보의 제공 요구)</b>                      법 제11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12조제10항제2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관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직업성 질환 등 중대한 건강상의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li> <li>2. 법 제112조제10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로 인하여 발생한 직업성 질환에 대한 근로자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li> </ol>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제113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b> ① 국외제조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li> <li>제1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확인서류의 제출</li> <li>제112조제1항에 따른 대체자료 기재 승인,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승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li> </ol>		<p>3. 법 제112호제10항제4호에서 제6호 까지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관(제6호의 경우 위원회를 말한다)이 근로자에게 발생한 직업성 질환의 원인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p> <p><b>제7-25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b> ① 법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한민국 국민</li> <li>대한민국 안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를 말한다)를 가진 자</li> </ol> <p>②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00호서식의 선임서 또는 해임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li> </ol>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물질안전보건자료료를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제조자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및 제공 방법·내용, 제3항에 따른 신고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한다.</p>		<p>2. 선임계약서 사본 등 선임 또는 해임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p> <p>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p> <p>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00호서식의 신고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p> <p>⑤ 제2항에 따른 국외제조자 또는 그에 의하여 선임된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수입자에게 제4항에 따른 신고증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p> <p>⑥ 제2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제11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그 결과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수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b>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공정별로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b>제7-26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 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b> ① 법 제114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전산장비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장비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경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li> <li>2.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li> <li>3.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li> </ol>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작업 또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작업에 대하여는 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으로 대신하여 게시하거나 갖추어 둘</p>	<p>* 제2항 단서 신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 자료의 게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p> <p><b>제7-27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b> ① 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품명</li> <li>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li> <li>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li> <li>4. 적절한 보호구</li> <li>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li> </ol> <p>②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내용을 참고하여야 한다.</p> <p>③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은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b>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b>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수 있다.</p> <p><b>제7-28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b> ① 법 제 114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별표 8의2에 해당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li> <li>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li> <li>3.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li> </ol> <p>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하는 경우에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그룹별로 분</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b>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②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p>		<p>류하여 교육할 수 있다.</p> <p>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p> <p><b>제7-29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b></p> <p>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 또는 이를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사업주는 법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고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단위로 경고표지를 작성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li> <li>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용기에 관한</li> </ol>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표시</p> <p>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른 용기 등의 표시</p> <p>4.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 규칙」 제6조제1항 및 같은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표시(같은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표시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해당한다)</p> <p>5.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9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포장물의 표기(수입물품에 대한 표기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해당한다)</p> <p>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고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가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명칭 : 제품명</li> <li>2. 그림문자 :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li> <li>3. 신호어 : 유해·위험의 심각성 정도에</li> </ol>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p> <p>4. 유해·위험 문구 :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을 알리는 문구</p> <p>5. 예방조치 문구 :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p> <p>6. 공급자 정보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물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고표지의 규격,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그 밖의 경고표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④ 법 제115조제2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할 수 있다.</p>		<p>공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물질을 담은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를 한 경우</p> <p>2. 근로자가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용기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옮겨 담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p> <p>제7-30조(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자료의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으로 하여금 법 제116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에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공단은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117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p>	<p>제7-4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p>	<p>제7-31조(제조 등의 금지의 제외요건)</p>	<p>* 시행령 제2항 신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제조등금지물질”이라 한다)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건강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li> <li>2. 제105조제1항 따라 유해성·위험성이 평가된 유해인자나 제109조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이 조사된 화학물질 중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li> </ol>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연구 또는 검사 목적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등금지물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조·수입 또는 사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li> <li>2.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li> </ol>	<p>질) ① 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황린(黃燐) 성냥</li> <li>2. 백연을 함유한 페인트(함유된 용량의 비율이 2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li> <li>3. 폴리클로리네이티드테페닐(PCT)</li> <li>4. 4-니트로디페닐과 그 염</li> <li>5.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및 트레모라이트석면</li> <li>6. 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li> <li>7. 백석면, 청석면 및 갈석면</li> <li>8. 벤젠을 함유하는 고무풀(함유된 용량의 비율이 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li> <li>9.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li> <li>10.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li> </ol>	<p>영 제7-4조제2항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은 제조·사용설비 등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및 제499조부터 제5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구의 관리, 시설·설비기준 및 성능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한다.</p> <p><b>제7-32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사용승인 신청 등)</b> ① 법 제1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조등금지물질의 제조·수입 또는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험·연구계획서(제조·수입·사용의 목적·양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li> </ol>	<p>시행령에 따른 시행규칙 신설</p> <p>*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8조제4항 및 제6항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에 관한 것이고 내용이 단순히 제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정도의 수준인 점에서 굳이 준용을 할 필요도 없고, 제출</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서에 따른 금지물질의 판매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판매 허가를 받은 자나 제1호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조등금지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p>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호에 따른 승인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 절차, 승인 취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p>11.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p> <p>② 제1항제10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법 제11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인없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준수하여 해당 물질의 제조·수입 또는 사용을 하여야 한다.</p>	<p>여야 한다)</p> <p>2. 산업보건 관련 조치를 위한 시설·장치의 명칭·구조·성능 등에 관한 서류</p> <p>3. 해당 시험·연구실(작업장)의 전체 작업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취급량 및 공정별 종사 근로자 수에 관한 서류</p> <p>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사용 승인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불승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수입승인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였거나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에만 승인을 할 수 있다.</p> <p>1.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적정인지 여부</p> <p>2. 제조·사용설비 등이 안전보건규칙 제33조 및 제499조부터 제511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p>	<p>기관이 지방관서의 장과 지방청장으로 서로 상이한 점 취소와 관련된 조문을 명시해주어야 한다는 점 등의 이유로 해당 조문을 준용한다는 현행 조문은 적절하지 않음</p> <p>* 준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단서 규정 필요.</p> <p>“다만, 이 경우 제0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하고 ‘지정서’는 ‘등록증’으로 한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제118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b> ① 제1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한 물질 등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허가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p>	<p><b>제7-5조(허가대상 유해물질)</b>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이하 “허가대상물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li> <li>2.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li> <li>3. 크롬산 아연</li> <li>4.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li> </ol>	<p>3. 수입하려는 물질이 사용승인을 받은 물질과 같은지 여부, 사용승인 받은 양을 초과하는지 여부, 그 밖에 사용승인신청 내용과 적합한지 여부(수입승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서를 분실하거나 승인서가 손상된 때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업무를 폐지하거나 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승인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p> <p><b>제7-33조(제조 등 허가의 신청 및 심사)</b> ① 법 제118조제1항과 영 제7-5조에 따라 영 제7-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해물질(이하 “허가대상물질”이라 한다)의 제조허가 또는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제조·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도 또한 같다.</p> <p>② 허가대상물질의 제조·사용설비, 작업방법, 그 밖의 허가기준은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대상물질제조·사용자”라 한다)는 그 제조·사용설비를 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으로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하여야 한다.</p> <p>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허가대상물질제조·사용자의 제조·사용설비 또는 작업방법이 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사용설비를 수리·개조 또는 이전하도록 하거나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으로 그 물질을 제조·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⑤ 고용노동부장관은 허가대상물질제조·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p>	<p>5. 디아니시딘과 그 염</p> <p>6. 베릴륨</p> <p>7.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p> <p>8. 크롬광(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9. 휘발성 콜타르피치</p> <p>10. 황화니켈류(<u>황화니켈 및 아황화니켈</u>)</p> <p>11. 염화비닐</p> <p>12. 벤조트리클로리드</p> <p>13.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p> <p>14. 제12호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p> <p>15.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유해물질</p>	<p>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사업계획서(제조·수입·사용의 목적·양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2. 산업보건 관련 조치를 위한 시설·장치의 명칭·구조·성능 등에 관한 서류</p> <p>3. 해당 사업장의 전체 작업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취급량 및 공정별 종사 근로자 수에 관한 서류</p> <p>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조·사용허가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불허가 사실을 알려야 한다.</p> <p>1.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p> <p>2. 제조·사용 설비 등이 안전보건규칙 제33조, 제35조제1항(같은 규칙 별표 2 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li> <li>2. 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li> <li>3. 제3항을 위반한 경우</li> <li>4.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li> <li>5. 자체검사 결과 이상을 발견하고도 즉시 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li> <li>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한다.</li> </ol>	<p><b>제7-6조(유해물질의 제조 등 허가신청)</b>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제7-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대상물질의 제조·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물질의 제조·사용</p>	<p>로 한정한다) 및 같은 규칙 제453조부터 제486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조·사용허가신청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검토 등을 요청할 수 있다.</li> <li>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li> <li>⑤ 허가대상물질의 제조·사용허가증의 재발급, 허가증의 반납에 관하여는 제7-31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li> </ol> <p><b>제7-34조(허가 취소 등의 통보)</b>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118조제5항에 따라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을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b>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b></p> <p><b>제119조(석면조사)</b> 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건축물·설비소유주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일반석면조사”라 한다)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li> <li>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li> </ol> <p>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 중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은 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p>	<p>허가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b>제7-7조(기관석면조사 대상)</b> ① 법 제11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설비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축물(제2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li> <li>2. 주택(「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li> <li>3. 설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li> </ol>	<p>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b>제1절의2 석면조사 등</b></p> <p><b>제7-35조(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 절차)</b> ① 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영 제7-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석면조사의 생략 대상 건축물등에 대하여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7-7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 또는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음을 표시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1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석면조사의</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을 조사(이하 “기관석면조사”라 한다)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p> <p>1. 제1항 각 호의 사항</p> <p>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p> <p>③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이 「석면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p> <p>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이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1. 해당 건축물·설비소유주등에 대한</p>	<p>(물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p> <p>가. 단열재</p> <p>나. 보온재</p> <p>다. 분무재</p> <p>라. 내화피복재</p> <p>마. 개스킷(Gasket)</p> <p>바. 패킹(Packing)재</p> <p>사. 실링(Sealing)재</p> <p>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재</p> <p>4.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 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p> <p>② 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단서에서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p>	<p>생략 등 확인신청서에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조사를 하였음을 표시하고 그 석면조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면 이를 확인한 후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공단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의 이행 명령</p> <p>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이행 명령의 결과를 보고받을 때까지의 작업중지 명령</p> <p>⑤ 기관석면조사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한다.</p>	<p>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해체 부분에 사용된 자재가 설계도서, 자재 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2.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해체 부분에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b>제7-36조(석면조사방법 등) ①</b> 법 제 119조제5항에 따른 석면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건축도면, 설비제작도면 또는 사용 자재의 이력 등을 통하여 석면 함유 여부에 대한 예비조사를 할 것</p> <p>2. 건축물이나 설비의 해체·제거할 자재 등에 대하여 성질과 상태가 다른 부분들을 각각 구분할 것</p> <p>3. 시료채취는 제2호에 따라 구분된 부분들 각각에 대하여 그 크기를 고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제120조(석면조사기관) ① 석면조사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p>	<p>제7-8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대기환경</p>	<p>하여 채취 수를 달리하여 조사를 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구분된 부분들 각각에서 크기를 고려하여 1개만 고형시료를 채취·분석하는 경우에는 그 1개의 결과를 기준으로 해당 부분의 석면 함유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고형시료를 채취·분석하는 경우에는 석면함유율이 가장 높은 결과를 기준으로 해당 부분의 석면 함유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방법 및 제2항에 따른 판정의 구체적인 사항, 크기별 시료채취 수, 석면조사 결과서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7-37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요건 등) 영 제7-8조제2항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별표 10의3과 같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관석면조사의 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을 확인하고, 석면조사기관을 지도하거나 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석면조사 능력의 확인,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 능력의 확인 결과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한다.</p> <p>④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한다.</p> <p>⑤ 석면조사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석면조사기관”으로 본다.</p>	<p>기사 등 석면조사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채취펌프, 편광현미경 등 석면조사를 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모두 갖추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 능력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li> <li>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li> <li>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li> <li>4. 석면조사 업무를 하려는 법인</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한다.</p> <p><b>제7-9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신청 등)</b> ①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고용</p>	<p><b>제7-38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신청 등)</b>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조사기관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석면조사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조사기관 변경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4호서식의 석면조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관</li> <li>2. 정관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li> <li>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li> <li>4. 별표 10의3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li> <li>5.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li> <li>6. 최근 1년 이내의 석면조사 능력 평가의 적합판정서</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발급,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u>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u>의 규정을 준용한다.</p> <p><b>제7-39조(석면조사기관의 평가 등) ①</b>                      공단이 법 제121조제3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li> <li>2. 석면조사, 석면농도측정 및 시료분석의 신뢰도 등을 포함한 업무 수행능력</li> <li>3. 석면조사 및 석면농도측정 대상 사</li> </ol>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제7-10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b> 법 제120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당한 사유 없이 석면조사 업무를 거부한 경우</li> <li>2. 법 제123조제2항의 기관석면조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li> <li>3. 법 제124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li> <li>4. 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li> </ol>	<p>업장의 만족도</p> <p>②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석면조사기관”으로 본다.</p> <p><b>제7-40조(석면조사방법 등)</b> ① 법 제120조제4항에 따른 석면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축도면, 설비제작도면 또는 사용자재의 이력 등을 통하여 석면 함유 여부에 대한 예비조사를 할 것</li> <li>2. 건축물이나 설비의 해체·제거할 자재 등에 대하여 성질과 상태가 다른 부분들을 각각 구분할 것</li> <li>3. 시료채취는 제2호에 따라 구분된 부분들 각각에 대하여 그 크기를 고려하여 채취 수를 달리하여 조사를 할 것</li> </ol> <p>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구분된 부분들 각각에서 크기를 고려하여 1개만 고품</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제121조(석면해체·제거업의 등록 등)</b></p> <p>① 석면해체·제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의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을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p>	<p>부령으로 정하는 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p> <p>5. 제7-8조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p> <p>6. 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석면농도를 측정하게 한 경우</p> <p>7. 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석면농도 측정 방법을 위반한 경우</p> <p>8.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 업무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p> <p><b>제7-11조(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요건)</b> ①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등 석면해체·제거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음압기(陰壓機)·위생설비 등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자</p>	<p>시료를 채취·분석하는 경우에는 그 1개의 결과를 기준으로 해당 부분의 석면 함유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고품시료를 채취·분석하는 경우에는 석면함유율이 가장 높은 결과를 기준으로 해당 부분의 석면 함유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조사방법 및 제2항에 따른 판정의 구체적인 사항, 크기별 시료채취 수, 석면조사 결과서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b>제7-41조(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b> 영 제7-11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10의4와 같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한다.</p> <p>④ 석면해체·제거업자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석면해체·제거업자”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p>	<p>의 구체적인 등록 요건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p><b>제7-12조(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신청 등)</b> ① 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석면해체·제거업자가 등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 변경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b>제7-42조(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신청 등)</b> ① 영 제7-12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별표 10의4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p>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p> <p>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 별표 10의4의 기준에 적합하면 그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5서</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식의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b>제7-43조(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신청 등)</b> ① 영 제7-12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별표 10의4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li>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li> </ol> <p>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 별표 10의4의 기준에 적합하면 그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5서</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제7-13조(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p>	<p>식의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③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한 등록증의 재발급, 등록받은 사항의 변경 및 등록증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6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b>제7-44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등)</b> ① 법 제12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의 준수 여부</li> <li>2. 장비의 성능</li> <li>3.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li> </ol> <p>②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의 평가항목, 평가등급 등 평가방법 및 공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제122조(석면의 해체·제거) ①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이나 설비에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p>	<p>취소 등의 사유) 법 제121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2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벌금형의 선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li> <li>2. 법 제122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li> <li>3. 법 제122조제3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 또는 서류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li> <li>4.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 업무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li> </ol> <p>제7-14조(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제거 대상) ① 법 제12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은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이 인력·장비 등에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제거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해서는 아니된다.</p> <p>③ 석면해체·제거업자(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을 말한다. 이하 제24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p> <p>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p>	<p>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철거·해체하려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li> <li>2.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li> <li>3.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제30조의3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분무재 및 내화피복재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li> <li>4.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서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li> </ol>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p> <p>⑤ 제3항에 따른 신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한다.</p>	<p>② 법 제122조제1항 단서에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스스로 하려는 자가 제7-11조에서 정한 등록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하여 법 제12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p>	<p><b>제7-45조(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절차 등)</b> ① 법 제122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 시작 7일 전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7호의7서식의</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신고서를 석면해체·제거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았을 때에 그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8서식의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변경)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책임자 또는 작업근로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변경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르거나 첨부서류가 누락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제123조(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b> ①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p> <p>② 근로자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가 제1항의 작업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한 조치로서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b>제124조(석면농도기준의 준수)</b> ①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제122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가</p>		<p>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p> <p><b>제7-46조(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기준)</b> 법 제124조제1항에서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를 말한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되도록 하고, 그 증명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한다.</p> <p>③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은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에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제1항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해서는 아니 된다.</p>		<p><b>제7-47조(석면농도측정 결과의 제출)</b>                      석면해체·제거업자는 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별지 제17호의9서식의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에 해당 기관이 작성한 별지 제17호의10서식의 석면농도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증명자료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p> <p><b>제7-48조(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b> 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li> <li>2. 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지정측정</li> </ol>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p>		<p>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p> <p><b>제7-49조(석면농도의 측정방법) ①</b> 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석면농도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내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 후 공기가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할 것</li> <li>2. 작업장 내에 침전된 분진을 비산(飛散)시킨 후 측정할 것</li> <li>3. 시료채취기를 작업이 이루어진 장소에 고정하여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을 채취하는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측정할 것</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측정방법의 구체적인 사항, 그 밖의 시료채취 수, 분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5편 근로자 보건관리 제1장 작업환경의 측정</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제125조(작업환경측정)</b>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사업주(제2항에 따른 도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7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제126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작업환경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 중 시료의 분석만을 위탁할 수 있다.</p>		<p><b>제8-1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b> ① <u>법 제125조제1항</u>에서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u>별표 11의5</u>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u>에 따른 임시 작업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제외한다)</li> <li>2. <u>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u>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작업장(그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li> <li>3. <u>안전보건규칙 제605조제2호</u>에 따른 분진작업의 적용 제외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li> <li>4. 그 밖에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li> </ol>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④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 의 근로자대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 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p> <p>⑤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 록하여 보존하고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 라 사업주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위 탁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 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u>고용노동부령</u>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 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 정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p> <p>⑥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 당 작업장의 근로자(관계수급인 및 관 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127조 및 제175조제5항제15호에 서 같다)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 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p>		<p>자의 노출 수준이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장</p> <p>② 보건진단기관이 보건진단을 실시 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작업장의 유해인자 전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업환경 을 측정하였을 때에는 사업주는 <u>법 제 125조</u>에 따라 해당 측정주기에 실시하 여야 할 해당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 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b>제8-2조(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b> 법 <u>제125조제1항</u>에서 “고용노동부령으 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란 그 사업장 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p> <p><b>제8-3조(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b> ① 사업주는 <u>법 제125조제1항</u>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u>별지 제</u></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한다.</p> <p>⑦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 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한 기관에게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p> <p>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한다.</p>		<p>20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u>별지 제21호서식</u>의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u>제8-4조제1항 제3호</u>에 따른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분석 및 평가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이 어려운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면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② 법 <u>제125조제5항 단서</u>에 따라 지정 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분석 및 평가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는</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것이 어려운 지정측정기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면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3항제125조제6항에 따라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제8-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 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내용, 방식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b>제8-4조(작업환경측정방법)</b> ① 법 제125조제8항에 따라 사업주가 법 제125</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이 경우 근로자대표 또는 해당 작업공정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참여시켜야 한다.</li> <li>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li> <li>3. 모든 측정은 개인시료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인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이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21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할 것</li> <li>4.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지정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공정별 작업내용, 화학물질의 사용실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작업환경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li> </ol>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② 제1항에 따른 측정방법 외에 유해인자별 세父側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p> <p><b>제8-5조(작업환경측정 횟수)</b> ① 법 제125조제8항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8-1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그 후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그 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별표 11의5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만 해당한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li> <li>2. 별표 11의5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li> </ol>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적 인자(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은 제외한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최근 1년간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1년에 1회 이상 할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dB) 미만인 경우</li> <li>2.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li> </ol>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제126조(작업환경측정기관)</b> ① 작업환경측정기관이 되려는 자는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분석 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분석능력을 확인하고, 작업환경측정기관을 지도하거나 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측정·분석능력의 확인,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교육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환경측정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제2항에 따른 측정·분석능력의 확인 결과를 포함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고용노</u></p>	<p><b>제8-1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요건)</b> 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126조제4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별로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p>	<p><b>제8-6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b> 영 제8-1조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유형별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은 <u>별표 12</u>와 같다.</p> <p><b>제8-7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평가 등)</b>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126조제3항에 따라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 수준을 평가하려는 경우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작업환경측정 및 시료분석의 능력</li> <li>2. 측정 결과의 신뢰도</li> <li>3. 시설·장비의 성능</li> <li>4.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의 정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li> </ol> <p>② 지정측정기관의 평가방법,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b>제8-8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b></p>	<p>- 규칙 제8-8조제2항</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동부령으로 정한다.</p> <p>④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 업무 범위 및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한다.</p> <p>⑤ 작업환경측정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본다.</p>		<p>등) ① 법 제126조제4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 및 유형별 지정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장 위탁측정기관: 위탁받은 사업장</li> <li>2. 사업장 자체측정기관: 그 사업장(계열회사 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그 사업장 내에서 사업의 일부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사업장</li> </ol> <p>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의 측정 대상인 사업장의 부속기관으로 한정한다.</p> <p><b>제8-9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신청 등)</b> ① 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분석</p>	<p>은 현행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의 내용임</p> <p>- 현행 법에서는 지정측정기관의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입법체계를 맞춰 부령으로 이동함</p> <p>- 개정안에 따라 지정신청에 관하여 부령으로 위임되었으므로 현행 시행령 제32조의5와 시</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능력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후 <u>별지 제4호</u>서식의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측정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부속기관의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관</li> <li>2. 정관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li> <li>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li> <li>4. <u>별표 12</u>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li> <li>5.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li> </ol>	<p>행규칙 제96조를 통합하여 규칙 제 8-9조로 규정함</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p> <p>6. 최초 1년간의 측정사업계획서(사업장 부속기관의 경우에는 측정대상 사업장의 명단 및 최종 작업환경측정 결과서 사본)</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u>전자정부법</u>」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발급,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u>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u>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④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수, 담당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제32조의5(지정측정기관의 지정신청 등)</b> ①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제132조 제1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 측정 분석 능력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측정기관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사항 변경에 관하여는 제15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p>	<p><b>제96조(지정측정기관의 지정 절차 등)</b></p> <p>① 영 제32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자 제4호서식의 지정측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측정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부속기관의 경우에는 측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관</li> <li>2. 정관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li> <li>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li> <li>4. 별표 12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li> </ol>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5.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p> <p>6. 최초 1년간의 측정사업계획서(사업장 부속기관의 경우에는 측정대상 사업장의 명단 및 최종 작업환경측정 결과서 사본)</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u>전자정부법</u>」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지정측정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발급,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④ 지정측정기관의 수, 담당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제8-2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126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환경측정업무를 거부한 경우</li> <li>2. 작업환경측정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li> <li>3. 법 제125조제8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환경 측정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li> <li>4.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li> <li>5. 법 제126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분석 능력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li> <li>6.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li> </ol>	<p>이 정하여 고시한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제127조(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b>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하여 그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뢰성을 평가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뢰성 평가의 방법·대상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한다.</p>	<p>위반한 경우</p>	<p><b>제8-10조(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의 대상 등)</b> ① 공단은 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7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이하 “신뢰성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 미만인데도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한 경우</li> <li>2. 공정설비, 작업방법 또는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 작업 조건의 변화가 없는데도 유해인자 노출수준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li> <li>3. 제93조의3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 등 신뢰성평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li> </ol> <p>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신뢰성평가를 할 때에는 법 제125조제5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법 제164조</p>	<p>- 법 제127조제3항에서 위임한 신뢰성평가의 방법은 부령에 없음</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제128조(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b>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장의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작업환경관리방법 등에 관한 전문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인자별·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유해인자별·업종별</p>		<p>제4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작업공정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사업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p> <p><b>제97조의3(유해인자별·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b>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장의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작업환경관리방법 등에 관한 전문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해인자별·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 개정안 제128조는 고용노동부령 위임을 삭제하고 고시하도록 개정</p> <p>- 현행 규칙 제97조의3 삭제</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b>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b></p> <p><b>제129조(일반건강진단)</b>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p> <p>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항목·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유해인자별·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고용노동부장관</u>이 정하여 고시한다.</p> <p><b>제2장 근로자 건강진단</b></p> <p><b>제8-1조(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협력)</b>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및 의학적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② 사업주는 건강진단기관이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위해 근로자의 작업장소, 근로시간, 작업내용, 작업방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정보, 건강진단 결과, 작업환경측정 결과, 화학물질 사용 실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건강진단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p> <p><b>제8-2조(일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b></p>	<p>- 98의2②</p> <p>- 현행 시행규칙 제98조의2제2항은 위임은 없으나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선언적 규정으로, 효력이 유지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명을 변경하여 유지함</p> <p>- 99① 단서</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법 제129조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li> <li>2. 「항공법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li> <li>3.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li> <li>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li> <li>5.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li> <li>6. 그 밖에 제8-4조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li> </ol> <p><b>제8-3조(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①</b>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p>	<p>- 항공법 삭제</p> <p>- 99①</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제9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또는 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는 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분명히 밝히는 등 일반건강진단 또는 특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b>제8-4조(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①</b>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타각증상(시진·촉진·청진 및 문진)</li> <li>2. 혈압·혈당·요당·요단백 및 빈혈검</li> </ol>	<p>- 99조의4</p> <p>- 제99조의4는 위임은 없으나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선언적 규정으로, 효력이 유지가 필요하여 조명을 변경하여 유지</p> <p>- 100①</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사</p> <p>3. 체중·시력 및 청력</p> <p>4. 흉부방사선 촬영</p> <p>5. 혈청 자·오·타 및 자·파·타, 감마 자·타·파—AST(SGOT) 및 ALT (SGPT), γ-GTP 및 총콜레스테롤</p> <p>② 제1항에 따른 제1차 검사항목 중 혈당·총콜레스테롤 및 감마 자·타·파 γ-GTP 검사는 <u>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근로자</u>에 대하여 실시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질병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u>제2차 건강진단의 범위, 검사항목, 방법 및 시기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u>한다.</p> <p>④ 법 제129조제1항 단서 및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항목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한정하여 이 규칙에 따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p> <p>⑤ 일반건강진단의 <u>검사방법, 실시방</u></p>	<p>- 간접촬영은 더 이상 사용하지 검사 방법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p> <p>- 100②</p> <p>- 100③</p> <p>- 99⑥</p> <p>- 100⑨</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b>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u>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u>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p> <p>1. <u>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u>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p>		<p><u>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u></p> <p><b>제8-5(일반건강진단 결과의 제출)</b>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22호(1)서식의 일반건강진단 결과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b>제8-6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b> ①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별표 12의2와 같다.</p> <p><b>제8-7조(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b> 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li> <li>2.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li> </ol>	<p>- 105⑥</p> <p>- 98-2</p> <p>- 99② 단서</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2. 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p> <p>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u>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③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 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 의하는 등 <u>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u></p>		<p>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 단(광물성 분진만 해당한다)</p> <p>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 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방 사선만 해당한다)</p> <p>4.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3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의 검 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 진단(해당하는 유해인자만 해당한 다)</p> <p><b>제8-8조(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b> ① 사업주는 법 제130조제 1항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 서는 별표 12의3에서 특수건강진단 대 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 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또 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p>	<p>- 99②</p> <p>- 99조의2</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이하 “수시 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④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u>시기·주기·항목·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u></p>		<p>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관련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하여야 한다.</p> <p>1. 작업환경을 측정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p> <p>2.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신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다만,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신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로 부터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자문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3. 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신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p> <p>③ 사업주는 법 제1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업병</p>	<p>- 99③</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유소견자 발생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를 진단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④ 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분명히 밝히는 등 특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b>제8-9조(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b> 법 제130조제2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p> <p>1.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근로자로서 건강진단 결과를 적은 서류(이하 “건강진단개인표”라 한다)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p>	<p>- 99조의4</p> <p>- 제99조의4는 위임은 없으나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선언적 규정으로, 효력이 유지가 필요하여 조명을 변경하여 유지</p> <p>- 99④ 단서</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자                      가. 배치전건강진단                      나.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다.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 및 제2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p> <p>2.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근로자</p> <p><b>제8-10조(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시기)</b>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려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p>	<p>- 99④</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제8-11조(수시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등) ①</b> 법 제13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애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가 직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에게 자문을 받아 수시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자문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주에게 수시건강진단을 건의한 근로자</li> <li>2. 해당 근로자나 근로자 대표 또는 법 제23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수시건강진단을 요청한 근로자</li> </ol>	<p>- 고시 상향 이동</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② 사업주는 제1항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③ <u>수시건강진단의 실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u></p> <p><b>제8-12조(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b> ① 법 제130조제4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제1차 검사항목과 제2차 검사항목으로 구분하며, 각 세부 검사항목은 별표 13과 같다.</p> <p>② 제1항에 따른 제1차 검사항목은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실시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제2차 검사항목은 제1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u>고용노동부장관</u></p>	<p>- 고시 사항 이동</p> <p>- 신설</p> <p>- 100④</p> <p>- 100⑤</p> <p>- 100⑥</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 <u>고용노동부령</u></p>		<p>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진단 담당 의사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 병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차 검사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제1차 검사항목을 검사할 때에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④ 법 제129조제1항 단서 및 법 제1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항목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한정하여 이 규칙에 따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p> <p>⑤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u>검사방법, 실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u></p> <p>제8-13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① 법 제131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p>	<p>- 99⑥</p> <p>- 100⑨</p> <p>- 98-5</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이하 “임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의 실시나 작업전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② 임시건강진단의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한다.</p>		<p>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타각증상이 발생한 경우</li> <li>2.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li> <li>3.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li> </ol> <p>② 임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별표 13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중 전부 또는 일부와 건강진단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항목으로 한다.</p> <p>③ 임시건강진단의 <u>검사방법, 실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u></p>	<p>- 100⑦</p> <p>- 100⑨</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b> ① 사업주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p> <p>②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직접 또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p>		<p><b>제8-14조(건강진단비용 등)</b> ① 법 제129조제3항, 법 제130조제5항, 법 제131조제2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p>	<p>- 101</p>
		<p>② 건강진단기관은 사업주가 법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출장검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장검진을 할 수 있다.</p>	<p>- 100⑧</p>
		<p><b>제8-15조(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b> ① 사업주는 제8-16조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132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p>	<p>- 105④</p> <p>- 105조의2</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에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p> <p>③ 사업주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p> <p>④ 사업주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u>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p> <p>⑤ 제4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u>고용노동부령으로</u></p>		<p>에 따른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u>고시</u>할 수 있다.</p> <p>③ 법 제132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법130조제1항 및 제3항, 제131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의 결과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 금지 및 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사업주를 말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근로 금지 및 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또는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를 실시한 결과를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00호 서식의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에 건강진단결과표, 해당 조치의 실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실시 계획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정하는 사업주는 그 조치 결과를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b>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b> 근로자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b>제134조(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b> ① 건강진단기관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그 결과</u>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u>고용노동부장관</u>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다.</p> <p>⑤ 그 밖에 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u>고용노동부 장관</u>이 정하여 <u>고시</u>한다.</p> <p><b>제8-16조(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b></p> <p>①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u>고용노동부장관</u>이 정하는 <u>건강진단개인표</u>에 기록하고, 건강진단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②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p>	<p>- 105①</p> <p>- 105②</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② 제1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기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그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그 결과</u>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한 결과 질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업무수행의 적합성 여부(특수건강진단기관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의 의사인 보건관리자에게 이를 설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1.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22호(1)서식의 일반건강진단 결과표</p> <p>2.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22호(2)서식의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 결과표</p> <p>⑤ 특수건강진단기관은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p>	<p>(위임 : 132④)</p> <p>- 105③</p> <p>- 105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제135조(특수건강진단기관)</b>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또는 수시건강진단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이하 “특수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아야 한다.</p>	<p><b>제8-1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b> ① 법 제135조제2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으로서 별표 14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p>	<p>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를 <u>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u>에 따라 공단에 송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 제1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기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22호(1)서식의 일반건강진단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b>제8-17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b>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p>	<p>- (시행령) 102①·② - 부칙 - (시행규칙) 103①</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②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u></p>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분석 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분석 능력을 확인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지도하거나 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u>진단·분석능력의 확인,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p> <p>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특수건강진단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제3항에 따른 진단·분석능력의 확인 결과를 포함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u>평가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u></p> <p>⑤ 특수건강진단기관의 <u>지정 신청 절차</u></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 의료기관을 별표 12의2제4호의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지정 신청 당시 해당 지역에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을 것 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속하는 시는 제외한다) 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p> <p>2. 일반건강검진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p>	<p>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별표 14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의료면허증 또는 전문의자격증은 제외한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p> <p>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p> <p>3. 최초 1년간 건강진단사업계획서</p> <p>4. 법 제135조제4항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 능력 평가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건강진단·분석 능력 평가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건강진단기관과 생물학적 노출지표 분석의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그 계약서)</p> <p>② 영 제8-1조제2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p>	<p>- 103②</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차,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p>⑥ 특수건강진단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본다.</p>	<p>3. 해당 일반건강검진기관에 「의료법」에 따른 의사(특수건강진단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의사를 말한다) 및 간호사가 각각 1명 이상 있을 것</p> <p>[<u>고용노동부령 제197호(2017.10.17.) 부칙 제2조의 규정</u>에 의하여 이 조의 제2항은 2021년 1월 17일까지 유효함]</p>	<p>별지 제4호서식의 특수건강진단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반건강검진기관 지정서 및 일반건강검진기관으로서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li> <li>2. 영 제8-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의료면허증은 제외한다)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li> <li>3. 소속 의사가 특수건강진단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li> <li>4. 최초 1년간 건강진단사업계획서</li> </ol>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p>	<p>- 103③</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 의료면허증 또는 전문의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아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실시 연 인원이 1만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⑤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발급,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⑥ 특수건강진단기관의 <u>지정방법, 관할지역, 그 밖에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u>한다.</p> <p>[고용노동부령 제197호(2017.10.17.)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제2항은 2021년 1월 17일까지 유효]</p>	<p>- 103④</p> <p>- 103⑤</p> <p>- 103⑥</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제8-2조(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13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건강진단 시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한 검사항목을 빠뜨리거나 검사방법 및 실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p>	<p>제8-18조(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등)</p> <p>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135조제4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강진단·분석 능력</li> <li>2. 건강진단 결과 및 판정의 신뢰도</li> <li>3. 시설·장비의 성능</li> <li>4.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li> </ol> <p>② 특수건강진단기관의 <u>평가방법</u>, <u>공표방법</u>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고용노동부장관</u>이 정하여 고시한다.</p>	<p>- 106①</p> <p>- 106②</p> <p>- 시행령 37조의2</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제136조(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진단을 유인하거나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한 경우 3. 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 능력 평가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분석 능력의 확인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4. 건강진단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 개인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5. 무자격자 또는 고용노동부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가 건강진단을 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의 실시를 거부하거나 중단한 경우 7.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8-24조(유해인자별 특수검진 전문	- 현행 제103조의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문연구기관의 지정</b>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장의 유해인자에 관한 전문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b>제137조(건강관리카드)</b>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u>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직업병 조기발견 및 지속적</u></p>		<p><b>연구기관의 지정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 지원업무의 대행</b>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장의 유해인자에 관한 전문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해인자별 특수검진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6조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 등을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유해인자별 특수검진 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3장 건강관리카드</b></p> <p><b>제8-20조(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b> 법 제137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은 별표14의</p>	<p>제1항, 제3항은 법 제137조로 이동됨. 삭제</p> <p>- 제2항은 고용부 유지의견에 따라 위임 없으나 유지함</p> <p style="text-align: right;">- 108</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② 건강관리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강관리카드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재해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p> <p>③ 건강관리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그 건강관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p> <p>④ 건강관리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중 제1항에 따라 건강관리카드를 발급받은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u>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에 준하는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u></p> <p>⑤ <u>건강관리카드의 서식, 발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u></p>		<p>2와 같다.</p> <p><b>제8-21조(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건강진단)</b> ① 건강관리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은 근로자(이하 “카드소지자”라 한다)가 카드의 발급 대상 업무에서 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 또는 특수건강진단 기관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매년 (카드 발급 대상 업무에서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첫 해는 제외한다) 1회 받을 수 있다. 다만, 카드 발급 대상 업무에서 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카드의 발급 대상 업무와 같은 업무에 재취업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공단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는 근로자에게 교통비 및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③ 카드소지자는 건강진단을 받을 때에 해당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카드 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p>	<p>- 110조의2①</p> <p>- 110조의2②</p> <p>- 112①</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실시 결과를 카드소지자 및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p> <p>⑤ 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에 관하여는 제8-15조제1항을 준용한다.</p> <p>⑥ 카드소지자에 대한 <u>건강진단의 실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u>한다.</p> <p><b>제8-22조(건강관리카드의 서식)</b> 법 제 137조제5항에 따른 카드의 서식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p> <p><b>제8-23조(건강관리카드의 발급 절차)</b></p> <p>① 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 중인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공단에 카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p>	<p>- 112② 고시내용 상향</p> <p>- 112③</p> <p>- 112④</p> <p>- 110</p> <p>- 109①</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② 제1항에 따라 카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건강관리카드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표 14의2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사진 1장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발급신청을 받은 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카드발급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④ 사업주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근로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p>	<p>- 109②</p> <p>- 109③</p> <p>- 109④</p>
		<p><b>제8-24조(건강관리카드의 재발급 등)</b></p> <p>① 카드소지자가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카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23호서식의 건강관리카드 재발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p>	<p>- 114①</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p> <p>② 카드가 헐어 못쓰게 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카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③ 카드소지자는 카드를 재발급 받은 후 분실한 카드를 발견하면 즉시 공단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p> <p>④ 카드소지자가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건강관리카드 기재 내용 변경신청서에 해당 카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p> <p><b>제8-25조(건강관리카드의 반환)</b> 카드소지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카드소지자의 상속인 또는 법정 대리인은 지체 없이 해당 카드를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p> <p><b>제8-26조(건강진단의 권고)</b> 공단은 카드를 발급한 경우에는 카드소지자에게 건강진단을 받게 하거나 그 밖에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p>	<p>- 114②</p> <p>- 114③</p> <p>- 114④</p> <p>- 115</p> <p>- 111</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①</b>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u>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u>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p> <p><b>②</b>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고할 수 있다.</p> <p><b>제4장 질병자의 근로금지 등</b></p> <p><b>제8-27조(질병자의 근로금지) ①</b> 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del>법 제45조제1항에 따라</del> 근로를 금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2. 정신분열증 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li> <li>3.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li> <li>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li> </ol> <p><b>②</b>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p>	<p>- 116①</p> <p>- 116②</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b>제8-28조(질병자 등의 취업 제한) ①</b>                      사업주는 제99조에 따른 법 제129조부터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유기 화합물·금속류 등의 유해물질에 중독된 사람, 해당 유해물질에 중독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사람, 진폐의 소견이 있는 사람 또는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을 해당 유해물질 또는 방사선을 취급하거나 해당 유해물질의 분진·증기 또는 가스가 발산되는 업무 또는 해당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감압증이나 그 밖에 고기압에 의한</p>	<p>- 117①</p> <p>- 117②</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제139조(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 시간 제한 등)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p>	<p>제8-3조(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 시간 제한 등) ① <del>법 제46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제한되는</del> 작업은 법 제1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del>잠함(潛艦) 또는 잠수작업</del>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을 말한다.</p>	<p>장해 또는 그 후유증                  2. 결핵, 급성상기도감염, 진폐, 폐기종, 그 밖의 호흡기계의 질병                  3. 빈혈증, 심장판막증, 관상동맥경화증, 고혈압증, 그 밖의 혈액 또는 순환기계의 질병                  4. 정신신경증, 알코올중독, 신경통, 그 밖의 정신신경계의 질병                  5. 메니에르씨병, 중이염, 그 밖의 이관협착을 수반하는 귀 질환                  6. 관절염, 류마티스, 그 밖의 운동기계의 질병                  7. 천식, 비만증, 바세도우씨병, 그 밖에 알레르기성·내분비계·물질대사 또는 영양장해 등과 관련된 질병</p>	<p>- 32조의8①</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해서는 아니 된다.</p> <p>②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작업에서 잠함·잠수 작업시간, 가압·감압방법 등 해당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p>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위험작업에서 법 제23조와 제24조에 따른 유해·위험 예방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그 밖에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갱(坑) 내에서 하는 작업</li> <li>2.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li> <li>3.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li> <li>4. 라듐방사선이나 엑스선, 그 밖의 유해 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li> <li>5. 유리·흙·돌·광물의 먼지가 심하게</li> </ol>		<p>- 32조의8②</p> <p>- 32조의8③</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b></p> <p>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면허의 취득 또는 근로자의 기능</p>	<p>날리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p> <p>6.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p> <p>7. 착암기 등에 의하여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p> <p>8. 인력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p> <p>9. 납·수은·크롬·망간·카드뮴 등의 중금속 또는 이황화탄소·유기용제, 그 밖에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특정 화학물질의 먼지·증기 또는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p> <p><b>제8-6조(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b> 법 제14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5항제5호에서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 대한 교육을 거부한 경우</p> <p>2.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인하여 위탁받은 교육업무의 수</p>		<p>* 법 제145조제1항에서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작업’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음</p> <p>- 고용부 회의 결과 취업제한 규칙을 유지하기로 하였으</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습득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자격·면허·경험·기능,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한다.</p> <p>④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본다.</p> <p><b>제141조(역학조사)</b>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환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 그 밖에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사람이 요구할 때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역학조사에 참석하게</p>	<p>행에 차질을 가져오게 한 경우</p> <p>3.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p>	<p><b>제8-29조(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b> ① 공단은 법 제1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p> <p>1.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또는 법 제129조부터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만으로 직업성 질환에 걸렸는지 여부의 판단이 곤란한 근로자의 질병에 대하여 사업주·근로자대표·보건관리자(보건관리</p>	<p>므로 여기서는 부령으로 규정하지 않음</p> <p>- 107조의2①</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할 수 있다.</p> <p>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p> <p>③ 누구든지 제1항 후단에 따라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p> <p>④ 제1항 후단에 따라 역학조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역학조사 참석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p> <p>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정보,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p>		<p>전문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p> <p>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u>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u>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p> <p>3. 공단이 직업성 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8-31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p> <p>4. 그 밖에 직업성 질환에 걸렸는지 여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질병에 대하여 작업장 내 유해요인과의 연관성 규명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p> <p>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가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각각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p>	<p>- 107조의2②</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⑥ 역학조사의 방법·대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p>의 장이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b>제8-30조(역학조사에의 참석)</b> 법 제141조제1항에 따라 공단에 역학조사 참석을 요구할 수 있는 자 및 공단이 해당 역학조사에 참석시킬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8-2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역학조사: 해당 사업주 또는 근로자 대표</li> <li>2. 제8-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역학조사: 해당 질병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요양급여를 신청한 근로자, 동조 제5호의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li> </ol> <p><b>제8-31조(역학조사평가위원회)</b> ① 법 제141조제6항에 따라 공단은 역학조</p>	<p>- 107조의2③</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b>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b></p> <p><b>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b>                      ① 산업안전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지도                      2. 유해·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지도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보건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p>	<p><b>제9-1조(지도사의 직무)</b> ① 법 제142조 제1항제4호에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지도                      3.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② 법 제146조제2항제6호에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이란 다음 각</p>	<p>사 결과의 공정한 평가 및 그에 따른 근로자 건강보호방안 개발 등을 위하여 역학조사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u>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b>제3장 지도·감독 등</b></p>	<p>2. 법 제35조 → 제36조</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1.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2.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3. 근로자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지도                      4. 직업성 질병 진단(「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인 산업보건지도사만 해당한다) 및 예방 지도                      5. 산업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의 업무 영역별 종류 및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143조(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b>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 자</p>	<p>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지도                      3.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p> <p><b>제9-2조(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종류 등)</b> ① 법 제142조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건설안전 분야로 구분하고, 산업보건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직업환경의학·산업위생 분야로 구분한다.</p> <p>②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영역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 영역에서의 업무범위는 <u>별표 11</u>과 같다.</p> <p><b>제9-3조(자격시험의 일부 면제)</b> ① 법 제143조제2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p>	<p><b>제9-1조(시험의 일부 면제)</b> 영 제9-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p>	<p>2. 법 제35조 → 제36조</p> <p>- 현행 규칙 제136조의2는 영 제9-3조</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p> <p>②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산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자격의 보유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p>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 실시를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실시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 실시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⑤ 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다른 자격 보유자에 대한 시험 면제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u>으로 정한다.</p>	<p>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격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자격시험 면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공통필수 I 및 공통필수 II 과목</p> <p>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직무분야(건축 중 직무분야 및 토목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 기계 직무분야, 화학 직무분야, 전기·전자 직무분야(전기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의 기술사 자격 보유자: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p> <p>3.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공통필수 I 및 공통필수 II 과목</p> <p>4. 공학(건설안전·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의학(직업환경의학 분야 전공으</p>	<p>사람이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9-3조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1. 해당 자격증 또는 박사학위증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박사학위증의 경우에는 응시분야에 해당하는 박사학위 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p> <p>2. 경력증명서(영 제9-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하며, 박사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일 이후 산업안전·산업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분명히 적힌 것이어야 한다) 1부</p>	<p>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영 제9-3조제3항을 신설하여 위임근거를 갖추도록 함</p> <p><b>2. 중직무 → 중 직무</b></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로 한정한다), 보건학(산업위생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박사학위 소지자: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p> <p>5.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각각의 자격 또는 학위 취득 후 산업안전·산업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Ⅱ 과목</p> <p>6.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별표 12에 따른 공통필수 I 과목</p> <p>7.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다른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별표 12에 따른 공통필수 I 및 공통필수Ⅲ 과목</p> <p>8.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같은 지도사의 다른 분야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별표 12에 따른 공통필수 I, 공통필수Ⅱ 및 공통필수Ⅲ 과목</p> <p>② 제9-5조제2항에 따라 제1차 또는 제2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서는 다음 회의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합격한 차수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의 신청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p><b>제9-4조(자격시험 실시기관)</b> ① 법 제1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3조제3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의 실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공단으로 하여금 자격시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p> <p>③ 자격시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제9-5조(자격시험의 실시 등)</b> ① 법 제 143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p> <p>② 지도사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제1차 시험은 선택형, 제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 주관식 단답형을 추가할 수 있다.</p> <p>③ 지도사 자격시험 중 제1차 시험은 별표 12에 따른 공통필수 I, 공통필수 II 및 공통필수 III의 과목 및 범위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의 과목 및 범위로 한다.</p> <p>④ 지도사 자격시험 중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p> <p>⑤ 지도사 자격시험 중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 또는 면제자에 대해서만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p> <p>1. 전문지식과 응용능력</p>	<p><b>제9-2조(시험의 공고)</b>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도사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응시자격, 시험과목, 일시, 장소, 응시절차, 그 밖에 시험응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시 <u>90일</u> 전까지 <u>일간신문</u> 등에 <u>공고</u>하여야 한다.</p> <p><b>제9-3조(응시원서의 발급 등)</b> ① 영 제 9-5조제6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32호서식의 자격시험 응시자 명부에 해당 사항을 적고 응시자에게 별지 제31호서식 하단의 응시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 등이 미비된 경우에는 그 보완을 명하고,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p>	<p>“60일”→“90일”로 변경                  “일간신문에” →                  “일간신문 등에”</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2. 산업안전·보건제도에 관한 이해 및 인식 정도</p> <p>3. 상담·지도능력</p> <p>⑥ 지도사 자격시험의 공고, 응시 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한다.</p> <p><b>제9-6조(합격자 결정)</b> ① 법 제143조제5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의 필기시</p>	<p>③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법 제16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li> <li>2.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li> <li>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li> <li>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100분의 60</li> <li>5. 시험시행일 19일 전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li> </ol> <p><b>제9-4조(합격자의 공고)</b>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영 제9-6조에 따라 지도사</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제144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b>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한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p> <p><b>제145조(지도사의 등록)</b> ① 지도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지도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p>	<p>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p> <p>② 지도사 자격시험의 면접시험은 제 9-5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되, 10점 만점에 6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p>	<p>자격시험의 최종합격자가 결정되면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합격사실을 알려야 한다.</p> <p><b>제9-5조(등록신청 등)</b> ① 법 제145조제 1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3호서식의 등록·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를 설치하려는 지역(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사람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li> <li>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li> <li>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li>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li> <li>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li>6. 제15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ol> <p>④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지도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p> <p>⑤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지도실</p>		<p>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은 이중으로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삭제</li> <li>2.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의 증명사진(가로 3센티미터 × 세로 4센티미터) 1장</li> <li>3. 제9-8조제4항에 따른 지도사 연수 교육 이수증 또는 영 제9-7조에 따른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4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경우만 해당한다)</li> <li>4. 지도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제9-7조제4항에 따른 지도사 보수교육 이수증(법 제145조제4항에 따른 등록의 경우만 해당한다)</li> </ol> <p>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 갱신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145조제3항에 적합하지를 확인하여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③ 지도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이</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적이 있는 지도사만이 제4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지도실적이 기준에 못 미치는 지도사는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갱신등록을 할 수 있다.</p> <p>⑥ 제2항에 따른 법인에 관하여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p>		<p>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3호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지도사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는 <u>별지 제36호서식</u>의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p> <p>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u>별지 제37호서식</u>의 등록부와 <u>별지 제38호서식</u>의 등록증 발급대장에 각각 해당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부와 등록증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으로 관리하여야 한다.</p> <p><b>제9-6조(지도실적 등) ①</b> 법 제145조제5항 전단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실적”이란 법 제145조제4항에 따른 지도사 등록의 갱신기간 동안 사업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안전·산업보건 관련 기관·단체에서 지도하거나 종사한 실적을 말한다.</p> <p>② 법 제145조제5항 단서에서지 도실적이 기준에 못미치는 지도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종사 실적의 기간이 3년 미만인 지도사를 말한다. 이 경우 지도사가 둘 이상의 사업장 또는 기관·단체에서 지도하거나 종사한 경우에는 각각의 지도·종사 기간을 합산한다.</p> <p><b>제9-7조(지도사 보수교육) ①</b> 법 제145조제5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이란 업무교육과 직업윤리교육을 말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은</p>	<p>- 규칙 제9-6조제2항 위임 없음. 현행 규정위치대로 두고 수정함</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업무교육 및 직업윤리교육의 교육시간을 합산하여 총 2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145조제4항에 따른 지도사 등록의 갱신기간 동안 제9-6조에 따른 지도실적이 2년 이상인 지도사의 교육시간은 10시간 이상으로 한다.</p> <p>③ 공단이 보수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보수교육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수교육 이수자 명단</li> <li>2.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ol> <p>④ 공단은 보수교육을 받은 지도사에게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지도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⑤ 보수교육의 절차·방법 및 비용 등 그 밖에 보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공단이 정한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제146조(지도사의 교육)</b>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제14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를 수행하려면 제145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 1년의 범위에서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p>	<p><b>제9-7조(연수교육의 제외대상)</b> 법 제146조에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u>”이란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p>	<p><b>제9-8조(지도사 연수교육)</b> ① 법 제146조에 따른 “<u>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교육</u>”이란 업무교육과 실무수습을 말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기간은 업무교육 및 실무수습 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 이상으로 한다.</p> <p>③ 공단이 연수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연수교육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수교육 이수자 명단</li> <li>2.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ol> <p>④ 공단은 연수교육을 받은 지도사에게 <u>별지 제41호의2</u>서식의 지도사 연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⑤ 연수교육의 절차·방법 및 비용 등 그 밖에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공단이 정한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제147조(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b>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도사에 대한 지도·연락 및 정보의 공동이용체제의 구축·유지</li> <li>2. 제1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사업주의 불만·고충의 처리 및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li> <li>3. 그 밖에 지도사 직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사항</li> </ol> <p><b>제148조(손해배상의 책임)</b> ① 지도사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b>제9-8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b> ①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등록한 지도사(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48조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은 보험금액</p>	<p><b>제9-9조(지도사 업무발전 등)</b> 법 제147조제3호에서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도결과의 측정과 평가</li> <li>2. 지도사의 기술지도능력 향상 지원</li> <li>3. 중소기업 지도시 지원</li> <li>4. 불성실·불공정 지도행위 방지하고 건실한 지도 수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도기준의 마련</li> </ol> <p><b>제9-10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지급 등)</b> ① 영 제9-8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한 지도사(법 제145조제2항에 따라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가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증보험 가입 신고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도사의 주사무소 소재지(사무</p>	<p>- 규칙 제9-10조에 대한 위임 근거를 영 제9-8조제4항에 신설함</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이 2천만원(법 제145조제2항에 따른 법인인 경우에는 2천만원에 사원인 지도사의 수를 곱한 금액) 이상인 보험으로 한다.</p> <p>③ 지도사는 제1항의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p> <p>④ <u>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u></p>	<p>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지도사는 해당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가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u>별지 제39호서식</u>의 보증보험가입 신고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도사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148조제1항에 따른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u>별지 제40호서식</u>의 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확인신청서에 해당 의뢰인과 지도사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도사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제14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b>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지도사가 아닌 사람은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p> <p><b>제150조(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b> ① 지도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도사는 제1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확인한 서류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p> <p><b>제151조(금지 행위)</b> 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p>		<p>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u>별지 제41호서식</u>의 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의뢰인에게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p> <p>2. 의뢰인에게 법령에 따른 신고·보고, 그 밖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p> <p>3.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상담</p> <p><b>제152조(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b> 지도사는 제1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면 사업주에게 관계 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이 제1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직무의 수행을 위한 것이면 열람을 신청받은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p> <p><b>제153조(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b> 지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제154조(등록의 취소 등)</b>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li> <li>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li> <li>3.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li> <li>4. 제142조에 따른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li> <li>5. 제145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li> <li>6. 제148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li> </ol>	<p><b>제9-9조(지도사 등록 취소 등의 사유)</b></p> <p>법 제154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42조에 따른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li> <li>2. 법 제150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li> <li>3. 법 제14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명 또는 날인을 한 경우</li> <li>4.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li> </ol>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7. 제15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경우</p> <p>8. 제151조, 제153조 또는 제162조를 위반한 경우</p> <p><b>제10장 근로감독관 등</b></p> <p><b>제155조(근로감독관의 권한)</b> ①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 근로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 점검을 하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장</li> <li>2. 제2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48조제1항, 제74조제1항, 제88조제1항, 제96조제1항, 제100조제1항, 제120조</li> </ol>		<p><b>제10-1조(감독기준)</b> ① 법 제155조제1항에서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li> <li>2. 근로자의 신고 또는 고소·고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li> <li>3.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범죄의 수사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li> <li>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li> </ol>	<p>- 규칙 : 현행 법률에서는 부령으로 위임을 하고 있었으나, 개정법안에서는 제1항에서 “필요한 경우”로 규정하여 명확한 위임근거가 삭제됨</p> <p>- 그러나 집행상의 필요에 따라 현행 부령 유지(고용부의견 반영)</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제1항, 제126조제1항 및 제129조제2항에 따른 기관의 사무소</p> <p>3.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사무소</p> <p>4.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의 사무소</p> <p>② 근로감독관은 기계·설비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업주 등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p> <p>③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명할 수 있다.</p> <p>④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에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p>		<p><b>제10-2조(보고·출석기간)</b>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155조제3항에 따라 보고 또는 출석의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출석의 명령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p>	<p>- 규칙 : 위임근거 없으나 집행상의 필요에 따라 현행 부령 유지(고용부 의견 반영)</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제156조(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b>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5조 제2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 소속 직원에게 사업장에 출입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검사 및 지도 등을 하게 하거나,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공단 소속 직원이 검사 또는 지도업무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공단 소속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공단 소속 직원”으로 본다.</p> <p><b>제157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b> ①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p> <p>②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는 3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환자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의료법」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치료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p> <p>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11장 보칙</b></p> <p><b>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b> ①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u>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p>	<p><b>제11-1조(산재예방사업의 지원)</b> 법 제159조제1항 전단에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u>”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p> <p>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방호장치, 보호구, 안전설비 및 작업환경개선 시설·장비 등의 제작, 구입, 보수, 시험,</p>	<p style="text-align: center;"><b>제8편 보칙</b></p> <p><b>제11-1조(보조·지원의 환수와 제한)</b></p> <p>① 법 제159조제2항제6호에서 “<u>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u>”란 보조·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p> <p>② 법 제159조제4항에 따라 보조·지원</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보조·지원의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li> <li>2. 보조·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li> <li>3. 보조·지원 대상을 임의매각·훼손·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li> <li>4.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li> <li>5. 보조·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 홍보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li> <li>2.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기술 지원 업무</li> <li>3.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업무</li> <li>4.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 업무</li> <li>5. 안전검사 지원업무</li> <li>6.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원업무</li> <li>7.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지원업무</li> <li>8. 직업성 질환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연구 또는 직업성 질환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장비 등의 구입 업무</li> <li>9. 안전·보건의식의 고취 및 무재해운동 추진 업무</li> <li>10. 법 제132조제2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분석 능력 평가 및 법 제135조제3항에 따른 권장관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 능력 평가</li> </ol>	<p>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59조제2항제1호의 경우: 3년</li> <li>2. 법 제159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어느 하나의 경우: 1년</li> <li>3. 법 제159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후 2년 이내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2년</li> </ol>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6.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p>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같은 항 제1호의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 중 보조·지원 대상자가 파산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소한 경우는 환수하지 아니한다.</p> <p>④ 제2항에 따라 보조·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조·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⑤ 보조·지원의 대상·방법·절차, 관리 및 감독,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취소 및 환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예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분석 능력의 확인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의 구입 업무</p> <p>11. 산업의학 분야의 학술활동 및 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업무</p> <p>12. 유해인자의 노출 기준 및 유해성·위험성 조사·평가 등에 관한 업무</p> <p>13. 법 제11조제3호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지원업무</p> <p>1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b>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1.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p> <p>2. 제5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p> <p>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p>	<p><b>제11-2조(제재 요청 대상 등)</b> 법 제159조제1항제1호에서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p> <p>1.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p> <p>2.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중대산업사고</p>	<p><b>제11-2조(영업정지의 요청 등)</b>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법 제1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기업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p> <p>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p> <p>② 영 제11-2제1호에서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란 해당 재해가 발생한 때부터 그 사고가 주원인이 되어 72시간 이내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재해를 말한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한다.</p> <p><b>제160조(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b>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제4항(제74조제4항, 제88조제5항, 제96조제5항, 제126조제5항 및 제13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p>	<p><b>제11-3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b>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p>	<p><b>제11-3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영</b> 제11-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서 및 영수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p>	<p>- 규칙 제10-5조의 위임 근거를 영 제11-3조제1항에 추가하여 수정함</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 금액 4. 과징금 부과사유 및 부과기준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 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161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b>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1.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급한 경우 2. 제58조제2항제2호 또는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p>	<p>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p> <p><b>제11-4조(과징금의 산정기준)</b> 법 제160조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p> <p><b>제11-5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b> ① 법 제1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1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〇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61조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은 과징금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p>		<p>- 가산금은 법률상 연 최대 100분의 6이므로 1개월 기준 1,000분의 5로함 (100분의 6 / 12개월)</p> <p>- 법률에 가산금 징수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도급한 경우</p> <p>3. 제60조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아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한 경우</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p>1. 도급 금액, 기간 및 횟수 등</p> <p>2.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p> <p>3. 산업재해 발생 여부</p>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p> <p>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p>	<p>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징금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p> <p><u>제11-6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법 제161조제4항에 따른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절차에 관해서는 영 제11-3조를 준용한다.</u></p>		<p>규정하고 있으므로 총액 한도를 언급할 필요 없음</p> <p>- 타 입법례를 참고하여 영 제11-6조와 같이 제안함</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와 제4항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162조(비밀 유지)</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42조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검토하는 자</li> <li>2.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검토하는 자</li> <li>3.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하</li> </ol>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는 자</p> <p>4.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하는 자</p> <p>5. 제89조에 따른 신고 수리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p> <p>6.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하는 자</p> <p>7. 제98조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업무를 하는 자</p> <p>8. 제108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또는 조사결과를 검토하는 자</p> <p>9.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제출받는 자</p> <p>10. 제112조제2항,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대체자료의 승인, 연장승인 여부를 검토하는 자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대체자료를 제공받은 자</p> <p>11.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을 하는 자</p> <p>12. 제141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자</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13. 제145조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p> <p><b>제163조(청문 및 처분기준)</b>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1. 제21조제4항(제48조제4항, 제74조제4항, 제88조제5항, 제96조제5항, 제100조제4항, 제120조제5항, 제126조제5항, 제135조제6항 및 제14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정의 취소</p> <p>2. 제33조제4항, 제82조제4항, 제102조제3항, 제121조제4항 및 제154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p> <p>3. 제58조제7항(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 제112조제8항 및 제117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p> <p>4. 제8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취소</p> <p>5. 제99조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p>		<p><b>제11-4조(지정취소·업무정지 등의 기준)</b> ① 법 제163조제2항에 따른 지정 등의 취소 또는 업무 등의 정지기준은 별표 20과 같다.</p> <p>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의 고의·과실 여부와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그럼 인정의 취소                      6. 제118조제5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7. 제158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원의 취소</p> <p>② 제21조제4항(제33조제4항, 제48조제4항, 제74조제4항, 제82조제4항, 제88조제5항, 제96조제5항, 제100조제4항, 제120조제5항, 제121조제4항, 제126조제5항, 제135조제6항 및 제14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8조제7항, 제86조제1항, 제91조제1항, 제99조제1항, 제102조제3항, 제112조제8항, 제117조제3항, 제118조제5항 및 제154조에 따른 취소, 정지, 사용 금지 또는 시정명령의 기준은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한다.</p> <p><b>제164조(서류의 보존)</b>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2호의 경우 2년을 말한다)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b>제11-5조(건강진단 결과 등 서류의 보존)</b> ① 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는 제8-16조제3항에 따라 송부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 및 법 제133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p>	<p>- 현행 규칙 제107조 및 현행 규칙 제144조는 서류의 보존에 관한 사항이므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p> <p>2. 제24조제3항 및 제75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p> <p>3.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p> <p>4. 제57조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p> <p>5. 제108조제1항 본문 및 제10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p> <p>6.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p> <p>7.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p> <p>②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은 안전인증·안전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고, 안</p>		<p>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이들 자료가 전산입력된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된 자료를 말한다)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u>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u></p> <p><b>제144조(서류의 보존)</b> ①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94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보존(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보존을 포함한다)기간을 5년으로 한다. 다만, <u>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그 보존기간을 30년으로 한다.</u></p> <p>② 법 제64조제2항에서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p> <p>1.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 및 제58조의4에 따른 심사와 관련하여 인</p>	<p>으로 제안함</p> <p>제11-5조에 통합</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전인증을 받은 자는 제84조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고, 제98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를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p> <p>③ 일반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해체·제거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하고, 기관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설비소유주등과 석면조사기관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p> <p>④ 작업환경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p>		<p>증기관이 작성한 서류</p> <p>2. 제73조의2에 따른 안전검사 신청서 및 검사와 관련하여 안전검사기관이 작성한 서류</p> <p>③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측정 대상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li> <li>2. 측정 연월일</li> <li>3. 측정을 한 사람의 성명</li> <li>4. 측정방법 및 측정 결과</li> <li>5. 기기를 사용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분석자·분석방법 및 분석자료 등 분석과 관련된 사항</li> </ol> <p>④ 지도시는 법 제6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뢰자의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주소</li> <li>2. 의뢰를 받은 연월일</li> <li>3. 실시항목</li> </ol>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⑤ 지도사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p> <p>⑥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제122조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관한 서류 중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서류를 3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 전산 입력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p> <p><b>제16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b>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p>	<p><b>제11-7조(행정권한의 위임) ①</b>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p> <p>1.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p> <p>1의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요구</p> <p>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p>	<p>4. 의뢰자로부터 받은 보수액</p> <p>⑤ 법 제64조제6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p> <p>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소재자</p> <p>2.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등을 말한다)</p> <p>3. 작업의 내용 및 작업기간</p>	<p>조문 숫자 추후 수정</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4조제1항제2호 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li> <li>2.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운영 업무</li> <li>3. 제13조제2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운영</li> <li>4.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li> <li>5.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li> <li>6. 제33조제1항에 따라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등록 업무</li> <li>7. 제33조제2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업무</li> <li>8.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기획서의 접수·심사, 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확인</li> <li>9.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접수,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및 제46조</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정수(定數) 이상의 선임 명령 또는 교체 임명 명령</li> <li>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 인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인가 취소</li> <li>3의2.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한 평가</li> <li>3의3. 법 제32조의3에 따른 법 제31조의2에 따라 등록된 기관의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li> <li>3의4. 법 제34조제7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li> <li>4.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표시제거 명령</li> <li>5.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취소,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및 개선 명령</li> <li>6.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수거·파기 명령</li> <li>7. 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른 표시제</li> </ol>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제2항에 따른 확인</p> <p>10. 제48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p> <p>11. 제58조제3항 또는 제5항 후단(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p> <p>12. 제74조제3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p> <p>13.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p> <p>14. 제84조제4항 본문에 따른 안전인증의 확인</p> <p>15. 제88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p> <p>16.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신고에 관한 업무</p> <p>17.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p> <p>18. 제96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p> <p>19. 제98조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p>	<p>거 명령</p> <p>8.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사용금지 및 개선 명령</p> <p>9.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수거·파기 명령</p> <p>10. 삭제</p> <p>11.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취소와 개선 명령</p> <p>12.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른 등록 취소 및 지원 제한</p> <p>13.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제조등급 지물질의 제조·수입 또는 사용의 승인</p> <p>1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제조·사용의 허가 및 변경허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수리·개조 등의 명령,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제조 등의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p> <p>15. 삭제</p> <p>16.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일반석</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그램의 인정</p> <p>20.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 및 제100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p> <p>21. 제101조에 따른 조사, 수거 및 성능 시험</p> <p>22. 제102조제1항에 따른 지원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p> <p>23. 제103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p> <p>24.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업무</p> <p>25.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접수 업무</p> <p>26. 제112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관한 업무</p> <p>27. 제116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p>	<p>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의 이행 명령 및 이행명령의 결과를 보고받을 때까지의 작업중지 명령</p> <p>17.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p> <p>18.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접수 및 확인</p> <p>19. 법 제38조의4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및 결과 공표</p> <p>20. 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 증명자료 제출의 접수</p> <p>21. 법 제41조제8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명령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취급주의사항 등의 변경 명령</p> <p>22.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 결과보고의 접수</p> <p>23.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p> <p>28. 제120조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 능력의 확인 및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지도·교육 업무</p> <p>29. 제120조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p> <p>30. 제12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업무</p> <p>31. 제126조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분석능력의 확인 및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지도·교육 업무</p> <p>32. 제126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p> <p>33. 제127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신뢰성 평가 업무</p> <p>34. 제135조제3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분석능력의 확인 및 지도·교육 업무</p> <p>35. 제135조제4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p> <p>36. 제136조제1항에 따른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 지정</p>	<p>24. 삭제</p> <p>25.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p> <p>26.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실시 등의 명령,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보고의 접수</p> <p>27.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자격·면허 취득자의 양성,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p> <p>28.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작업 또는 공사의 중지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의 변경 명령</p> <p>29.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명령</p> <p>30.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 명령,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 평가,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에 관한 업무</p> <p>37.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에 관한 업무</p> <p>38. 제141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p> <p>39. 제145조제5항 단서에 따른 지도사 보수교육</p> <p>40. 제146조에 따른 지도사 연수교육</p> <p>41. 제1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지원 및 보조·지원의 취소·환수 업무</p> <p>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공정안전보고서의 재제출 명령</p> <p>31.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명령</p> <p>32.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출석 명령</p> <p>33. 법 제51조제6항에 따른 대체·사용 중지·제거·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p> <p>34. 법 제51조제7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p> <p>35. 법 제51조제8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등의 명령</p> <p>36. 법 제52조에 따른 법령위반사항 신고의 접수·처리</p> <p>37.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지도사 등록, 법 제52조의15에 따른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p> <p>37. 법 제58조 제2항 제2호의 승인, 법 제58조 제5항의 연장 승인, 법 제58조 제6항의 변경 승인, 법 제59조 제1항의 승인</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38.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감독관의 위촉과 관련된 업무</p> <p>39.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p> <p>40. 법 제7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p> <p>41. 제12조제6항, 제16조제3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접수</p> <p>42.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확인 신청의 접수 및 확인</p> <p>43. 제32조의5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p> <p>4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데 따르는 감독상의 조치</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위임한다.</p> <p>1.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및 법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p> <p>2. 법 제15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전문</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p> <p>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제외한다)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p> <p>4.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p> <p>5. 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p> <p>6.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p> <p>6의2.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법 제32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p> <p>6의3.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 위탁기관의 등록, 법 제32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p> <p>6의4.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 검사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p> <p>6의5.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석면 조사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p> <p>7.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진단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p> <p>8.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p> <p>9. 제15조의3, 제19조의3(업종별·유해 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 청서는 제외한다), 제26조의9 및 제33 조의4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p> <p>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데 따르 는 감독상의 조치</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제11-8조(업무의 위탁)</b>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 중 같은 항 제1호의2, 제2호, 제3호의2, 제4호의2, 제9호, 제9호의2, 제10호의2, 제11호, 제11호의2부터 제11호의4까지, 제12호, 제13호의2, 제13호의3, 제14호의2,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제17호의2, 제18호, 제18호의2부터 제18호의4까지 및 제19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 중 같은 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제11호, 제13호 및 제14호의 업무를 공단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기관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한다.</p>		<p>* 제65조→제166조 * 령 제47조 제2항 제1호의2, 제2호, 제3호의2, 제4호의2, 제9호, 제9호의2, 제10호의2, 제11호, 제11호의2부터 제11호의4까지, 제12호, 제13호의2, 제13호의3, 제14호의2,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제17호의2, 제18호, 제18호의2부터 제18호의4까지 및 제19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제12호, 제15호, 제18호부터 제21호, 제23호부터 제33호</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다만, 법 제65조제2항제4호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가. 비영리법인일 것</p> <p>나. 산업안전·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p> <p>2. 법 제15조제4항, 제16조제3항, 제30조의2제1항, 제38조의2제2항, 제42조제4항, 제43조제1항, 제47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p> <p>3.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검정·검사, 생산기술의 연구개발·교육·평가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p> <p>4.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p>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그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기관</p>		<p>까지, 제36호부터 제42호까지</p> <p>* 령 제47조 제2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제13호 및 제14호 →제1호, 제5호, 제10호, 제13호,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2호, 제34호, 제35호</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제166조(수수료 등)</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하려는 사업주</li> <li>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받으려는 자</li> <li>제4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받으려는 자</li> <li>제58조제3항 또는 같은 조 제5항 후단(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으려는 자</li> <li>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li> <li>제84조제4항에 따라 확인을 받으려는 자</li> </ol>	<p>의 명칭과 위탁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공고하여야 한다.</p> <p><b>제11-9조(수수료)</b> 법 제166조제1항제14호에서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4의 제8호·제9호 및 별표 6의 제7호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을 말한다.</p>	<p><b>제11-6조(수수료 등)</b> ① 법 제16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p>	<p>* 제66조제1항13호 →제167조제1항제14호</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7. 제93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p> <p>8. 제98조제1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p> <p>9. 제1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받으려는 자</p> <p>10. 제11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p> <p>11. 제140조에 따른 자격·면허의 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p> <p>12. 제143조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p> <p>13. 제145조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을 하려는 자</p> <p>14 그 밖에 산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p> <p>②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수익자로 하여금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제11-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16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근로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조를 요청한 사항으로서 산업재해 또는 건강진단 관련 자료의 처리에 관한 사무</li> <li>2. 법 제12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에 관한 사무</li> <li>3. 법 제129조부터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li> <li>4. 법 제141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li> </ol>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사무</p> <p>5. 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 발급에 관한 사무</p> <p>6. 법 제138조에 따른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에 관한 사무</p> <p>7. 법 제143조에 따른 지도사시험에 관한 사무</p> <p>8. 법 제145조에 따른 지도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p> <p><b>제11-11조(규제의 재검토)</b>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1. 제3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에 따른 대상 사업의 범위: 2016년 1월 1일</p> <p>2. 제2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대상사업: 2019년 1월 1일</p> <p>3. 제8-6조에 따른 자격·면허 취득자</p>	<p><b>제11-7조(규제의 재검토)</b>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1.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표지의 종류·형태·용도·설치·색채·제작·재료 등: 2017년 1월 1일</p> <p>2.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교체임명 명령: 2017년 1월 1일</p>	<p>시행령 제11-11조제2항 각 호 위치, 법 위임에 따라 변경</p> <p>시행규칙 제11-7조 각 호 숫자 추후 수정</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의 양성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2014년 1월 1일</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1. 제39조에 따른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 2017년 1월 1일</p> <p>2. 제5-2조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2017년 1월 1일</p> <p>3. 제8-1조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2017년 1월 1일</p> <p><del>4. 삭제</del></p> <p>4. 제8-2조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2017년 1월 1일</p>	<p>3. 제17조 및 별표 5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2017년 1월 1일</p> <p>4. 제31조의2에 따른 설계변경의 요청 방법 등: 2017년 1월 1일</p> <p>5. 제49조에 따른 기계등 대여자의 조치: 2017년 1월 1일</p> <p>6. 제50조에 따른 기계등을 대여 받는 자의 조치: 2017년 1월 1일</p> <p>7. 제51조에 따른 기계등을 조작하는 자의 의무: 2017년 1월 1일</p> <p>8. 제52조에 따른 기계등 대여사항의 기록·보존: 2017년 1월 1일</p> <p>9. 제55조에 따른 대여 공장건축물의 공동사용: 2017년 1월 1일</p> <p>10. 제56조에 따른 편의 제공: 2017년 1월 1일</p> <p>11. 제92조의8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변경: 2017년 1월 1일</p> <p>12. 제98조의3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기관 등: 2017년 1월 1일</p> <p>13. 제107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b>제12장 벌칙</b></p> <p><b>제167조(벌칙)</b>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p>		<p>보존: 2017년 1월 1일</p> <p>14. 제116조에 따른 질병자의 근로금지: 2017년 1월 1일</p> <p>15. 제127조, 별표 16, 별표 16의2 및 별표 17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2017년 1월 1일</p> <p>16. 제136조의2에 따른 시험의 일부 면제: 2017년 1월 1일</p> <p>17. 제136조의8에 따른 등록신청 등: 2017년 1월 1일</p> <p>18. 제144조에 따른 서류의 보존: 2017년 1월 1일</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p> <p><b>제168조(벌칙)</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제51조, 제54조제1항,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 또는 제157조제3항을 위반한 자</li> <li>2. 제42조제4항 후단, 제53조제3항, 제55조제1항 또는 제118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li> </ol> <p><b>제169조(벌칙)</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44조제1항 후단, 제63조, 제76조, 제81조, 제82조제2항, 제84조제1항, 제87조제1항, 제118조제3항, 제123조제1항, 제139조제1항 또는 제140조제1항을 위반한 자</li> <li>2. 제45조제1항 후단, 제46조제5항, 제</li> </ol>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53조제1항, 제87조제2항, 제118조제4항, 제119조제4항 또는 제13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p> <p>3. 제58조제3항 또는 같은 조 제5항 후단(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업무를 제16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서 그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p> <p>4.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 업무를 제16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서 그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p> <p>5.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제16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서 그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p> <p>6. 제98조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제170조(벌칙)</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li> <li>2. 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li> <li>3.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教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li> <li>4. 제65조제1항, 제80조제1항·제2항·제4항, 제85조제2항·제3항, 제92조제1항, 제141조제4항 또는 제162조를 위반한 자</li> <li>5. 제85조제4항 또는 제9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li> <li>6. 제101조에 따른 조사, 수거 또는 성능시험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li> </ol> <p><b>제171조(벌칙)</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69조제1항·제2항, 제89조제1항, 제90조제2항·제3항, 제108조제2항, 제109조제2항 또는 제138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p> <p>2. 제90조제4항, 제108조제4항 또는 제10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p> <p>3. 제125조제6항을 위반하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p> <p>4. 제1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작업장소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p> <p><b>제172조(벌칙)</b> 제6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b>제173조(양벌규정)</b>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제1항 또는 제</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제167조제1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p> <p>2.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경우: 해당 조문의 벌금형</p> <p><b>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b></p> <p>① 법원은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 유죄의 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산업</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병과(併科)할 수 있다. 다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li> <li>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⑤ 수강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p> <p><b>제175조(과태료)</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19조제2항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li> <li>제124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li> </ol>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9조제3항 또는 제79조제1항을 위반한 자</li> <li>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li> </ol>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b>제00조(과태료의 부과기준)</b> 법 제17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1. 제47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 보건진단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안전 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아니한 자</p> <p>2. 제57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p> <p>3. 제1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p> <p>4. 제1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10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p> <p>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자</p> <p>3. 제41조제2항, 제42조제1항·제5항·제6항, 제44조제1항 전단,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67조제1항, 제70조제1항, 제70조제2항 후단, 제71조제3항 후단, 제71조제4항, 제72조제1항·제3항·제5항(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 제77조제1항, 제78조, 제85조제1항, 제93조제1항 전단, 제95조, 제99조제2항 또는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자</p> <p>4. 제47조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p> <p>5. 제82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타워크레인을 설치·해체하는 자</p> <p>6. 제125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p> <p>7. 제129조제1항 또는 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p> <p>8. 제15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근로감독관의 검사·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6조, 제68조제1항, 제75조제6항, 제77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제122조제2항, 제124조제1항, 제125조제7항, 제132조제2항, 제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p> <p>2.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p> <p>3. 제34조 또는 제114조제1항을 위반</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하여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p> <p>4.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p> <p>5.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p> <p>6. 제110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외제조사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p> <p>7. 제1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p> <p>8. 제11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승</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인을 받지 아니하고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은 자</p> <p>9. 제1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 신청시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보호사유를 거것으로 작성하여 신청한 자</p> <p>10. 제11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p> <p>11.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거것으로 수행한 자</p> <p>12.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p> <p>13. 제1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시 <u>고용노동부령</u>으로 정하는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지 아니한 사업주(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p> <p>14. 제125조제4항 또는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지 아니한 자</p> <p>15. 제1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p> <p>16. 제155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p> <p>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32조제1항(제5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위반하여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p> <p>2. 제35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에게</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통지하지 아니한 자</p> <p>3. 제40조, 제108조제5항, 제123조제2항, 제132조제3항, 제133조 또는 제149조를 위반한 자</p> <p>4.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한 자</p> <p>5. 제43조제1항 또는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p> <p>6. 제7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를 받지 아니한 자</p> <p>7. 제84조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p> <p>8. 제10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10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조사 결과 또는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p> <p>9. 제11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제공하지 아니한 자</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10. 제1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p> <p>11. 제11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경고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p> <p>12. 제119조제1항에 따라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p> <p>13. 제12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p> <p>1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p> <p>15. 제125조제5항, 제132조제5항 또는 제134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보고, 제출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제출 또는 통보한 자</p> <p>16. 제155조제1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p> <p>17. 제156조제1항에 따른 검사·지도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18. 제16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b>제1조(시행일)</b>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0조부터 제11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b>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해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산업재해</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b>제1조(시행일)</b></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부터 적용한다.</p> <p><b>제3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관한 적용례)</b> 제6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b>제4조(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에 관한 적용례)</b>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b>제5조(건강진단에 따른 조치결과 제출에 관한 적용례)</b> 제13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건강진단부터 적용한다.</p> <p><b>제6조(역학조사 참석 등에 관한 적용례)</b> 제14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역학조사부터 적용한다.</p> <p><b>제7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에 관한 특례)</b>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41조제1항</p>		<p><b>제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제공 등에 관한 특례)</b> ① 법 부칙 제7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또는 변경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이 규칙 제7-16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작</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또는 제6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또는 변경한 자(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 중 그 대상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로 한정한다)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제1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에 관한 자료(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b>제8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에 관한 특례)</b> 제1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한 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p>		<p>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톤 이상: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li> <li>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0톤 이상 100톤 미만: 이 규칙 시행 후 2년 이내</li> <li>3.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이상 10톤 미만: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li> <li>4.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kg 이상 1톤 미만: 이 규칙 시행 후 4년 이내</li> <li>5.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kg 미만: 이 규칙 시행 후 5년 이내</li> </ol> <p>② 제1항에 따라 이 규칙 제7-16조제1항에 따른 자료 중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일 이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중전의 제41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공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에서 변경된 사항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p> <p><b>제9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에 관한 특례)</b>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중전의 제41조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제제의 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공한 자(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 중 그 대상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로 한정한다)는 제1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p>		<p>제공받은 자에게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중전의 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공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에서 변경된 사항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p> <p><b>제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에 관한 특례)</b> 법 부칙 제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영업비밀을 기재한 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이 규칙 제7-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대체자료 기제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b>제10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에 관한 경과조치)</b>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급인가를 받은 사업주는 그 인가의 남은 기간이 3년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남은 기간 동안, 3년을 초과하거나 그 인가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3년까지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b>제11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b> 이 법 시행 전에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공사가 행해지는 현장의 경우에는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b>제12조(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b> ① 이 법 시행 당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영위</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영위할 수 있다.</p> <p>②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p> <p><b>제13조(안전인증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b>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4조의3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는 제8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b>제14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b> 이 법 시행 전의 종전의 제15조의3(종전의 제16조제3항, 제30조의2제3항, 제34조의5제4항, 제36조제10항, 제42조제10항 및 제43조제1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b>제15조(안전관리대행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b> ① 법률 제4220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인 1990년 7월 14일 당시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안전관리대행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② 공단은 법률 제4220호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지정교육·검사·측정 또는 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p> <p><b>제16조(산업위생지도사에 관한 경과조치)</b> 법률 제1188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4년 3월 1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산업위생지도사는 이 법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로 본다.</p> <p><b>제17조(지도사 연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b> 법률 제1188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4년 3월 13일 전에 등록한 지도사는 제146조의</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개정규정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b>제18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b>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b>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b> ① 건설기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8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로 한다.</p> <p>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제2호 본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로 한다.</p> <p>③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으로 한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8조제1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p> <p>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로 한다.</p> <p>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한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제31조제1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한다.</p> <p>제36조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제18조”로 한다.</p> <p>제40조제1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로 한다.</p> <p>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35조제1항”을 “같은 법 제89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36조제1항”을 “같은 법 제9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제35조제1항”을 “「</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제8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35조제1항”을 “같은 법 제89조제1항”으로 한다.</p> <p>제4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p> <p>제52조제2항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으로 한다.</p> <p>제5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로 한다.</p> <p>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한다.</p> <p>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6조제1항제4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로 한다.</p> <p>⑦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4조제15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4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으로, “같은 법 제49조의 2제3항”을 “같은 법 제45조제1항”으로 한다.</p> <p>제16조제6항제8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으로 한다.</p> <p>⑧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6조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검정”</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                      으로, “제35조제1항”을 “같은 법 제89                      조제1항”으로 한다.</p> <p>⑨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p> <p>제9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의2제2항 본문”을 “「산업안전보                      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p> <p>제21조제1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                      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을 “「산업                      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7                      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5                      항”으로 한다.</p> <p>제24조제1항 단서 중 “「산업안전보건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산                      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                      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른 안전보건교육”으로 한다.</p> <p>제26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20조 및 제123조”로 한다.</p> <p>제27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1항”으로 한다.</p> <p>제30조의2제1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3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3항”으로 한다.</p> <p>⑩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3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으로 한다.</p> <p>⑪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4조제1항제5호 중 “「산업안전보건</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으로 한다.</p> <p>⑫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5조제2항제14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4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으로, “같은 법 제49조의2제3항”을 “같은 법 제45조제1항”으로 한다.</p> <p>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7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p> <p>⑭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2조제1항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제43조”로 한다.</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⑮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3항제4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로 한다.</p> <p>제22조제2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동법에 의한”을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으로 한다.</p> <p>제35조의 제목 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동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으로, “동항중”을 “같은 항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43조제5항(作業場所의 변경, 作業의 轉換 및 勤勞時間 短縮의 경우에 한한다), 제43조제6항 단서, 제52조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32조제2항 단서, 같은</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조 제4항(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 157조제3항”으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동법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라”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비고
<p>“동법을 위반한”을 “같은 법을 위반한”으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p> <p>⑩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6조제1항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으로 한다.</p> <p>⑪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제3항 또는 제111조에 따라”로 한다.</p> <p><b>제2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b>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 〈〈연 구 진〉〉

연 구 기 관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책임자 : 한정미(선임연구위원)

연 구 원 : 이준서(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왕승혜(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연 구 기 간〉〉

2019. 3. 8 ~ 2019. 6. 30.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수급자 중심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  
(2019-연구원-393)

---

발 행 일 : 2019년 6월 30일  
발 행 인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원장 고재철  
연구책임자 : 한국법제연구원 한정미  
발 행 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주 소 : (44429)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전 화 : (052) 703 - 0826  
F A X : (052) 703 - 0332  
Homepage : <http://oshri.kosha.or.kr>

---